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교육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YOU+H+MATE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본 가이드북은 교육부 2021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제작되었으며 교육부와 유스메이트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변화된 교육제도·정책, 예방·대응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008
주요 용어 설명	
▶ 아동학대 관련 용어	010
▶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012
▶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013

I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018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020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022
4.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 시 유의점	035
5.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037
6. 아동학대 유사개념	038
7.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 통계	040

II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050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056
3. 미취(입)학, 미인정 결석, 미전입 학생 관리 방안	058

III

피해아동의 이해와 대화법

- | | |
|-------------------|-----|
| 1. 피해아동의 이해 | 066 |
| 2.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 068 |
| 3.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 | 076 |

IV

아동학대 신고

- | | |
|------------------------|-----|
|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 조치 흐름도 | 080 |
|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 081 |
|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 083 |
|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 089 |

V

아동학대 사안처리

- | | |
|------------------------|-----|
|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 094 |
|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 097 |
| 3.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제도·정책 | 105 |

VI

아동학대 예방교육

- | | |
|---------------------|-----|
| 1. 신고의무자 교육 | 112 |
| 2.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114 |
| 3.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118 |

VII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 | | |
|----------------------|-----|
| 1. 정보연계 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 124 |
| 2.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 126 |

VIII

부록

- | | |
|---------------------------|-----|
| 1.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 134 |
| 2. 미취(입)학 아동(학생) 소재·안전 관리 | 153 |
| 3. 미인정 결석 관리 | 162 |
|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안내 | 180 |
| 5. 각종 양식 (예시) | 185 |
| 6. 유관기관 리스트 | 215 |

- | | |
|--------|-----|
| ▶ 참고자료 | 240 |
|--------|-----|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유의사항

- 학교는 평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찰과 상담에 우선적으로 노력합니다
- 아동학대(의심) 사안이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로서 즉시 신고합니다
-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와 진행에 적극 협조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대처까지 단계별로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 학교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아동의 안전과 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도 (기관별)

발생 전

○ 학교

평상시

-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징후발견

- 신고 여부 판단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 필요시 상담 및 보건교사 협조 의뢰

응급상황시

- 안전확보 및 보호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방안 마련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 전담기구 업무 등)
- 아동학대 대응 지자체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 교육(지원)청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주요 교육정책(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및 제도 지원
- 유관기관 대상 업무협조

○ 학교

- 아동학대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 학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자료제공 및 협조
-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신고접수

○ 지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신고접수
- 접수된 신고에 대한 판단
- 현장출동 및 기초 정보파악 (*경찰 동행출동 요청)

○ 경찰

- 112 신고 접수
- 현장출동(*지자체 동행협조)
- 지자체 아동학대의심사례 통보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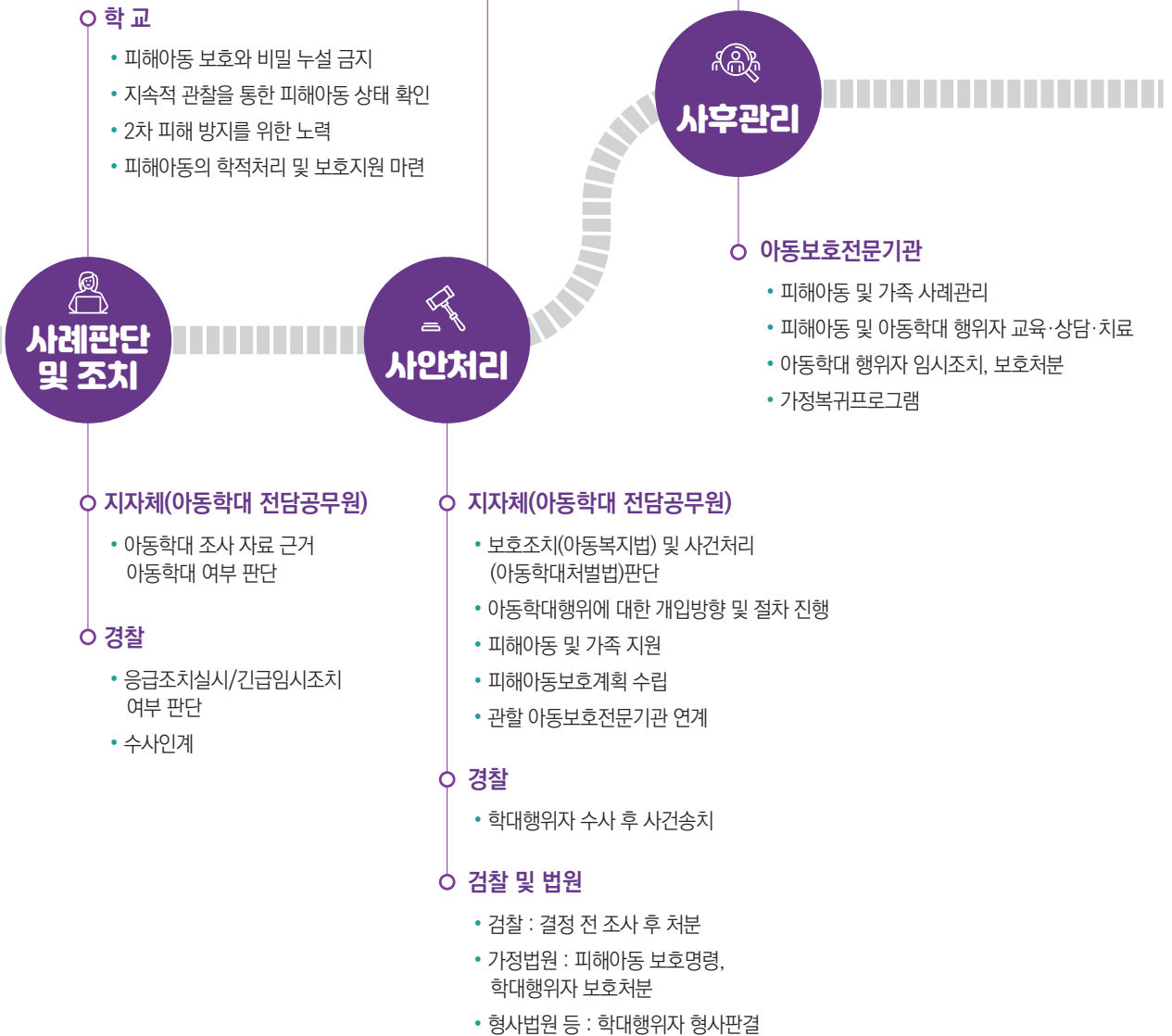
사안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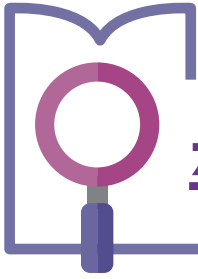
○ 지자체(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근거 및 증거 수집
- 추가 학대발생 여부 확인
- 피해(의심)아동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 검토, 보호시설 인도 등

○ 경찰

- 학대(의심)행위자 조사





주요 용어 설명



아동학대 관련 용어

-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단,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그 연장을 피해아동이 성년(만 19세)에 도달하는 때까지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 제3항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 피해아동 등**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임시후견인 선임에서만 있는 개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3호
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5호
성학대	→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유기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방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도록 하여 설치한 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9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구 단위에 배치한 공무원.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제4항

친권 →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거소를 지정하며,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 「민법」 제913조, 제914조, 제916조, 제920조로서,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의 “법정 대리인”이 됨
 ※ 자녀가 계약 체결 당사자가 될 때 대리권,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학, 전학, 퇴학, 유학 등 신분 관계 변동 시 동의권,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양육권 →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보호하에 보호·교양할 권리로 직접 자녀를 곁에 두고 생활을 같이 하며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권리.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함께 존재하나 이혼 등으로 분리될 수 있음

- 후견인** → 미성년자의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되거나 친권상실의 신고를 받아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부모가 친권의 일부인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신고를 받거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 친권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자. 「민법」 제928조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보건복지부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시스템



아동학대 관련 용어 - 학교 편

-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유예** →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학칙에 의거 '정원 외 학적관리'할 수 있음)
- 취학지원** → 학대 피해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전학, 편입학 등)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 신청 가능
- 취학관리전담기구** →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2
- 출석인정**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등교학습 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 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요청에 따라 원격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 피해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을 하는 것.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8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이라 함)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수감 등],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해당
- 집중관리대상자**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용어

-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현장으로 출동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으로 2~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 긴급입시조치** →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19조

- 임시조치**
- 수사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임의적 임시조치 :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필요적 임시조치 :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경우 검사는 임시조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
 - 재판단계에서의 임시조치
 -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 보호처분**
-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보호관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상담처분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 피해아동보호명령**
- 판사는 직권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접근금지·친권에 대한 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음. 보호처분과 달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로서 명령임.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임시보호명령**
-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것.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피해자 국선변호사**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을 위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에 관한 규칙 등을 근거로 검사가 지정하는 국선변호사로서, 아동보호사건 또는 형사재판의 종결 시까지 피해아동을 조력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보조인**
-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 각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가 변호사 등 자신을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할 수 있는데 이를 보조인이라 하며, 피해아동의 경우는 신청으로 국선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고, 수사단계에 피해자국선변호사가 있다면 그 변호사를 보조인을 지정받을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49조
- 원가정보호**
- 피해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적으로 보호 받고 있는 경우
- 분리조치**
- 아동을 실제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주 양육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하는 경우, 종래 양육되던 환경을 떠나 다른 누군가(예: 친권자, 친족, 시설 등)에게 보호되는 경우 모두 해당
- 가정복귀**
- 아동학대로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래 가정으로 복귀된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I

아동학대 개념과 이해

1. 아동인권 이해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4.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 시 유의점
5.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6. 아동학대 유사개념
7.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 통계

1. 아동인권 이해



아동인권이란

18세 미만의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의미



유엔아동권리협약

- 전 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 협약.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의미하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김



아동의 기본권





아동권리헌장 이해

- 2016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아동권리헌장> 제정
- 전문과 9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아동권리헌장은 아동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지킬 수 있고 어른도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약속을 의미



아동권리헌장 주요 내용

-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
-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 존중받을 권리
-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개인적인 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
-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2.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아동학대 관련 정의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4조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2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열거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¹⁾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1)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를 포함하여 규정된 것이며, 행위주체가 ‘보호자’로 한정됨. 법적 처리에 있어서 행위 주체가 보호자인 경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처벌되므로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를 구별할 실익은 거의 없음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개념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8호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보호자) 및 그 공범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5호

3.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예시 및 판례



신체학대 (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음, 조르고 비틀, 할멈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을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트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 (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힘, 화상을 입힘 등)



신체적 징후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굽힌 상처
- 발생 및 회복에 시차가 있는 상처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심한 구타 및 물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입술, 잇몸, 눈, 손목, 발목 등 부위의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긴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굽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국
- 담뱃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 자국, 알고 있는 물체 모양(다리미 등)의 화상 자국, 회복 속도가 다양한 화상 자국
- 치료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악화된 상처 및 부상



행동적 징후

-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거나 놀라는 모습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모습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거부감과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
- 위험에 대해 지속적인 경계
- 상처나 부상에 대한 불평
- 결석이 잦고 떨어지는 집중력과 학업 수행 능력
- 공격적·적대적·폭력적인 행동
- 자기 비하 발언 및 자해 등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
- 상대방의 작은 동작에도 놀라거나 방어적인 태도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골격계 손상, 시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 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 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 손상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형에게 동생을 때리도록 지시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가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자 다른 아들(피해자의 형)에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옆드리게 한 후 줄넘기로 수회 때리도록 지시하고, 다른 아들이 피해자의 가슴, 양팔,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렸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정155]



자녀가 친구를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자녀를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파리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6세)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고합113]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참

- 피고인은 피해아동(1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늦게 일어나 온라인 조례를 듣지 않아 담임교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2회 걷어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1993]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때리고 양말을 입에 물게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3세, 1세)의 조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 채로 피해자들의 손등 부위를 각각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그곳에 있던 피고인이 벗어놓은 양말을 각각 입에 물게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552]

판례로 보는 신체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운동선수가 무단 훈련 불참했다는 이유로 때림

- 피고인은 중학교 운동부 코치이다. 피고인은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14세)가 운동을 게을리하고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밀대 자루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마를 주먹으로 쥐어박았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고단2039]



교사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로 일으켜 세워 때림

- 피고인은 고등학교 진로상담교사이다. 피고인은 1학년 교실에서 진로 상담 수업 중 피해아동(15세)이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어 피해아동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목과 어깨 부분을 잡아 일으키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아동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일으켜 세워 폭행하였다.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1127]



학예전 준비 중 다른 행동을 하여 뺨을 때리고 엎드려뺨쳐를 시킴

-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학교 실내체육관에서 피해아동이 학교 학예전 준비를 하면서 체육관에서 공놀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체육관 바닥에 머리를 박은 채로 엎드려뺨쳐를 하도록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정69]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비난과 폭행을 함

-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3학년 교과서 배부 서명표에 피해자(17세)가 다른 학생들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교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교실로 돌아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너 같은 병신새끼 때문에 너희 반에 있는 애들 다 수능 망치게 생겼네. 이 또라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403]

정서학대 (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라고도 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따돌리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등)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언어 및 신체 발달 저하
- 탈모
- 수면장애로 인한 예민, 불안함
- 식이장애로 인한 위궤양, 복통



행동적 징후

-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 시도
- 실수에 대해 과도한 걱정과 불안한 모습
-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 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는 행동
- 법이나 규칙을 무시한 일탈행동
- 요구가 많고 지나치게 관심을 받으려 하는 행동
- 지나치게 불평불만이 많은 행동
-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고 다툼이 잦으며 관계를 유지하지 못 하는 행동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 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를 위협함

- 피고인은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10세)가 휴대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망치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폰을 하면 폰을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 내가 못 부술 것 같나, 폰 한 번만 더 하면 아빠한테 죽는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1100]



가정폭력을 해온 부가 모를 위협하는 말을 아동이 듣게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처에 대한 폭행 범행을 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처에게 위 명령을 없애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처에게 “접근금지고 법이고 나발이고 내가 다 죽여버린다. 너도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위협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듣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고정276]



잘못했다는 이유로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11세)가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팬티만 입힌 채 집 밖으로 내쫓은 후 다시 들어오게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650]



피해자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폭언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림

- 피고인은 피해자(8세)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느냐, 뺨대가리냐”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올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때려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21고단936]

판례로 보는 정서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수업시간에 답변을 못 한다는 이유로 폭언과 공개적 모욕을 줌

- 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같이 멍청하고 덜떨어진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넌 그냥 입 닥치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네 부모 다했냐”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폭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 세우고 피해자가 टी아파트에 산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거기 안 산다”라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당장 네 집에 가봐야겠다. 나는 네 부모 허락 없이 너희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니 네 엄마 허락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504]



훈계한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성드립’에 관한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다른 여자 친구들의 엉덩이를 치거나 만진다는 내용이 확인되자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교실 앞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남자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하는데 여자애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럽고 추잡하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단2833]



여성에 대한 비하, 외모 평가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중학교 도덕 교사이다. 피고인은 수업시간 중, 피해자(여, 15세)에게 “여자와 명태는 때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복도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쌍꺼풀 수술을 해라”고 말하였으며, 학생인 피해자들을 한 명씩 지목하면서 ‘상, 중, 하’로 외모 등급을 매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838]



다른 아이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벌을 세움 - 어린이집, 유치원

-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6세)가 다른 원아들을 괴롭히며 자신의 말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면 같이 활동할 수 없으니, 그 행동을 멈추고 나에게 와라,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목에 가방을 걸어 준 이후 피해자를 외면하고 상당 기간 눈길조차 주지 않아,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740]

- 피고인은 유치원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6세)가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낚아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로 끌고 교탁 옆 칠판 앞으로 데려가 칠판을 보고 서 있도록 벌을 세우고, 계속하여 간식시간이 되어 다른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간식을 주지 않은 상태로 10여 분간 벌을 더 서도록 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551]

성학대 (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애무에 의한 성행위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 추행, 성기 추행, 항문 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신체적 징후

-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
- 소변 또는 대변을 볼 때 통증 호소(대변의 혈액)
- 성기 부위의 통증 호소
- 옷(속옷)이 찢겨 있거나 피에 젖어 있거나 얼룩져 있음
- 입천장의 손상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및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저조한 학업 수행
- 지나치게 자주 오랫동안 씻는 행동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
- 체중이 갑자기 줄거나 늘어날 정도로 달라진 식습관
-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대해 비밀로 하려는 모습

- 불안해하고 쉽게 잠들지 못함. 악몽을 꾸는 등 공포감
-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등 퇴행 행동
- 자살 시도 및 자해, 문란한 성관계 등 자기 파괴적 행동
- 혼자 있기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고 하는 모습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 집중을 못 하는 모습
- 비행 및 가출, 약물 및 알코올 남용
- 식이장애,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참고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발견·확인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

- | | |
|-------------------|-------------------------|
| • 성병 감염 및 임신 | • 회음부나 항문 근처 멍, 출혈 |
| • 잦은 요로감염 및 질 감염 | • 성기 부위의 통증, 부어오름, 가려움증 |
| • 질이나 음경에 고름, 분비물 | |

판례로 보는 성학대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친부는 성폭력범죄로, 친모는 아동복지법위반(방임)으로 처벌 받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피해자를 추행 내지 강간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막연히 ‘아빠인데 설마 더 심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설마 더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피해자를 친부로부터 격리하거나 친부의 행위를 제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친부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도록 방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1697]

판례로 보는 성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초등학교 1학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과 성적 학대를 함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힌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뽀뽀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고합81]



피해자에게 '후궁'이라고 표현하며 팔을 주무를

- 피고인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역사교사이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동아시아사 수업 중 설명을 위한 재연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후궁 이리 와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주물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547]



학교 일상 및 수업시간에 반복적 성적 행동과 발언을 함

- 피고인은 중학교 수학교사이다.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A(15세)로부터 초코바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고맙다. 역시 너 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칠판에 좌표를 그리면서 포물선을 여성 가슴 모양으로 그린 후 “아이참,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수업시간에 늦은 피해자 B(15세)와 함께 수업하기 위해 교실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이리 더 이뻐졌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에 대고 깎지를 끼었다. 피고인은 수업 진행 중 방학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과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C(14세)가 방학 중 피해자 D(14세) 등과 함께 워터파크에 갔다는 말을 하자 “너희들 비키니 입었어?”라고 말하여 성희롱 등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315]

방임 및 유기 (Neglect)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행위의 예시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미인정결석(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①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재취학·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③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해야 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신체적 징후

-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모습
- 개인위생이 불량하며 개선되지 않는 지저분한 상태
- 지속적 악취
-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불량한 건강 상태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행동적 징후

-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 음식을 구걸 및 훔치거나 먹는 것에 집착하는 모습
- 나이에 비해 몸무게가 지나치게 적거나 불균형한 신체 상태
- 비행 또는 도벽
-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하는 모습
- 지속적인 피로 호소 또는 불안정감
- 부족한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
- 뚜렷한 이유 없이 자각이나 결석이 잦고 수업 중 자주 조는 모습
- 品行장애

판례로 보는 방임 및 유기 사례 학대행위자가 부모 등인 경우



피해아동에게 기본 보호, 양육, 교육지원을 소홀히 함

- 피고인은 피해아동들(10세, 8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데리고 모텔을 전전하며 배달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게 하고 제대로 씻기지 아니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고, 학교에서 온라인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태블릿pc를 지급받았음에도 담임교사의 연락을 받지 않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원격수업 및 대면수업에 피해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고단556]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방치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이나 세탁하지 않은 옷을 입히고 감기에 걸린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으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고 불결한 상태로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1637]



친부가 자녀에게 수회 신체학대를 하였음에도 친모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A는 피해아동의 모친이고, 피고인 B는 피해아동의 부친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인 B를 말리거나 피해아동과 격리시키거나 피해아동을 치료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1461]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자녀에게 4년간 학교를 보내지 않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12세)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등교 거부 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때부터 약 4년간 피해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령기에 있는 피해자 B(6세)를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1467]

4.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 시 유의점



-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대가 은폐되고 있는지 면밀히 주의
- 장애로 인한 행동에 대한 훈육의 합리화 또는 교육적 효과 등을 핑계로 고의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는지 확인
- 장애로 인해 흔히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징후인지 학대로 인한 신체적 징후인지 확인
- 장애아동의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님. 하지만 장애로 인해 빈번히 나타나는 신체적 징후 또는 평소와 다른 신체적 징후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태도 필요

참고 장애아동 대상 학대 발견의 예시

-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해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 뇌병변 발작에 의해 넘어져 흔히 멍이 들지 않는 신체 부위에 멍이 들었을 경우와 학대로 인해 멍이 든 신체 부위
- 다양한 유전적 증후군에 의한 간지럼증, 건조증 등으로 인한 피부 상흔(손자국, 긁힘)과 학대로 인한 상흔
- 장애로 인한 자해 상흔과 학대로 인한 상흔
- 뇌병변 장애로 인해 이동과 근육 움직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과 상습적 학대로 인한 빈번한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

판례로 보는 장애아동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 등 교육기관 종사자인 경우**



전담보호업무 중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모욕적 언행을 함

- 피고인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무원이다. 피고인은 아스퍼거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전담하여 보호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해자가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쓸어, 야! 야! 야!’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청소하는 법을 잊었다고 하자 피고인은 ‘지금 뭐야? 금붕어야? 다 까먹었어? 까먹으면 니가 옳은 거야?’라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971]



지적장애학생이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못 먹게 하면서 뒤통수를 때림

- 피고인은 지적장애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초등 담당 특수교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인 지적장애 1급인 피해아동 A(12세)가 반찬을 더 먹으려고 하자 반찬을 더 못 먹게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정서적 학대로 판단함)
- 피고인은 담임을 맡고 있던 자폐성장애 1급인 피해아동 B(11세)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합34]



생활재활교사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폭행, 정서학대를 함

- 피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재활교사로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A(13세, 중증지적장애)가 전일 장난을 치다가 강당 벽을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돌려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멍이 들게 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B(16세, 중증지적장애)가 지시를 어기고 스스로 손등에 상처를 냈다는 이유로 지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내려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270]

5.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²⁾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도록 제작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 아동학대 신고 전화 112로 신고해야 함

번호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명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2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 (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6. 아동학대 유사개념



◎ 아동학대 / 아동학대범죄 / 학교폭력 비교

구분	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가해자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	보호자	제한 없음
피해자	아동(18세 미만)	아동(18세 미만)	학생

◎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

-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광의적 개념
- 아동학대범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아동학대로 인하여 「형법」 등에서 규정한 소정의 죄에 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은 가해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아동학대는 가해 주체가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으로 제한

참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사안처리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피해측이 원할 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능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가정폭력 피해자가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가정폭력 관련법이 적용되고, 18세 미만일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법에 적용되어 처리된다는 차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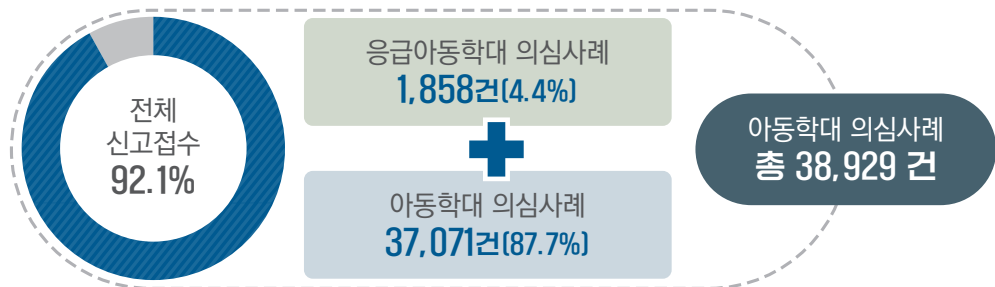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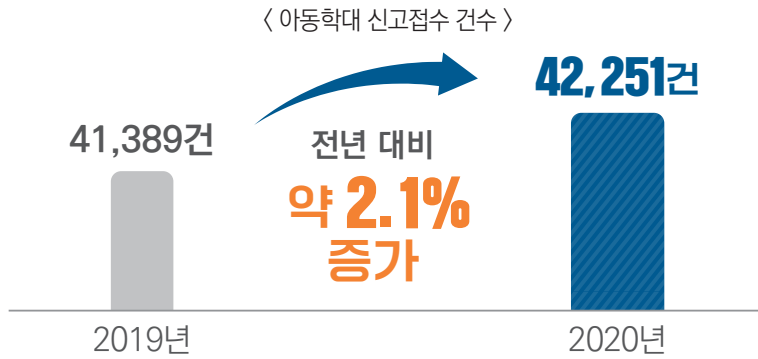
7. 아동학대 실태 및 관련 통계³⁾



아동학대 신고접수



- 아동학대 신고접수 매년 증가. 2020년 집계된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총 42,251건으로 전년(41,389건)대비 약 2.1% 증가. 이 중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1,858건(4.4%), 아동학대의심사례는 37,071건(87.7%)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총 38,929건으로 전체 신고접수의 92.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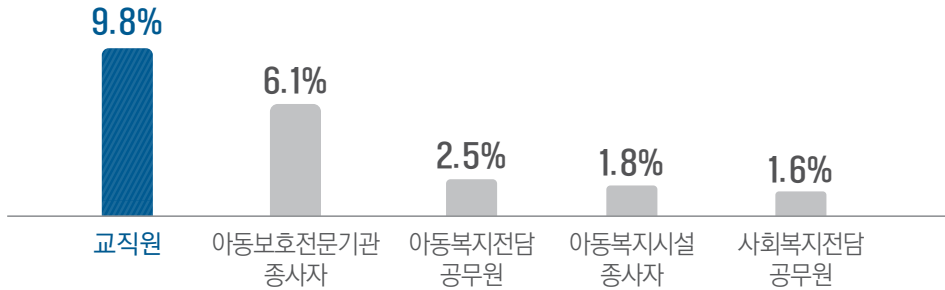


3) 참고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총 38,929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 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973건 (28.2%)으로 나타남. 그 중 교직원이 3,805건 (9.8%) 가장 높음. 교직원은 2016년 3,978건 (15.4%), 2020년 3,805건 (9.8%)으로 5년 연속 신고의무자 중 가장 높은 신고비율을 차지함



- 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중 초·중·고 교직원의 신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 기여 중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신고비율 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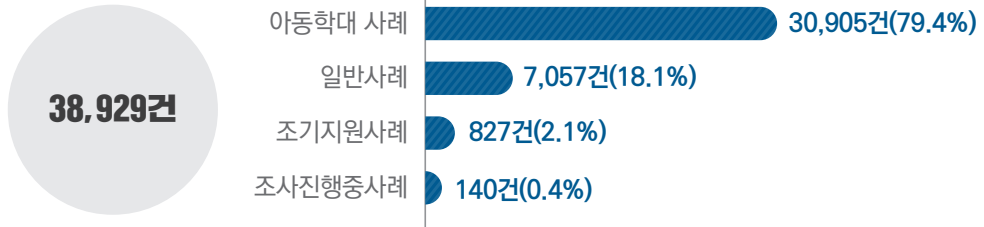
순위	직군	연도
1순위	초·중·고 교직원	2020
2순위	아보전기관장, 종사자	2020
	보육기관 교직원	2019
3순위	아동복지전담공무원	202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19
	의료인·의료기사	201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017
	아보전 상담원	2016

- 비신고의무자 직군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모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 본인이 신고한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5,533건(14.2%)로 나타남

사례판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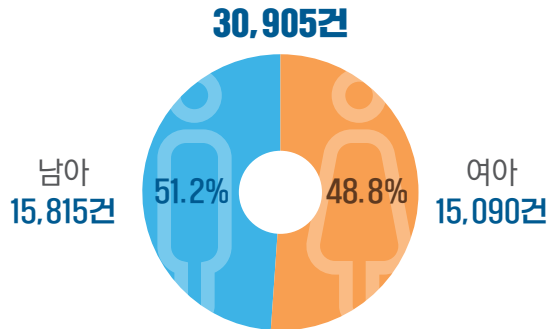
- 아동학대의심사례 총 38,929건 중 아동학대 사례는 30,905건(79.4%), 조기지원사례 827건 (2.1%), 일반사례 7,057건(18.1%), 조사진행중사례 140건(0.4%)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피해아동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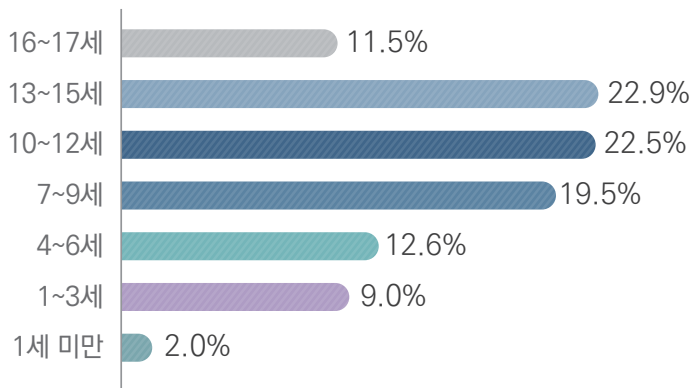
-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 중 남아가 15,815건(51.2%), 여아가 15,090건(48.8%)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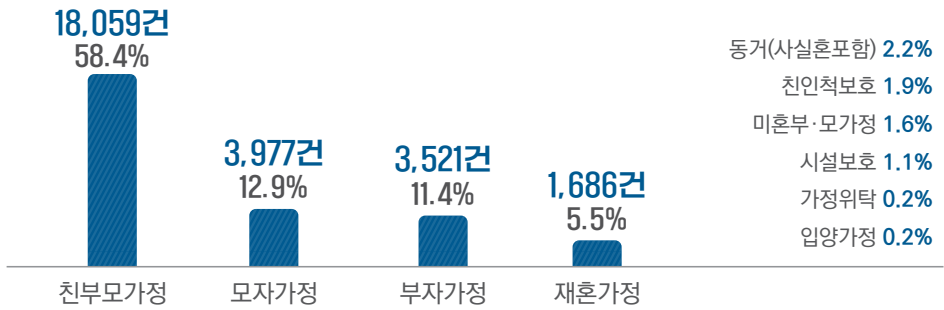
- 피해아동의 연령의 경우,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가 7,077건 (22.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다음으로는 만 10~12세가 6,957건 (22.5%), 만 7~9세가 6,016건(19.5%)으로 나타남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족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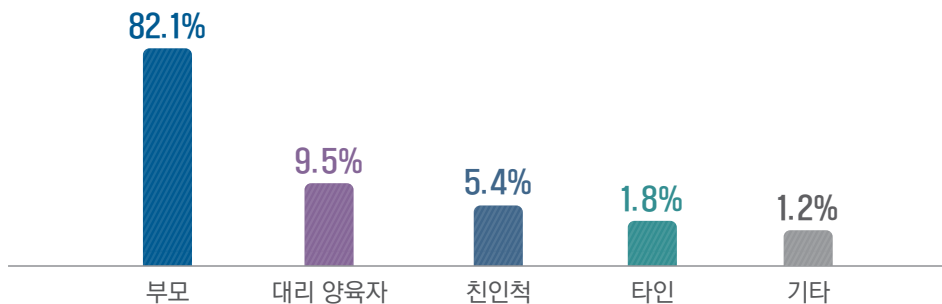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피해아동 가족유형의 경우, 친부모가정 18,059건 (58.4%), 모자가정 3,977건(12.9%), 부자가정 3,521건(11.4%), 재혼 가정 1,686건(5.5%) 순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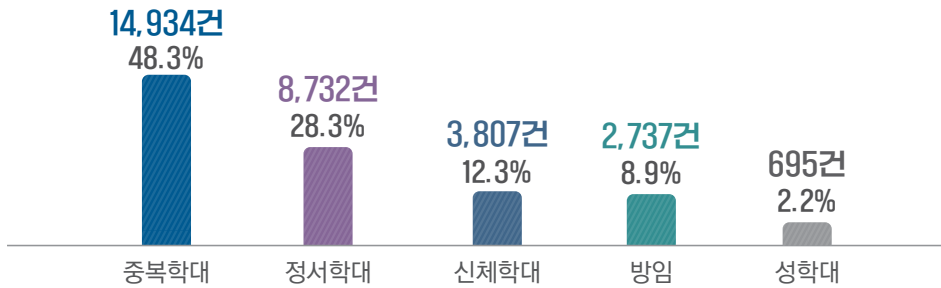
-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 25,380건(82.1%), 대리 양육자 2,930건(9.5%), 친인척 1,661건(5.4%), 타인 565건 (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부모에 의해 발생한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13,471건 (43.6%), 친모는 10,945건(35.4%), 계부 578건(1.9%), 계모 312건 (1.0%)이며 대리양육자 중에는 초·중·고교 직원이 882건 (2.9%)으로 가장 높음



아동학대 사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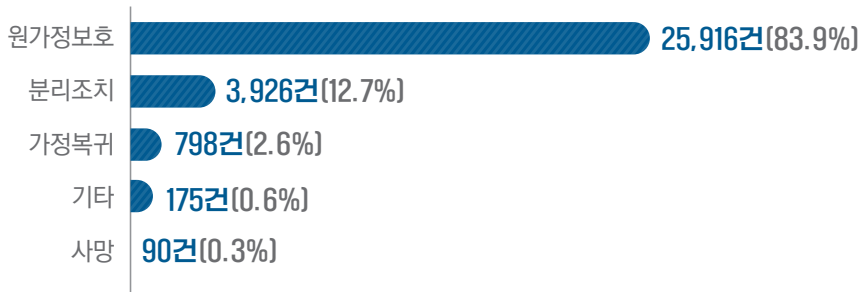
- 아동학대 사례 유형은 중복학대가 14,934건(48.3%)으로 가장 높음. 정서학대 8,732건(28.3%), 신체학대 3,807건(12.3%), 방임 2,737건(8.9%), 성학대 695건(2.2%) 순으로 나타남
- 중복학대 중 신체학대·정서학대가 12,130건(39.2%)으로 가장 높았고, 정서학대·방임이 1,086건(3.5%),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이 996건(3.2%), 모든 학대 유형이 함께 발생한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방임은 19건(0.1%)임



학대 피해아동 사례 종결 현황



- 원가정보호가 지속된 경우가 25,916건(83.9%)으로 가장 많음. 분리조치된 경우 3,926건(12.7%), 가정복귀 된 경우는 798건(2.6%), 기타 175건(0.6%), 사망 90건(0.3%) 으로 나타남



학대행위자 상황



- 2020년 아동학대로 판단된 30,905건을 바탕으로 학대행위자 상황 중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법적조치를 진행한 건은 11,209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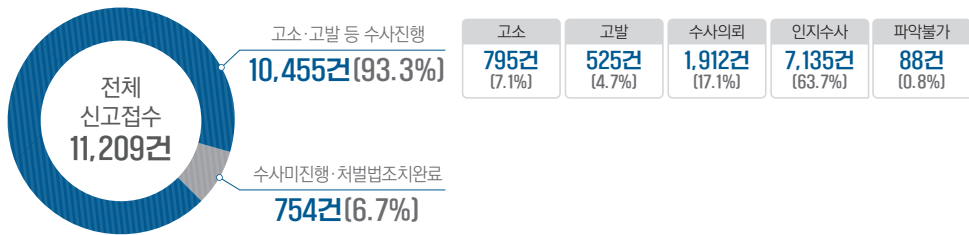
아동학대
사례 건수

30,905건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11,209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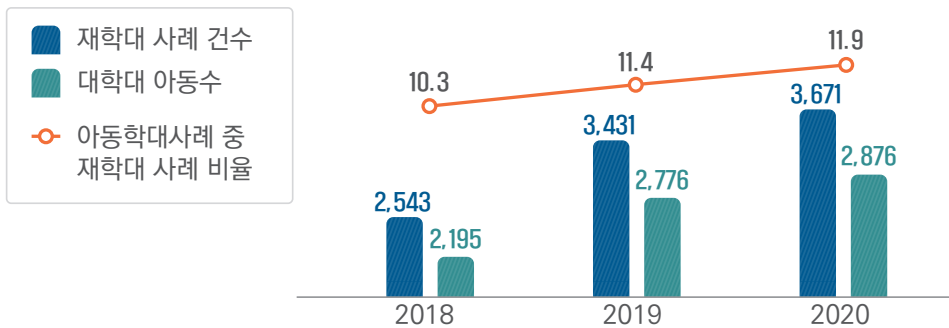
- 11,209건 중 2020년 학대행위자 대상 고소·고발이 진행된 경우는 10,455건(93.3%)임. 고소·고발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754건(6.7%)임



재학대 사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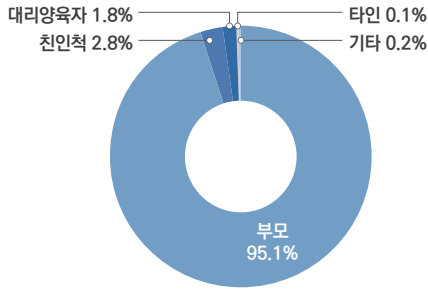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20년에 신고접수 되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재학대 사례는 총 3,671건이며 재학대 아동 명수는 2,876명임. 2020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30,905건 대비 재학대 사례 비율은 11.9%임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재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3,492건(95.1%)으로 월등히 높음.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가 103건(2.8%),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65건(1.8%)임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

3,492건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사례

10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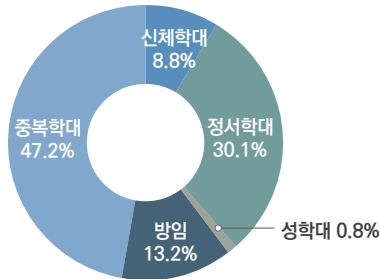
대리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사례

65건

재학대 사례 아동학대 유형



- 재학대 사례에 대한 아동학대 사례유형의 경우, 중복학대가 1,731건(47.2%), 정서학대 1,105건(30.1%), 방임 483건(13.2%), 신체학대 323건(8.8%), 성학대 29건(0.8%) 순으로 나타남



중복학대

1,731건

정서학대

1,105건

방임

483건

신체학대

323건

성학대

29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II



아동학대 발견 및 대응

1. 조기발견과 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3. 미취(입)학, 미인정결석, 미전입 학생 관리 방안

1. 조기발견과대응을 위한 교육현장과 기관의 역할



아동학대 대응 절차별 학교의 역할⁴⁾

	평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건강과 안전 확인 •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의 제보에 대한 관심 • 학생,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자 교육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징후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신고 여부 판단 • 아동의 신체 또는 정서적 이상 징후 기록 및 면담 • 필요시 위(Wee)클래스 및 위(Wee)센터 상담, 보건교사 협조 의뢰
	응급상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 상황으로부터 아동의 안전확보 및 보호 • 병원 이송 및 응급조치 진행
	아동학대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아동학대 증거 확보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현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 시 학교 내 독립된 장소, 관련 자료 제공 • 필수면담대상자(담임교사·상담교사) 조사 협조
	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보호와 비밀 누설 금지 • 지속적 관찰을 통한 피해아동 상태 확인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아동의 학적처리 및 보호지원 방안 마련(등교학습지원 등)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 • 의심상황 발생 시 112에 신고 •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심리치료 연계 지원 등

4) 참고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경기도교육청, 2020)

학대의심정황 확인 후 신고 사례

- 위(Wee)클래스 상담교사는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동과 지속적 상담을 진행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함. 학생에 의하면 모는 성적이 떨어지면 '죽어라', '쓸모없는 년' 등 폭언과 학생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때렸다고 함. 상담교사는 상담 과정에서 이를 파악 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112에 신고하였음

조사 협력 사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대면조사 진행 시 아동이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에 거부감을 보임. 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 교사가 아동을 설득하였으며 상담실 지원 및 조사 시 교사 입회하에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도모함

비밀전학 협조 사례

- 부의 친모 및 아동에 대한 지속적 폭행으로 아동학대 판단되어 친부에 대한 임시조치가 결정되었으나 친부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어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피해학생 비밀전학 협조 지원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자 신변 보호를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법원에 임시조치 연장 신청을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함

시설 분리 아동의 학업유지 조력 사례

-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친모가 치료를 거부하여 부정적 영향이 아동에게 오랫동안 노출됨.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은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분리되었으며 학대행위자인 친모는 의료기관 등 위탁(임시조치 제6호)으로 병원에 입원함. 아동은 학업의 열의가 있어 쉼터생활로 학업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학교 교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 및 추가적학습지원을 통해 적절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이에 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은 학교 수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이 빨리 적응할 수 있었음



교육(지원)청의 역할



평상시

- 아동학대예방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방안 마련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 업무 등)
- 아동학대 대응 지자체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참석 및 협조



사안발생 시

- 아동학대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피해아동 지원 체계 연계 및 협조
- 주요 교육정책(비밀전학, 등교학습지원 등) 및 제도 지원
- 유관기관 대상 업무협조

참고 교육(지원)청의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 총괄 및 아동 보호 관련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을 위한 취학관리전담기구 설치
- 취학의무대상자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학의무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협조 요청



취학관리전담기구의 업무

- 1. 취학의무대상자의 현황 파악
- 2. 취학 의무 이행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 3. 취학 의무 이행을 위한 취학 독촉 상황 확인·점검
- 4. 취학 의무 면제·유예 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마련
- 5. 다음 각 목의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 가. 제15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입학연기대상자로 통보된 아동
 - 나. 제25조 제4항 또는 제26조 제4항에 따라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으로 그 경과가 통보되거나 보고된 아동이나 학생
 - 다. 제28조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 라. 제92조의2 제2항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제적·자퇴 또는 퇴학 조치된 사유로 그 경과가 통보된 아동이나 학생
- 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취학의무대상자의 취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외부 기관의 역할

신고접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한 판단 (아동학대 의심사례와 일반상담 여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즉각 현장출동 및 아동학대 조사 실시
- 일반상담 : 필요시 유관기관 등 관련 정보 안내

- 현장출동 및 조사의 기초 정보 파악(*경찰 동행출동 요청)

* [피해(의심)아동의 안전여부, 피해정도, 피해(의심)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인적정보 등]

경찰

- 112 신고 접수
-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동행출동 협조
-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의심사례 통보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공유
- 현장 확인 및 아동의 안전확보

아동학대 조사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 의심내용 학대 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및 증거 수집
- 추가적인 학대 발생 여부 확인
- 피해(의심) 아동 안전조치 및 응급조치 검토, 보호시설 인도

경찰

- 학대(의심)행위자 조사

사례판단·조치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조사 자료 근거한 아동학대 여부 판단

경찰

- 응급조치 실시/긴급입시조치 여부 판단
- 수사 인계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 「아동복지법」 근거 보호조치 및 사건처리 여부 판단
-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개입 방향 및 절차 진행
- 피해아동 및 가족 지원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
전문기관

- 연계받은 피해아동 및 가족 사례관리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교육·상담·치료
- 아동학대 행위자 임시조치, 보호처분 수행
- 가정복귀프로그램 진행



자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반적 업무 수행**
- **신고사항 통보** 시·군·구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 경찰통보 (경찰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 112 통보 및 동행출동 요청, 경찰 동행출동 불필요한 경우 APO에게 유선 통보)
-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아동학대 신고접수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아동학대 여부 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 아동에 대한 조치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경찰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 요청 및 수사 의뢰, 고소/고발
- **피해아동 응급조치 및 즉각 분리, 아동 입소 가능 시설 파악 및 인도,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 **사례점검 및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종결 실시



경찰

- **아동학대(의심)사례 통보** 신고 및 현장경찰(지구대)의 초동조치 결과 등의 정보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해 48시간 내 관할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통보
- **사건 모니터링** 사건 진행 중인 피해아동을 학대우려아동으로 선정, 월 1회 이상 모니터링 및 수사 모니터링 실시(사건 송치 전까지)
- **전수합동조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재발 위험성,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 등 검토 위해 시·군·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 **유관기관 협업**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유관기관·학교 등 합동, 피해아동 보호 사례 회의 참여
- **시설점검·교육** 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 합동, 보호시설 점검 및 인식전환 교육



아동보호전문기관

- **조사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동행 조사 및 의견 공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미배치 지역은 2022.9.30.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 지원
- **사례관리계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전문적·다각적 분석, 안전·특성·육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관리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 재학대 예방 및 후유증 감소를 위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치료,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원 등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 업무 수행
- **상담 및 교육 위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보호 처분(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제8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 위탁) 수행, 상담 및 교육 결과보고서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
- **가정복귀 프로그램** 학대 피해아동이 분리된 후 가정으로 복귀 시, 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 및 가정복귀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발급
- **사건 모니터링 및 수사 협조** 사건 모니터링 실시 및 수사 협조 요청에 따른 사례관리 내용 공유 등



2.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위기 환경 아동 정보 공유

보건복지부(e아동행복지원시스템)와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주기적인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 정보 공유 실시

(‘21.8. 관계부처 합동)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발굴된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청 등과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재)학대 여부 면밀 관찰

참고 정보 공유의 목적은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에 대한 조기발견 및 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이라는 사유만으로 교사 등이 학대 신고할 의무는 없음

◎ e아동행복지원대상자 발굴 개요

-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9조의2 및 제12조의2, 「아동복지법」 제15조의4 및 제66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기 가구 발굴 목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수집·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명단 생성



활용 지표(44종)

- 아동 특화변수(아동학대 이력 등 10종)
- 행복e음 연계변수(아동복지시설 퇴소 이력 등 6종)
- 복지 사각지대 발굴변수(자해 시도자 등 28종)

- 발굴된 대상자 정보(분기별 80만)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읍·면·동 등 지자체 현장 방문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하고 있음

◎ 정보 공유 개요

- 범정부적 책무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교육 부문 간 정보 공유 활성화 필요
- 당초 지자체에만 공유되던 '학대 위기 환경 우려 아동 정보(e아동행복지원대상자 정보)'를 교육부문에까지 공유 확대('21.6.~)



- 공유 대상: 분기별 2만여 명 예상, 초·중·고 대상 여부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되, 유치원은 유아학비 지원 여부 추가 필터링
- 공유 정보: 개인식별정보 및 발굴 정보
- 근거: 「아동복지법」 제22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 활용: 아동학대 조기발견·발굴 및 피해아동 신속 지원

※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아동학대 예방, 취약관리전담기구, 교육복지, NEIS, 유치원 업무 담당자 등) 협조 필요(예: 협의회 구성)

3.

미취(입)학, 미인정 결석, 미전입 학생 관리 방안⁵⁾



* 세부 절차 및 관리 방안은 각 시·도 지침에 의함



미취(입)학 아동(학생) 관리 흐름도 (예시)

12.20.~
예비소집
이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전날
(초등학교)



입학일~
2일
(초·중학교)

• 취학 아동 명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 전년도 미취학 아동 누락 여부 확인

• 예비소집 참석 홍보

* 예비소집일에 취학대상 아동 동반 참석 홍보



•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아동 안전 확인

•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전출 아동이 미취학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유의

* 공동학구 내 학교(초등)의 장은 공동학구 배정 미취학 아동의 취학 현황을 공동학구 내 다른 모든 초등학교에도 송부



• 미취(입)학 사유 확인

- 유선 연락을 통한 미취(입)학 아동(학생) 취(입)학 독려
- ※ 유선 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미취(입)학 아동(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재 확인이 안되는 아동에 대해 학교·지자체에서 기초조사 진행 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교육장 보고

- 미취(입)학 아동(학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5) 참고 :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가정방문 등 미취(입)학 아동(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가정방문 실시(동장 협조)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 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 가정방문 시 경찰관 동행 요청은 유선(182)으로 가능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 생략 가능

입학일 경과 3일~9일 (초·중학교)

미취(입)학 아동(학생) 및 보호자 내교(면담) 요청

- 가정방문에도 취학하지 않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에게 아동(학생)과 함께 내교(면담)요청

미취(입)학 아동(학생) 및 보호자 내교(면담)

- 면담 시 취학 독려
- 면담 과정에서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 내교(면담)조치 이행과정에서 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읍·면·동장, 교육장 보고

- 미취(입)학 아동(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요청 및 면담 등 조치 내용, 수사 의뢰 사항, 수사 의뢰 결과, 학생 관리카드 및 집중관리 필요대상 여부 보고



입학일 경과 10일 이후~

정기 관리

- 미취학 아동(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 정기적(분기별 1회/월 1회 등) 아동(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 관리 및 보고 방법은 시·도 지침에 의함

교육장 보고

- 미취(입)학 아동(학생) 명단 및 조치사항 등 결과보고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한 대응 (예시)

결석당일
(결석1일차)
~
결석당일
이후 1일
(2일차)

- ▶ 우선 연락 시 반드시 아동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2일 차에도 가정방문 실시



•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결석 아동과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을 통해 출석 독려

• 교육장 보고

- 우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지자체에서 기초조사 진행 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할 시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교육장에게 보고



결석당일 이후
2일(3일차)
~
4일(5일차)



결석당일
이후 5일
(6일차)

• 결석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 가정방문 시에는 학교 교직원,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 경찰이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한 경우라도 아동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공문(경찰 수사 의뢰서) 발송
-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 결석 아동 내교(면담) 요청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과 함께 내교(면담) 요청

- ▶ 내교 요청은 우선 우선 연락을 통해 실시, 우선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통지문을 직접 전달, 직접 전달이 안되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 생략
- ▶ 교사의 신변위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가정방문 단계(공문 통한 수사 의뢰 전)부터 학교장이 우선(182)으로 경찰동행 요청 가능
- ▶ 민원상담, 실종신고 182로 문의
- ▶ 이종국적자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 의뢰 시, 가능한 한 외국이름 병기

• 결석 아동 및 보호자 내교(면담)

- 보호자와 아동 면담 출석 독려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

▶ 면담 과정에서 출석이 어려운 사유 확인
- 아동학대(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결석당일
이후
6일(7일차)
~
8일(9일차)

• 경찰 수사 의뢰

- 내교(면담) 조치 이행과정에서도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내교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수사 의뢰 사항, 수사 의뢰 결석 아동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 경찰 수사 의뢰 요청은 반드시 공문으로 발송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우선으로 통보 후 추후 공문 발송

▶ 경찰 수사 의뢰 전에 출국조치 반드시 실시

▶ 수사 의뢰 시, 학교에서 확인한 내용 (진행사항 및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원활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 이중국적자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 의뢰 시, 가능한 한 외국이름 병기

• 교육장에게 보고

- 9일째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과 학생관리카드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 내용과 집중관리 필요 대상 여부)를 작성하여 보고, 교육장은 매달 정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

▶ 미인정 결석 학생
-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재량 휴업일, 공휴일 제외) 이상 결석아동' 또는 '2회 이상 출석 독려를 하였으나 결석 상태가 계속되는 아동'

• 교육장 소속 전담기구에서 관리

- 전담기구는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해 개인별 관리카드를 마련하고, 집중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여 관리
- 분기별 1회 이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 미인정 결석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장에게 복귀 현황을 문서로 복귀일 이후 2일 이내에 보고
- 학교장은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여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 학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



결석당일
이후 9일
(10일차)

- ▶ 학교장은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개인별 관리카드 작성에 적극 협조하고, 전담기구는 집중관리대상자 선정 시 학교장 의견 반영
- ▶ 미인정 결석 연속 7~10일차
- 결석학생 담임교사는 미인정 결석학생 정보를 나이스에 등록(나이스 / 학적 /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 미인정 결석 학생 등록)
- 업무담당자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 나이스 보고 및 교육청 제출



전출 후 미전입 아동에 대한 대응 (예시)

전출 기일 ~ 2일



- 학부모는 전출 시에 재학 중인 학교(전출교)의 장과 전입할 읍·면·동의 장 및 전입할 학교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려야 함
- 재학 중인 학교(전출교)의 장은 아동 전출일~2일째에 전출아동 전출자료 송부 요청이 오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아동이 전입한 읍·면·동을 확인함

* 전입한 읍·면·동의 장에게 전입할 학교를 확인하여 아동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며,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

<초등학교>

- * 학부모는 재학 중인 학교(전출교)의 장과 전입교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함
- * 전입할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은 해당 아동이 전입한다는 사실을 전입할 학교(전입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함

<중학교>

- * 재학 중인 학교(전출교)의 장은 아동 정보를 전입교 관할 교육장에게 통보함
- * 교육장은 학교 배정 후 관련 사실을 재학 중이던 학교(전출교)와 전입할 학교장에게 알려야 함

전입 기일



- 해당 아동의 보호자 및 전입할 읍·면·동의 장, 전입교 관할 교육장으로부터 전입 사실을 통보받은 전입할 학교(전입교)의 장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함

- 전입 학교장은 전입 아동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장기(미인정) 결석 아동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함

- 전입 학교장은 아동 전입일 당일~2일째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출교에 아동의 전산자료를 요청함

* 자료 요청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전입 학교장은 사유를 전출 학교장에게 통보함

- 전출일과 전입일은 등교일을 기준으로 공백기간이 없도록 처리하되 도서벽지 등 원격지인 경우 1일의 공백 인정 가능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III

피해아동의 이해와 대화법

1. 피해아동의 이해
2.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3.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

1. 피해아동의 이해



학대 피해아동의 특성⁶⁾

인지적 특성

- 학대 책임과 비난을 자기 자신에게 귀인
- 자기 비하 또는 자기 경시
- 자기개념의 손상
- 인지 능력 저하
- 대인 예민성 저하
- 부정적 사회적 판단

행동적 특성

- 자기 파괴적 행동
- 주변에 대한 공격적 또는 폭력적 행동
- 또래 관계 문제
- 학교 및 사회적 부적응

정서적 특성

- 감정 조절 저하 및 감정 인식 둔감화
- 감정 억압의 대처, 부정적 정서에 민감
- 애착 형성의 문제
- 충동 조절의 문제
- 우울한 감정, 불안 고조, 위축



아동학대의 후유증

- 아동·청소년기의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은 건강·발달·성장에 영향을 미침.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에 심각한 손상으로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학대 피해는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되어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및 부모 역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6) 참고 : 여성가족부 (2013). 가정폭력 피해대상 유형별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개발

신체적 후유증

- 신체적 손상 : 피부 결손 및 자상, 신체 일부의 변형 및 절단, 화상, 골절 및 치아 골절, 안구 출혈, 기타 내부 장기 파열, 두뇌 손상, 성병 감염, 극단적인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음
- 성장의 지연 : 적절한 영양 섭취의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지 못하고 성장이 지연됨
- 생리기능의 변화 :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신경전달체계 이상 초래할 수 있음

심리적 후유증

- 지능 및 인지 기능의 손상 : 아동학대로 인해 지능 및 인지 기능 결함이 발생하기도 하고, 발달지연과 중추신경계 장애를 초래하기도 함
- 감정 조절 기능의 저하/이상 :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들은 감정적으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에 저하를 초래하기도 함
- 자기 개념의 손상 : 반복적인 처벌, 구타, 위협 등으로 인해 아동은 실제로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벌 받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자기 개념을 갖게 되기도 함
- 학교 부적응 :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아동은 집중력이 짧고, 부산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학업 수행이 저조한 경우가 있음
- 애착 형성의 어려움, 지나친 공격성 및 사회성 위축,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적 행동, 정신병리 등



아동학대 후유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학대 및 방임 발생 당시 아동의 연령, 발달 상황, 가정환경
- 아동의 기질, 성향
-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학대의 유형
- 아동의 대처 능력이나 적응 능력
- 학대의 빈도, 기간, 정도
- 가족이나 지역사회와의 지지
-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와의 관계
- 전문가들의 개입방식
- 학대 이후의 생활

2. 피해아동과 대화하기



- 교사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피해아동의 심리적·신체적 안전 확인 및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화 진행
- 피해아동의 상황 및 심리·신체적 상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은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해결중심적⁷⁾ 관점으로 접근
- 학대 피해아동과 사안에 대한 민감한 내용이나 전문적인 상담은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



- 학교 현장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 상담 지원 및 연계는 위(Wee)센터와 위(Wee)클래스, 상담교사, 보건교사, 외부 전문기관 등 피해아동의 상황에 맞추어 연계 및 지원할 수 있음



학대 피해아동과의 초기 대화법

- 대화 초기에는 상황이나 어려움보다 일상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원래는 무엇을 하려 했었나요?"
 "요즘에는 어떤 것에 흥미가 있나요? /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학교생활에서 괜찮은 것/즐거운 것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잘하나요?"



- 피해아동에게 학대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이나 이야기를 꺼내는 것보다 학생의 일상 생활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전달함으로써 학생의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음

7) [해결중심적 접근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대상자에게서 이끌어 내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과거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경험 속에서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개인 고유의 강점 및 자원(해결방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따라서 피해아동의 이야기의 거짓 없음을 믿어주고 경청하여 격려하면서 현재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음.

- 피해아동은 교사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할지 예상을 못 하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 자신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음

"지금까지 이야기를 잘 해주셔서 고마워요.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최근에 힘도 없어 보이고 몸도 피곤해 보여서 걱정했어요. 선생님이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어떤 (힘든/실망스러운/어려운) 경험이 있나요?"

"여기에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 작은 자가 있어요. 10점은 너무 힘들어서 속상한 마음이고, 1점은 모든 일이 편안하여 즐거운 마음이라면, 오늘 몇 점 정도 되나요?"

"(8점이라고 대답하면) 어떤 점이 힘들어서 8점인가요? 선생님에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일 때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좀 더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이런 경험이 (언제/누구와/어디에서) 있었나요?"

- 피해아동이 학교생활에서 흥미 있거나 잘 하는 것 등 일상적인 부분에 대해 질문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 피해아동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상황에 대해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교사의 마음을 담아 질문을 하는 과정이 도움 됨

"OO이가 힘들 때 같이 있어 주는 사람(친구 등)은 누구인가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친구 등)은 누가 있나요?"
 "그 사람(친구 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와서 이야기해주세요."



- 피해아동이 어려움에 대해 간단히 말해도 이를 수용하고, 아동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많이 있음을 깨닫도록 질문하는 과정이 도움 됨. 또한 교사가 관심을 갖고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아동학대 사안 진행 단계에서의 대화법

- 사안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학생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학교 등교, 학업 진행,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에 지지와 격려를 하여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 학생에게 지금 힘든 이후에는 다른 상황이나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지지하고 힘을 주는 대화를 이어나가는 접근 필요

◇ 시작하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나요?"

"오늘 재미있었던 혹은 집중할 수 있었던 일(수업)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친구들과는 어땠나요?"

◇ 피해학생의 대처에 집중하고 인정하기

"어떻게 오늘 학교에 등교할 수 있었나요?"

"그렇군요.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어떻게 학교에 와서 (지낼 수/견딜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그렇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오늘 친구들과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나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 여기에서 '어떻게'는 피해학생이 등교하고, 수업하고, 친구와 지낼 수 있는 강점과 자원을 갖고 있음을 전제 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끌어 내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단어임

◇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요즘은 힘든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학교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떤 것이 조금 (나아지면/달라지면/좋아지면) 집에서 가족과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이 OO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참고 학대 피해아동과 대화 시 주의사항

- ◇ 피해아동과 면(상)담을 할 때는 사전에 면담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피해학생은 타인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자신의 피해 상황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
- ◇ 피해아동과 대화 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한다.
 - 면(상)담 진행 시 교사가 긴장하거나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학생이 부담을 가지거나 위축되어 면담 자체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담을 가질 수 있음
- ◇ 편안한 말투와 함께 적절한 공감과 격려의 말을 한다.
 - 면담의 분위기는 교사의 말투나 표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사건에 대해 직접 묻는 등) 조사관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 ◇ 피해아동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교사와의 대화로 인해 이후 조사관과의 대화에서 정확한 진위를 탐색하는 데 잘못된 정보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피해아동과 대화 시 '학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사가 '학대'라는 말을 사용하면 학생은 마음이 위축되어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있음
 - 학생이 말하는 단어(언어, 어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음. (즉 본인이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말하는 것, 가족이 전혀 돌보아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등)
- ◇ '누가 힘들게 하나요?'라고 대상자를 특정해서 질문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은 학대한 행위자를 언급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후의 대화 지속 또는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음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화법

◎ 재학대 예방을 위한 접근⁸⁾

- 피해아동이 이미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내 온 경험에 대하여 지지하고 격려하며 해결 및 회복을 돕는 대화 과정 필요.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의 관심과 면밀한 관찰이 중요

"(이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다면) 어떻게 하면 괜찮은 상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전보다 괜찮지 않다면) 무엇이 달라지면 나아질 것 같나요?"

- 피해아동이 도움받길 원한다면, 상황만 자세히 묻기보다 앞으로 학교와 집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기대하는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나눔
- 이전에 좋았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고, 긍정적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등 대화를 진행하는 과정이 도움

"예전에도 지금처럼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8) 참고 : 노혜련, 김윤주 역(2015). 해결중심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Young, S. 2009, Solution -focused school: Anti-bullying and beyond). 학지사.

- 피해아동이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이야기한다면 교사는 이를 인정하고 칭찬하여 아동의 강점과 자원을 깨닫게 하는 것이 효과적. 이런 경험은 변화를 격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주변에서는 (아동의) 어떤 점이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이야기 하나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현재의 그런 모습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나요?"

- 피해아동의 이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삶에 도움이 될만한 것을 제안하면,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위해 더 빠르게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음

"(이전 경험 중) 도움이 되었거나 효과가 있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그걸 계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장애아동과 대화 시 유의점

- 시제 또는 주어는 일관되지 않으나 일관되고 반복적인 언어적·행동적 표현에 주의하고 확인 필요(특히 상승적 학대 시)
- 특정 인물에 대한 과민한 반응 또는 우월시하는 감정 표현에 주의하고 확인 필요
- 큰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대응하여 장애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정심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 필요

참고 장애 유형별 상담 시 유용한 TIP⁹⁾

◆ 지적장애 아동

-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개방형으로 함
- 계속해서 “예”라고만 답하는 경우 질문의 형태를 변경하여 형식적으로 반복적인 대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함
- 장애아동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지 확인함
- 장애아동이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없는지 확인함
- 주의집중력이 짧을 수 있으므로 적절히 휴식 시간을 제공함

◆ 자폐성 장애아동

- 자폐성 장애아동은 나이, 지적 수준, 언어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편차가 매우 크므로, 흥분하거나 통제되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보호자에게 미리 확인하거나 지원 인력의 배치가 필요
- 자폐성 장애아동은 새로운 장소나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 익숙한 일상을 뒤엎는 사건이나 낯선 사람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사가 진행되는 장소, 절차, 과정을 미리 안내하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함
- 대부분의 자폐성 장애아동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말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언어 지연, 말에 대한 이해력 부족, 반항어 등이 나타나므로 진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 동석인 동반 필요

◆ 뇌병변 장애아동

-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다양하므로 의사소통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조력인이 참여하도록 함
- 상담 과정에서 아동이 의사 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다려주어야 함
-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예/ 아니오를 설정하고 약속하여 직접 대답할 수 있도록 함 예) 눈 깜빡임-예/ 고개 젓기-아니오

9) 참고 : 경찰청,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3. 피해아동 보호자와 대화하기¹⁰⁾



- 면담 대상인 부모는 주로 자녀를 직접 가해하지 않은 부모일 확률이 높음. 현재 부모로서 책임감과 죄책감 등으로 힘들 수 있음을 이해하는 접근 필요

◇ 시작하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OO(자녀)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 원하는 미래 이야기하기

"이번 상황이 정리 또는 해결되면 OO이와의 사이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머님(아버님)는(은) 어떤 상황을 희망하시나요?"

◇ 긍정적 경험 알아보기

"OO이를 양육하면서 잘 지냈던 때는 언제였나요?"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그때 어머님(아버님)는(은) OO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혹시 최근에 그것과 조금이라도 비슷했던 때는 언제였나요?"

10) 참고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 이미 있는 강점 인정하기

"어떻게 이전과 다르게 OO에게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요?"
 "OO에게 그것이 좋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나요?"
 "OO이가 어머니(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 효과 있는 것을 더하기

"지금처럼 지내는 데 도움이 되었던 혹은 효과가 있었던 무엇이라도(어떤 것이라도) 계속 이어서(지속)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와 대화 시 유의사항

- 부모가 교사와의 대화에 우호적이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 판단을 중지하고 부모의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부모의 감정에 공감한다.
- 부모가 화가 나 있고 비판적인 경우라도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청한다.
- 부모가 노골적으로 화를 내거나 비판적인 경우에는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이나 기관이 그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협력 사항을 발견한다.
-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한다.
- 부모가 사용하는 단어를 면담하는 동안 적절하게 사용한다.
- 부모와 면(상)담을 나눌 때 '학대'라는 단어 사용을 유의한다.
 - 위축되거나, 반대로 방어하고 대화가 단절될 수 있음.
- 타 기관에서의 말을 전달하지 않는다.
 - 상호 간의 신뢰감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음.
- 부모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교육적 또는 지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참고 이주배경(다문화) 아동 보호자 대상 대화 시 유의점

- 이주배경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행정적 처리 과정은 국민인 아동과 다르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음.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 근거)
- 피해아동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배려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용어나 폄하하는 표현 주의. 예) "한국에선 이 정도는 교육 목적으로 해요", "그 나라에선 애를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하나 보죠?"
- 이주배경 대상자들은 언어와 문화 차이 등으로 표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통역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IV

아동학대 신고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 조치 흐름도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1. 아동학대 신고 및 사후 조치 흐름도



아동학대 최초 인지



수사기관(112) 신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 112 또는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이지킴콜앱으로 즉시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로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음
 - ※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도착 전 학교 차원의 보호 방안 강구
- 학교장에게 보고, 교육(지원)청에 사안 보고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및 사안 보고
 - 보고 과정에서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에 피해아동 및 신고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 사안에 따라 처리 순서는 다소 다를 수 있음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현장출동 및 조사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간 제공 등 협조
-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은 필수면담 대상자에 해당



- 사후지원, 사례관리 및 서비스 협조

- 사법기관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일시)보호조치,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 경과 관찰 및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최초 신고·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수시 보고

2.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의 이해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제도

- 교육현장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 신고 후 학대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엄수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아동학대 신고

- 누구나 신고 가능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 교원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1항

▪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기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부과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 학교장에게 보고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긴급한 경우(학생의 신변이 위급한 경우)는 수사기관에 우선 신고 후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및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함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직군별 신고의무자 (총 25개 직군)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법률명(약칭)	신고의무자
아동복지법	-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영유아보육법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유아교육법	- 유치원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초·중등교육법	- 학교의 장과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학원법	- 학원의 운영자 겸사 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의료법	-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 의료기사
한부모가족지원법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종사자
사회보장급여법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창과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성폭력방지법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종사자
119구조구급법	- 119 구급대의 대원	아이돌봄 지원법	- 아이돌보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입양특례법	- 입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3. 아동학대범죄 신고의 실제



신고 방법

◇ 수사기관(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아이지킴콜 앱

- 학교 또는 학교장 명의로 신고 가능

◇ 아이지킴콜앱의 기능

- 전화 신고가 망설여지는 경우 앱으로 신고 가능
- 아동학대 징후, 아동학대 예방교육, 홍보자료 등 정보제공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통해 상황을 점검 후 신고 가능
- 다운로드 방법
 - '앱스토어(IOS)' 및 'PLAY스토어(안드로이드)'에서 다운로드 또는 '이지킴콜 앱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

이지킴콜 앱 QR코드









IOS용



안드로이드용

참고 신고 전화 (예시)

-  00학교에서 아동학대(의심) 사안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  00학교 재학 중인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 신고합니다.
-  아동의 현재 상황은 합니다.
 - 아동의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아동의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아동의 인적 상황은입니다.
 -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연락처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은입니다.
 - 이름, 성별, 나이, 연락처 등 / 단, 학대행위자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 가능
-  그 외 당부사항은입니다.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당부
 - 추후 연락이 필요한 경우 통화 가능한 번호 제공(학교 대표 전화번호 등)

신고해야 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폭력·유기 등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면담을 거절하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이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소재 불명인 경우
- 출석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이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 보호자 연락, 영상통화, 가정방문 등으로 아동학대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 학생상담, SNS 등을 통해 자신이 학대받았다고 하는 경우
-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 등 아동 보호가 응급한 경우
- 가정폭력 사안 발생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기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1개 이상의 문항에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음 (P.37 참고)

참고 신고와 고소·고발의 차이

- '신고'란 국민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정 관청에 일정한 사실을 진술·보고하는 일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 제삼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고소, 고발과는 구별됨

☞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신고에 필요한 내용



◆ 아동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대행위(의심)자의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 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과의 동거 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 피해(의심)아동의 상황

- 안전 여부, 응급조치 필요 여부, 심신 상태, 가정 상황 등

◆ 기타 사항

- 추가 아동 존재 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아동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 상태 등)

※ 신고자는 최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 학대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도 신고 가능



신고 시 주의사항



- ◆ 아동학대 최초 인지 시 즉시 신고
 - 신고 지체 시 아동의 위험 증가, 증거 멸실,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응급상황 시 아동의 안전 및 보호
 - 아동학대행위자에 의한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오기 전까지 학교 차원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 ◆ 학대(의심)행위자에게 신고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기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일 수도 있으므로 신고내용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는 등의 행위로 아동학대 증거가 조작 또는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몸을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 ◆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출동하도록 요청
 - 당장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반 출동 요청
- ◆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아동을 대함
 - 피해학생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대하도록 노력
- ◆ 현장조사 전에 피해학생에게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
 - 피해학생이 계속된 질문으로 기억에 혼동이 생길 수 있음
- ◆ 신고 후에도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적극 협조
 - 피해학생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 ◆ 피해학생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학교 내 업무담당자와 관리자 등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도록 함
- ◆ 아동학대로 사망 사건 발생 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치료 고려
 -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단위학교 위(Wee)클래스,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

참고 아동을 보호하거나 관리, 교육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해야 함



교육(지원)청 사안 보고 시 주의사항



- ◆ 보고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
 - 최소한의 필수 관계자 외 정보 공유나 노출 금지
- ◆ 사안 관련 공문작성 시 주의
 - 대국민 공개 여부: 비공개 6호, 목록 비공개
 - 열람 범위: 열람 불가
 - 열람 제한 기간: 설정 안 함

참고 아동학대범죄 신고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예

- 담임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도 확실한 판단이 들지 않아 상담교사에게만 알리고, 이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관련 문의나 상담만 하고, 수사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12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제보를 한 경우



TIP! 아동학대 사안 발생 시 언론 대응

-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응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 개인 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임
-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 창구를 관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
- 학교관리자 등은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와의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언론 대응

참고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대응

-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학교장은 사안에 따라 2차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한 후 사안의 경중과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사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조치 가능. 이때, 학교나 교육(지원)청은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대응 주관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자체 정보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 간 협조 요청 가능

- 분리의 예시: 동선 분리, 수업 배제, 업무 배제, (임시)담임 교체, 연가 등의 승인 등

※ 「교육공무원법」 개정(2021.12.25. 시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됨.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제4호 바목

-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되었을 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함(교육지원청의 업무담당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있음). 이때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나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 (관계부처 합동 '20.7월)

- 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대상 지속적 모니터링 및 관리. 이후 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연계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 진행
- 교육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교원, 교육공무직, 일반행정직, 그 외 등) 피해아동 보호차원에서 분리 및 대응 필요. 이는 담당 부서와 논의하여 진행.

판례로 보는 아동학대 사례

학대행위자가 교사인 경우



체육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때림
(벌금 300만 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 피고인은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13세) 체육 수업시간에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도록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친구와 떠들자 화가 나, 출석부를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2019고단235]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2학년 교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17세)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머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고합37]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반항하자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림
(벌금 200만 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선고)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이다. 피고인은 반 전체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아동인 피해자(12세)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733]

4.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비공개 의무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한 신고자 보호조치



-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 신고 관련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법원은 증인 신문 시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거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
- 법원은 공판기일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가능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 조치 가능



신변안전 조치

-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④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 아동학대범죄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됨
-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 가능
-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5조

참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위반 사례

- SNS 등에서 신고자나 그 가족의 신원에 대해 알리거나 유포하는 경우
- 학대(의심)행위자 등이 학교에 연락하여 신고자를 특정하여 문의하자 학교(교직원)가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 경우
- 신고자 이름을 명기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사안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문서 비공개 및 열람 불가 처리를 하지 않아 공개 또는 유포되는 경우
- 언론보도를 통해 사진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방영함으로써 신고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신고자를 추정할 수 있게 한 경우

참고 아동학대 신고를 한 교원이 협박 등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이라 함) 상 보호

- 「교원지위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장은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이라 함) 제15조)
 - * 보호조치 :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
- 「교원지위법」 제17조에 따른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V

아동학대 사안처리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3.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제도·정책

1. 아동학대 사안처리 흐름도¹¹⁾



단계별 사법절차

신고 접수

- ▶ 신고접수
 - 국번 없이 112(전화, 문자)
 -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
 - 모바일앱(아이지킴콜앱)



사안 조사

- ▶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 출동
 - 피해아동, 학대행위(의심)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관계인 조사
 - 진술 불일치 시 주변인 조사 등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여부 사례 판단
 - ※ 1차적으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여부를 판단. 학대판정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학대여부를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제공, 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판단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학교의 역할

역할

- ▶ 아동학대 신고
 - 학대행위자가 보호자인 경우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도록 주의
 - 증거 필요시 확보
-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 보고

역할

-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사전에 장소, 시간 등 협의 필수
 -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 관련 자료의 제공
- ▶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 등 필수 면담자 협조

※ **교육(지원)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사례 판단 결과를 학교장과 공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 마련

역할

11) 참고 :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조치

피해아동

(1) 응급조치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실시

- ▶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지 및 격리
- ▶ 피해아동을 보호시설 및 의료기관으로 인도

(2)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실시

-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 ▶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피해아동에 대한 일시보호조치(즉각분리) 가능

학대행위자

(1) 긴급임시조치

경찰 실시


-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2) 임시조치

경찰신청→ 검사청구 → 판사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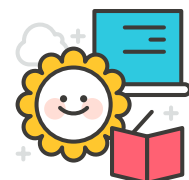
- ▶ 퇴거 등 격리, 접근 금지
- ▶ 친권 관한 행사 제한·정지
- ▶ 상담 및 교육 위탁
- ▶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사법처리

역할

- ▶ 피해아동 학적처리
 - 출석인정·인정점부여
 - 비밀전학(필요시, 학적 변경 없는 등교학습 임시 지원)
 - 수사기관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관련 학교 등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필요
 - 모든 과정은 철저한 비밀 유지
- ▶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사에 적극적 협조



사법처리

피해아동
가정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 ▶ 퇴거 등 격리
- ▶ 접근 금지
- ▶ 아동복지시설 등 보호위탁
- ▶ 의료기관으로 치료위탁
- ▶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상담·치료위탁
- ▶ 연고자에게 가정위탁
- ▶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임시보호명령 가능

학대행위자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단

- ▶ 경찰: 수사 후 사건 송치
- ▶ 검찰: 결정 전 조사 후 처분

경찰	검찰	법원
수사 후 사건 송치	공소제기	형사법원/형사판결
	아동보호 사건 송치	가정법원/보호처분
	조건부 기소유예	종결
	불기소	



사후관리(지속관리)

피해아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상담 및 의료지원
-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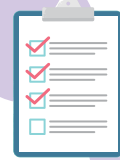
학대행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시

- ▶ 보호처분 이행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위탁 등)
- ▶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 심리치료, 가정지원 등

역할

- ▶ 아동을 대할 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태도 유지
- ▶ 아동의 심리나 재학대 여부 세심하게 관찰 (필요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공유)
- ▶ 재학대 발생 시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연락
- ▶ 피해아동 관련 변동 사항 발생 시 교육(지원)청 수시 보고
- ▶ 필요시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참석

2. 사법처리 단계와 기관별 역할



아동학대 신고 및 사안 보고



- 교사 직군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학교·교육청)**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긴급전화) 또는 수사기관(112, 학교전담경찰관)에 즉시 신고
 - 신고 후 학대 증거 확보 및 신고내용 비밀엄수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 마련
 - 응급상황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 우선
 - 학교장 및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사안 보고



현장출동 및 사안 조사

◎ 아동학대범죄 현장 출동



-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학대발생(의심) 현장에 출동
- **(학교·교육청)** 수사기관 신고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동행 요청 가능. 이 경우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대 신고를 통보하며 동행 요청

◎ 아동학대 사안 조사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학교 등)에 출입하여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여 조사 실시
 - 아동의 평소 생활이나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나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조사 또는 면담 대상에 포함

※ 면밀한 조사 이후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사례판단(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혐의 판단(수사기관)이 이루어짐



- **(학교·교육청)** 아동학대 사안 조사(상담) 시,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내 장소를 제공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관련 자료 등 적극 협조
 - 수사기관 혹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담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여 상담 장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미상의 성인 집단 방문으로 인해 또래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함
 -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기관을 보호자로 인정하고 적극 협조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생의 회복지원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 현재 담임교사 또는 아동이 원하는(친밀감이 있는) 교사가 동석 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편안한 분위기 조성
예) 작년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동아리 담당교사 등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됨

(관계부처 합동 '20.7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참고 피해아동 조사 시 교사의 협조 사례

- 가정 내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으로 교사에 의해 112 신고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학대예방 경찰관이 학교로 현장출동함. 심각한 물리적 방임으로 인해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였으나 라포 형성이 충분히 되지 않은 조사자가 분리 보호에 대한 의사를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아동이 완강히 거부함. 이에 아동과 충분히 라포가 형성되어 있는 교사의 동석 하에 협조를 통해 아동이 최종 분리 보호에 동의하여 학대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음.



피해아동 조치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1항

- **(경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이외의 장소라도 학대 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가 가능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

-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 3호. 피해아동 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따라서, 학교의 상담을 통하여 학대 피해사실이 인지되었고 피해아동 등이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도 피해아동 등을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응급조치 실시 가능

※ 제2호~제4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음. 다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검사가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피해아동 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2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 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1호.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2호. 「민법」 제77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3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4호.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5호.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6호.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 제3호~제6호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일시보호조치 가능

◎ 피해아동에 대한 즉각분리제도

-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였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 등에서 일시보호 하는 조치



-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판사)



-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호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피해아동보호명령이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가정법원에 요청 하는 제도
- 제1호~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까지로 함
-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로 임시보호 명령을 할 수 있음



아동학대행위자 조치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판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 제1항

◎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은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 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제1항



- 1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호.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호.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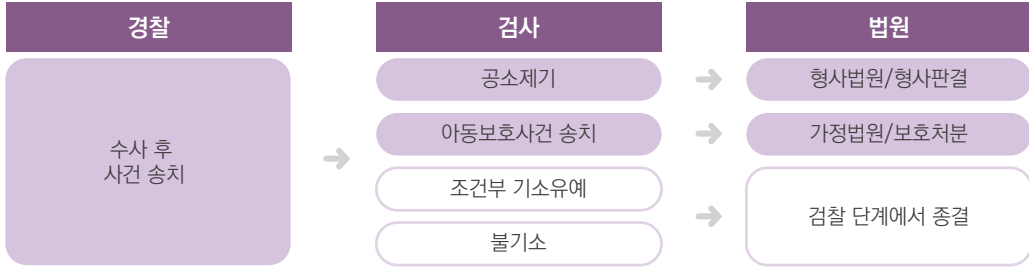
※ 각 호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 아동학대범죄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호~제3호까지 긴급임시조치 가능





수사기관의 수사과 법원의 판단¹²⁾



- **(경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
- **(검사)** 학대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처리 가능



- 불기소 결정: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
- 조건부 기소유예: 상담, 치료 또는 교육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
- 아동보호사건 송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형사사법절차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원가정 회복을 위한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법원으로 송치
- 공소제기(기소):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징역, 벌금 등)

보호처분의 종류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 제1항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12) 참고 :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3. 아동학대 관련 주요 교육 제도·정책



V



비밀전학

- 학대 가해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꾸지 않고 학대 피해 아동이 머무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입학하도록 지원



- ① 법 제29조 제5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 비밀 전학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학생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비밀전학을 요청하면 학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 비밀전학 협조

- 아동학대 피해학생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을 지원한다.
-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피해학생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 관련 일체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그 사실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급에 따른 비밀전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 초등학교의 장은 학대의 피해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할 수 있다.

※ 친권행사의 제한, 친권상실 신고 청구, 보호자가 없거나 후견인 선임 또는 후견인 변경이 청구된 경우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 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장(감)은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 **비밀전학의 허가**

- 아동학대·가정폭력 피해학생이 전학을 신청했을 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더라도(동일 지역 내 포함) 아동학대·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받고 전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 객관적인 자료: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취학지원 요청 공문과 학대 피해아동 취학지원 요청서



비밀전학 지원 시 유의사항

- 학교 및 교육청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전학한 학교명 등 취학지원 관련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해야 한다.
- 학교 관계자들의 실수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 정보 노출 주의'를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 비밀전학 NEIS 처리 시 유의점 : 전입 시 교육정보시스템에서 비밀전입 여부에 체크 처리를 하여 전송되는 학생 자료 중 학부모서비스 신청정보를 제외함

참고 비밀전학 시 피해학생 신상정보 노출 사례

- 비밀전학을 위해 피해사실 확인서 외에 추가자료(친권자(가해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여 정보가 노출된 사례 (관련법 및 학생부 지침상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
- 비밀전학 후 방과후학교 신청을 하자, 방과후학교 수혜자로 가해자인 아버지의 연락처가 나이스 상에 기재되어 있어, 나이스에서 SMS 전송으로 피해자 정보가 노출된 사례
- 자녀가 다녔던 전 학교를 찾아가 보호자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비밀전학한 초등학교를 알아내고 난 후, 비밀전학 한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보호자임을 증명하며 피해학생이 배정받은 중학교를 알아낸 사례



출석인정·인정점 부여

- 피해아동이 시설 입소나 학대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으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공문(출결에 대한 학적처리 요청)을 받아 출석인정 처리
-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학생을 보호하는 경우 위탁학생으로 등록하여 관리
- 기관의 출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재적교 평가(지필·수행평가 포함)에 미응시한 경우 시도교육청의 학업 성적관리지침과 학교의 학업 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인정점 부여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 훈령)
 - [별표8] (출결 상황 관리 등) 2. 결석
 -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등교학습지원

- 피해아동의 등교학습 결손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지리적 요건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비대면 수업 진행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의 요청에 따라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활동 지원



- 신청권자 / 피신청권자: 지자체의 장 / 교육감(교육장)
- 피신청권자의 역할: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 지정
- 지정된 학교의 역할: 해당 학생에게 교육활동 지원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교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출석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

▪ 절차

지자체 장

교육감(장)에 대한 등교학습지원 요청

- ▶ (사유) 학대 피해 당사자 등의 신청, 원소속 학교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장 등의 의견 제출, 그 밖에 원적교가 아닌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 ▶ (신청권자) 지자체 장
- ▶ (피신청권자) 교육감 또는 교육장
- ※ 단, 어떤 경우에도 학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함
- ▶ (지원 기간)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내임. 단, 피해자 등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장의 신청에 따라 권장 기간을 초과하여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음(최초 등교학습지원 신청의 절차를 준용)



교육감(장)

학습지원 학교 지정

- ▶ 교육감(장)은 피해아동의 학습을 지원할 학교를 지정
- ※ 지리적 요건을 포함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학습지원을 제공할 학교를 지정



학습지원 학교

교육활동 지원

- ▶ 학습지원 학교는 피해아동의 교육활동을 지원
- ▶ 다만, 지자체 위탁학생관리로서 원적교 출석으로 인정되며, 원적교 학업 평가에 미응시하였을 경우 학업성적관리지침(교육청)과 학업성적관리규정(학교)에 따라 인정점 부여
- ▶ 최초 등교학습지원 중 연간 수업일수의 3분의 1이 초과되는 날로부터 2주 전까지 지자체에 그 사실을 공유



학습지원 학교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원적교에 송부

- ▶ 교육지원이 종료되어 피해학생이 원적교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학습지원을 제공한 학교는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를 작성하여 원적교에 제공
- ※ 다만, 학습지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출결 이외의 사항 미작성 가능
- ▶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를 포함한 모든 정보는 원적교에 송부하는 즉시 폐기해야 함



원적교

학교생활기록 보조장부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대 피해학생의 일상 복귀를 세심히 지원



위탁 보호 (지자체 등)

- 병원학교 및 쉼터(학대아동쉼터, 청소년쉼터 등)를 통한 학습 지원

* 아동학대 위탁 보호 학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 보호기관(지자체)에서 학습까지 지원할 의무가 있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VI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신고의무자 교육
2.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3.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신고의무자 교육



*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㉞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 ㉟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
- 「초·중등교육법」의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교육복지사 포함) 등 학교장과 종사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파견자, 용역직원 등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



- (시간) 연간 1시간 이상 실시
 - (방법)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 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
 - (인터넷 강의) 복지부 위탁·운영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
 - (집합교육) 필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강사 진행 교육(비대면 포함) 또는 복지부 제공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
- ※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관련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신고의무, 신고요령 등)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절차
- 학교 및 교사의 역할: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 부모면담 시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 아동의 현장조사 및 상담 시 협조 등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에 관한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근거하여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교육 미실시
과태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1차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의 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과태료 부과에 앞서 연내 교육이 완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독려 필요

◎ 신고의무자 교육 사용 자료

관련부처	자료현황
중앙교육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과정 - 더보기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예방) 공통기관용(신고의무자+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권리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 신고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교육자료 - (신고의무자) 202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영상 - (외국어 번역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안내서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교육·홍보자료 - 인쇄물 -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용 교육자료(PPT)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검색 -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경기도 지식(GSEEK) (gseek.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 온라인학습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lms.educare.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 온라인 교육 / 집합교육 -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나라배움터 (http://e-learning.nhi.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하기 -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021년)

2.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복지법」 제31조 제1항

-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



아동 대상 교육



교육대상

- 취학 전 아동
- 각급 학교(유·초·중·고) 및 특수, 각종학교 학생



교육방법

- 아동의 안전에 대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실시함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별표2,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코로나19 상황별 방역지침 준수하여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아동학대 정의 및 개념
- 아동학대 유형
- 아동학대 신고
- 위기 상황별 대처 및 예방법
- 아동학대 처리 절차 및 처벌
- 아동학대 후유증 및 회복 방안
- 아동학대 관련 전문(도움)기관 정보



교육 구성 및 방법

-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통합 실시 가능
-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구성 및 선정
-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연계
- 일상생활에서 지도 및 부모교육 연계

◎ 예방교육 시 활용 자료 (예시)

관련부처	자료현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 교육부 > 교육부소셜미디어 > 유튜브(YouTube)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 우리 모두의 관심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예방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자료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아동권리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자료실 - 아동학대/아동권리 • 아동권리보장원 - 교육·평가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 교육·홍보자료 - 동영상·인쇄물 - ebs 훈육과 학대 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관련부처	자료현황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경찰청 - 아동학대 검색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 아이가 위험해요 송 우리동네 안전한 노란 동그라미가 있다고?! 아동학대예방교육
한국보건복지인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신청 - 아동,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관련 강의(집합, 사이버) • 교육자료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 가능, 학교급별 자료 다운로드 가능
대검찰청 http://www.youtube.com/spbs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보건복지부 또는 대검찰청 -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료: 무료, 수강인원: 제한 없음 • 신청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전국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 및 안내 가능 - (신청)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tion)

◎ 학교급별 교육내용 및 교육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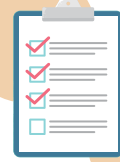
<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기준(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6]) >

구분	실시주기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초등학교 취학 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6개월에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폭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개념 2. 성폭력의 위험상황 3.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 4. 나와 타인의 권리 인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대 및 성폭력의 개념 2. 위험상황에 따른 대처법 및 예방법 3. 학대·성폭력 범죄 신고 요령 4. 나와 타인의 권리 존중하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사례 분석

〈 학교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2] 〉

아동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주기(총 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교육방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안전교육	13	12	10	10	학기당 2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10	11	10	10	학기당 3회 이상
폭력예방 및 보호교육	8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8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가정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10 •가족과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알기 (아동학대 포함)	10 •가정폭력 예방 지침을 알고, 보호하기 (아동학대 포함)	학기당 2회 이상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10	10	10	10	학기당 2회 이상
재난안전교육	6	6	6	6	학기당 2회 이상
직업안전교육	2	2	3	3	학기당 1회 이상
응급처치교육	2	2	2	2	학기당 1회 이상

3.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 및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보편적 부모교육 확대

(관계부처합동, 2021.08.19)



학부모 대상 교육



교육대상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학부모
- 초등학교 학부모
- 중학교 학부모
- 고등학교 학부모



교육방법

- 입학설명회, 학교 설명회 등 학부모 대상 행사 시 부모 교육 실시
- 교육자료, 가정통신문 배포, 자녀양육 관련 교육 동영상 상영, 강의 등
-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취약계층 가족상담·부모교육
-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강화
-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영상 및 홍보물 탑재

※ 코로나19 상황별 방역지침 준수하여 학교 상황 및 여건에 맞추어 진행



교육내용

- 아동의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 민법상 징계권 폐지 계기 인식 개선
-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정의, 아동학대의 유형 및 처벌, 아동학대 현황 및 사례, 아동학대 발생 요인 및 결과, 아동학대 후유증 등

- 아동학대 피해아동(학생)의 치료
- 아동학대의 발견
- 아동학대 신고 절차 및 발견, 신고 시 유의사항
- 아동 중심의 올바른 양육(훈육) 및 의사소통 방법
- 아동학대 예방사업 안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근거 및 현황,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 학대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 부모의 역할

아동기의 중요성 인식,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 스트레스 관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맺기, 자녀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주변의 아동학대 고위험군 또는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 예방교육 시 활용 자료

관련부처	자료현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 교육부소셜미디어 > 유튜브(YouTub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 모든 것, 그것이 알고 싶다! [교육부 국민 서포터즈]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첫걸음 !! 우리 모두의 관심 • 교육부 - 교육부소식 - 홍보자료 - 홍보동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동영상
학부모On누리 http://www.parent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On누리(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국학부모지원센터)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교육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상이몽 OX퀴즈, 이것도 아동학대라고요? -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모의 말과 행동 [아동학대 예방]
아동권리보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보장원 - 캠페인 - 부모교육 강의실 • 아동권리보장원-교육·평가-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교육·홍보자료-동영상·인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아동학대 종류, 후유증, 신고방법 (영상) - ebs 훈육과 학대사이, 우리 아이의 미래 - 각종 아동학대예방 홍보 공익광고

관련부처	자료현황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경찰청 - 아동학대 검색 -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아동학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가정양육지원 > 공통부모교육 > 온라인부모교육(영유아의 인권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 -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아동학대 0%, 가족행복 100% - (부모용)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검찰청 http://www.youtube.com/spbs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YouTube) - 보건복지부 또는 대검찰청 - 아동학대 검색 • 아동학대 1편 - 사랑의 매는 없다! • 아동학대 2편 - 이럴 땐 신고하세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료: 무료, 수강인원: 제한 없음 • 신청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 전국 법무부 준법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 및 안내 가능 - (신청) 법무부 준법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lawprobation)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VII

피해지원 및 기관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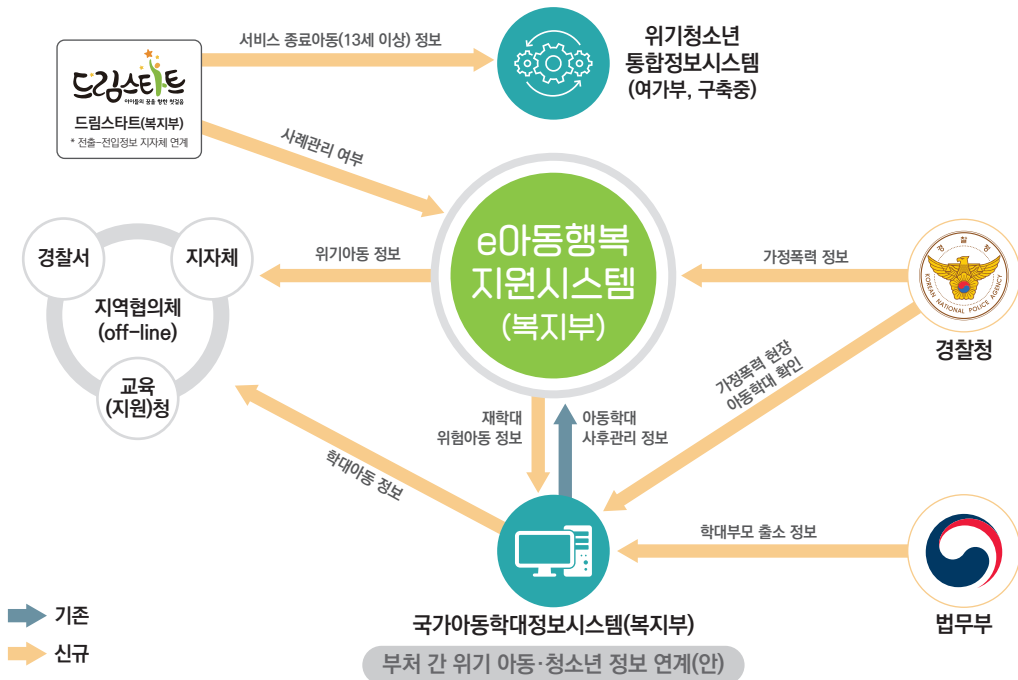
1. 정보연계 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2.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1. 정보연계 협의체 및 기관별 역할



학대 피해,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의 면밀한 관찰, 조기발견이 가능하도록 유관기관(지자체-경찰-교육(지원)청-아동보호전문기관)간 협의체를 구성·운영

(20.7. 관계부처 합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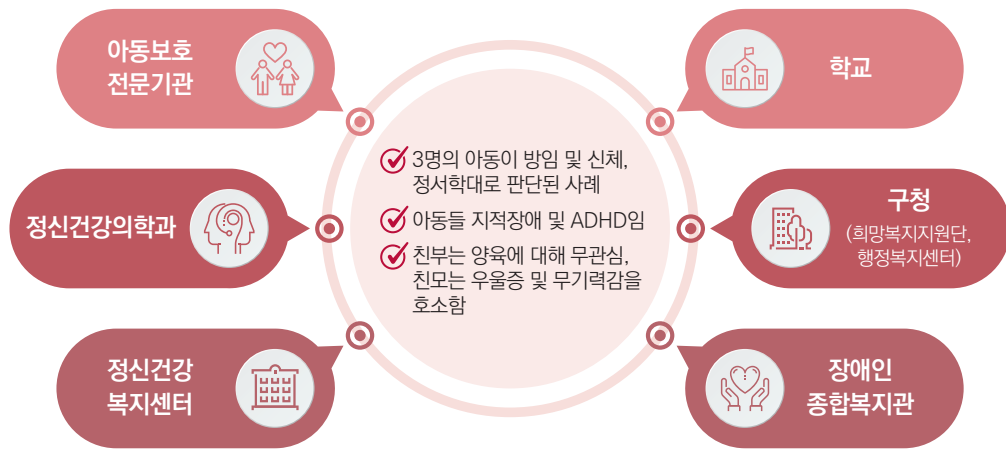
기관별 세부 역할

구분	내용
지자체 * 시군구 아동보호담당 과장(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협의체 운영 • 아동보호지원방안 가이드(분리보호 가능한 시설 유형, 현황 등) 제공 및 위기 아동 정보 공유 • 위기아동 대응 추진현황 이행실적 점검
학교 및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회의 참석 - 파악된 위기아동에 관한 정보 공유 - 위기의심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가정방문 3회 불발되어 학교에 협조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해당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지원)청으로 위기아동 정보제공 협조 - 협조 요청한 아동에 대한 학교의 모니터링(관찰, 상담) 결과 공유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 참여 • 시군구(읍면동) 및 교육(지원)청에서 수사 의뢰한 위기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 학대아동 정보요청 건에 대한 소재안전 결과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 대응 관련 정보 공유 • 아동학대 피해아동 사례관리 이행상황 공유
읍면동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참여(필요시) • e아동행복지원사업(정기조사, 전수조사) 운영 및 월별 추진상황 보고 • e아동행복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사항 요청
기타(학계 및 지역전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아동학대 및 위기의심 아동대응 관련 자문

2. 기관별 주요 역할과 지원내용



◎ 아동학대 사례로 보는 기관별 역할



▪ 기관별 주요 지원내용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및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지원 • 친모 치료 지원 및 양육기술강화 프로그램 실시 • 거부적인 친부 개입을 위한 설득 및 상담을 통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강화 • 방임으로 인한 청소지원을 통해 가정환경 개선 실시 및 가족 구성원별 역량 강화 • 가정방문 사회복지사 파견을 통해 가정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의심상황 수시 모니터링 지원 및 정기적 공유 • 아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 위(Wee)센터 통한 아동 치료 지원
구청 (희망복지지원단 / 행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회의의 주최 및 공적 자원 연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위기가정지원기금 지원
장애인종합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아동 대상 멘토링 서비스 지원 및 언어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모 및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약물 관리)
정신건강의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모, 아동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 실시

참고 통합사례회의 운영

- 대상 아동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이 가능. 통합사례회의에는 기관별 역할분장, 메인 사례관리기관 선정, 사례에 대한 방향 설정 및 구체적 진행계획 논의, 사례 진행사항 공유 등 진행. 통합사례회의는 어떤 기관이든 주최 가능하며 사례와 연관된 기관이면 누구나 초대 가능.
- 학대 피해아동을 위해 '예방-신고-조사-조치-사례관리' 단계별 지역사회 내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아동안전 확보, 아동의 권익 및 안전 최우선,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 보존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피해 지원을 위한 기관별 주요 역할¹³⁾**▪ 지자체 및 경찰**

기관	역할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아동학대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 -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학대전담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전반적 업무 수행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 판단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기적 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협력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가정 양육상황 점검 등 실시 - 즉각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지원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경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의심) 사례 통보 - 위기환경아동 모니터링 및 수사 모니터링 - 시·군·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현장 동행출동 및 정보 공유, 유관기관·학교 등 합동, 피해아동 보호 사례 회의 참여 - 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 합동, 보호시설 점검 및 인식 전환 교육

13) 참고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안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각 기관 홈페이지

▪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청)

기관	역할		
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지원 및 관리 - 아동학대 피해학생 인권보호 및 위기학생 지원 방안 - 위기아동 명단 관리 등 - 위(Wee)센터 /가정형 위(Wee)센터 운영 / 병원형 위(Wee)센터 / 위(Wee)닥터 운영 및 상담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위(Wee)센터</td> <td>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td> </tr> </table>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위(Wee)센터	교육(지원)청 단위 운영.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단위학교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진단-상담-치료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가정형 위(Wee)센터</td> <td>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td> </tr> </table>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가정형 위(Wee)센터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병원형 위(Wee)센터</td> <td>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td> </tr> </table>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병원형 위(Wee)센터	고위기 학생 대상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위(Wee)닥터</td> <td>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td> </tr> </table>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위(Wee)닥터	학교 현장에서 심리·정서적 문제 상황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해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 소속전문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원격 화상 자문 지원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피해아동 현황 파악 : 일상 관찰 및 징후발견 - 위(Wee)클래스 등 피해학생 안전 및 보호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위(Wee)클래스</td> <td>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td> </tr> </table>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위(Wee)클래스	단위 학교에서 운영.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및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상담 및 심리치유, 교육 등 프로그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실시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학적 관련 처리 지원 -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¹⁴⁾

기관	역할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 홍보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 학대 피해아동 상담 및 교육, 치료 등 서비스 지원,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원가정 양육환경 점검 및 가정복귀 프로그램 실시 등 가정복귀 절차 진행 • 가정복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 사회복지 및 정신건강 관련기관

기관	역할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복지사업(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조직 및 자활사업 등) 실시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지역사회연계 등 복지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및 가족생활 지원 위한 교육·상담,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 통역·번역 지원 등의 종합서비스 제공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독자 및 가족 대상 알콜, 인터넷, 도박, 마약중독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증진 도모 • 자살 예방,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및 중증정신질환 관리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함.

▪ 아동청소년 보호시설

기관	역할
일시보호시설/ 학대 피해아동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로부터 아동을 응급, 즉각분리 조치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 피해아동쉼터(일시보호시설) 운영 •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학대 재발 위험이 크므로 현재 생활 중인 가정의 보호가 바람직하지 않은 18세 미만 피해아동 대상 지원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등 생활, 교육, 정서 지원 • 심리검사,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지원
아동양육시설/그룹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양육,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
청소년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 상담 및 의료기관

기관	역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심리검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운영 등
해바라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 및 치료, 사건조사, 법률지원서비스,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
범죄피해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및 가족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법률적, 경제적 지원 및 의료적 지원(정신과적 심리치료, 상해 치료비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교육 지원, 멘토링 봉사단 운영 등 다각적인 프로그램 지원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의학적 진단,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범죄 발생 후 보호가 필요하거나 본인의 집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에게 임시 주거가 가능한 쉼터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문제의 예방과 해결 위한 가족지원, 상담 및 치료,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광역/지역전담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아동 신체적 정신적 외상 치료 및 검사 • 신속 학대 판단(소견서/진단서)
가정폭력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정서적 지원과 가정폭력 예방활동 지원

▪ 법률관련기관 및 제도

기관	역할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 안내. 요청 시 지방검찰청에 신청
진술조력인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가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시 의사소통 중개·보조(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의무적 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관련 지원

참고 진술조력인 제도

- 범죄 피해아동·장애인의 특별한 통역사인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임. 수사나 재판 과정이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기여함.
-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은 성폭력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참고인, 증인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폭넓게 지원됨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구두나 서면으로 진술조력인 선정을 신청함. 단, 피해자의 특성, 심리상태, 장애 등을 미리 알려주면 피해자에게 보다 더 적합한 전문성을 갖춘 진술조력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선정 가능
- 신청방법

- 신청권자: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VIII

부록

1.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2. 미취(입)학 아동(학생) 소재·안전관리
3. 미인정 결석 관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안내
5. 각종 양식 (예시)
6. 유관기관 리스트

1. 교사가 알아야 하는 Q&A



아동학대 발견 및 초기대응

Q1 큰 부부싸움이 지속되는 등 아이가 긴장감과 위협감을 계속 느끼고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나요?

A 정서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합니다.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았어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부부싸움을 노출하여 아동이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정서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2 아동학대 사안은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대행위자(교사 포함)에 대한 조치는 불가능하지만,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에 따른 보호조치는 가능합니다.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연 2호. 일시보호 6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적용 시 민감하게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의 정보가 관계자에게 공개되어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 아동학대 관련 정보 누설 금지 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Q3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을 학교에서 폭행한 경우 아동학대인가요? 학교폭력인가요?

A

학교폭력입니다. 아동학대는 가해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아동학대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Q4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하갯길에 신원 미상의 성인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는 일반 폭행인가요? 아동학대인가요?

A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조 위반으로 처벌되기도 하고, 「형법」 상 폭행, 상해로 처벌되기도 합니다. 폭행이 발생했을 때 「아동복지법」 과 「형법」 중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및 피해자가 어떤 죄명으로 고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Q5

국내에서 출생 등록 후 부모님과 해외로 이주하게 된 아동은 취학 연령이 되었을 때 시행기관의 읍·면·동장은 취학 학생의 출생 등록지에서 취학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해당 주소지에 연고자가 부재하여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제1항에 근거 읍·면·동의 장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에 읍·면·동에서는 각동 통장을 통해 취학연령 가정에 방문하여 보호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소지에 연고자 부재로 취학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외출국 여부를 확인하고 17조 제3항에 근거 아동취학 관련 변동사항을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합니다. 만약,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7조 제4항에 근거,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합니다.

Q6

취학연령에 도달하였거나 취학연령이 넘었음에도 출생 미신고로 인하여 아동이 거주지역의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출생 미신고 아동의 취학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요?

A

「헌법」 제31조 및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종교,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는바, 특히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6년의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외국인인 아동,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에,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제19조 제1항 제5호)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출생미신고 아동도 위의 규정에 포함되어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참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도의 도입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입법예고)

- 현행 출생신고제는 부모의 '자발적' 신고로 진행되므로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법적 한계에 대한 개선내용임.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의무 규정 신설, 국가가 출생신고가 누락된 아동의 출생신고를 직접 이행하여 출생신고 내역에 대한 관리를 통해 누락된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판례

- 피고인은 피해아동(0세)의 친어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예방 접종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단702]



아동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

Q1

교사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나요?

A

교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때 신고의무는 모든 아동학대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중에 학생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하였거나, 학생 면담 과정에서 알게 된 경우 등 교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교사라고 하더라도 이웃집 아동학대를 목격했을 때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Q2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인가요?

A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법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 직군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교사는 「아동복지법」 상의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 및 의심 사항도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Q3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A

아동학대 신고의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아동 및 신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장출동 및 조사 등의 사안처리가 진행됩니다. 교사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이 가능함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모의 종용 또는 부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신고철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신고철회를 요구할 경우 절차를 설명하고 피해아동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Q4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을 때, 가해의심자로부터 학교 또는 신고자의 안전은 확보되는지요?

A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져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자 등이 직접 주거지나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경호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의 신변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5

신고의무자가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보고만 하고,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신고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 신고로 인정되나요?

A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6

아동학대 신고 결정을 도와주는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A

본 가이드에 수록된 아동학대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한 후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을 믿고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학교 지역의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신고를 하였으나 아동의 주민등록주소지가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타 관할 아동이 신고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신고접수를 진행하고 해당 관할 지역에 이관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즉각 출동합니다.

Q8

교사가 아동학대 행위자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반드시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관련기관(학교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해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 선고를 받지 않더라도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고이상(금고, 징역, 사형)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징계절차에 따라 별도 징계(파면, 해임)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아동학대 피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신고접수 시 만 18세가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개입을 합니다. 신고접수 시 아동이 18세가 된 경우라도 아동을 보호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아동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학대 피해는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것이므로 아동학대 수사는 계속되며, 학대 피해 후유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연계의 도움을 주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사건개입을 원할 경우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Q10

아동학대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거나, 협박 등에 시달릴 경우에는 교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62조 제2항).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누군가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누구인지 유추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담임교사가 같은 반 학생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된 경우) 이때는 해당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수업권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국공립학교인 경우) 또는 업무방해죄(사립 학교의 경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교사에게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협박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지위법」에 따른 보호조치 등이 가능합니다.

Q11 학부모가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호소하는 경우, 학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학교종사자는 아동학대 의심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학부모의 민원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원의 내용을 포함한 여러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12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을 공유받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는 학대 신고의무가 발생하나요?

A ‘학대 위기 환경 우려 명단 공유’는 미처 드러나지 않은 학대 피해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나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이며, 해당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것이 곧 학대 의심은 아닙니다. 따라서 명단을 공유받았다는 것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유된 아동을 면밀히 관찰하는 중에 학대 의심 정황 발견 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안처리 및 보호

Q1 피해(의심)아동 조사 시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필수로 받나요?

A 피해(의심)아동 조사를 위하여 보호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심)아동은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스스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라는 이유로 이러한 피해 진술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국선변호사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활한 조사 협조를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교 교사에게 조사를 요청하나요?

A

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 사안 조사 시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필수면담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관계부처 합동 '20.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조사 시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사실 은폐·진술 거부 등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워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피해사실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위해 피해아동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한 것인지, 평소 관찰되고 인지되었던 모습이나 태도 등을 통해 발생 요인, 위험 수준 등을 묻기 위해 교사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3

아동학대 조사와 판정은 누가 하나요?

A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수사기관에서 진행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조사와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결정, 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Q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조사'는 다른가요?

A 아동학대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참고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불분명하거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검사는 혐의의 인정 여부 및 사건의 성질·학대행위자의 개선 가능성·피해아동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결정, 조건부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송치, 기소결정을 합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건과 기소결정이 된 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Q5 사법기관의 판단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나요?

A 사법기관은 범죄 혐의에 중점을 두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아동복지적 관점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발견으로 보호조치하며, 학대 후유증 최소화과 가족기능 회복 등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통상 먼저 통보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은 '아동학대 혐의 있음'이라 하더라도 이후 사법기관은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6 교사가 아동학대(의심)로 신고된 경우, 학교는 분리조치를 해야 하나요?

A 교사가 아동학대행위자로 신고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및 교원업무 담당자와 협의한 후 사안의 경중, 피해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교사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분리의 예시: 동선 분리, 수업 배제, 업무 배제, (임시)담임 교체, 연가 등의 승인 등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개정 (2021.12.25. 시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의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 제1항)

Q7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니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하나요?

A

출석이 의무는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를 참고인조사라고 합니다. 참고인조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출석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는, 참고인인 교사의 진술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석이 부담스러우면 참석 대신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서면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대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8

모와 학생이 부의 지속적 학대로 비밀전학을 원합니다. 양측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보호자의 동의는 가해자인 부를 제외한 모의 동의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초등학교 비밀전학 시의 동의는 '비밀전학' 자체 여부에 대한 동의로서, 추후 어떤 학교에 피해아동을 전학시킬 것인지를 모두 확인시키고 허락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초등학교의 장은 아동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해당 아동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접근금지, 통신제한조치를 받게 되면 자녀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 학대행위자인 보호자가 비밀전학 동의를 이유로 하여 피해아동이 전학 가게 될 학교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알려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에 따른 비밀엄수의무를 들어 거절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020), 보건복지부]

Q9

초등학교 아동이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엄마가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해 비밀전학을 하려고 하지만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항에 의하면 아동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의무 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Q10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학생의 형제자매에 대해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학대 피해아동의 형제자매도 학대 피해 의심으로 상담이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요청 시 학교에서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Q11

아동학대 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결석한 경우 출결 상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출석인정과 관련하여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서 해당 학교에 출석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내면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도록 하며 해당 학교에서는 피해아동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 출결상황] 참고

Q12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했던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아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나요?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학생의 귀가 즉 원가정 복귀는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변경 (가정 복귀) 시, 가정복귀프로그램 등을 통해 재범 우려 및 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 아동의 욕구 등을 확인하여 최종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이 귀가를 강하게 거부하면 아동의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되므로 보호시설에 계속 지낼 수 있습니다.

참고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즉각 분리하였으나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경우는 가정복귀를 진행합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에도 행위자에 대한 기소 여부, 보호처분 여부와 연계된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별개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진행 가능합니다.

Q13

학대 예방 등을 위해 공유되는 e아동행복지원대상자에게 교육청·학교에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나요?

A

대상자의 질의가 있는 등의 경우 e아동행복지원사업의 목적(맞춤형 지원)이나 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본문 참조)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공유받는 것이므로 동법 제20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출처·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21.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1.12.)

Q14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대상자로 발굴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

학교 취학·출결, 어린이집·유치원 출결, 의료기관 진료,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양육수당·보육료, 아동학대 사례 등 다양한 44종 예측 변수에 해당하는 대상아동 정보를 수집하여 대상자(고위험 아동)를 선정합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크고 작은 아동학대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례

•보형(17세, 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습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자가 여관을 찾았을 때 방안에는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있고, 악취도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의 조사 후 주거환경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 주거 급여를 신청한 후 통합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지속적인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Q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다른 것인가요?

A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이고,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공공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교육으로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달리 하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이면서 동시에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Q2

신고의무자 교육 대상 중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자원봉사자도 교육 대상인가요?

A

종사자란 ‘일정한 직업이나 부문,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종사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정직원, 계약직, 시간제 등 포함, 다만, 휴직자는 제외),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 인원, 용역 직원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의무자 교육 시행당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은 실시하되 만약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3

라 기관에서 별도로 만든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2021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질 제고 및 교육점검 강화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집합교육 시 강사 교육이 아닌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 복지부가 제공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만 인정되며, 인터넷 강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복지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기타 기관에 탑재하여 진행한 교육만 인정됩니다.

* [202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참고

Q4

A 기관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은 뒤, 몇 달 후에 B 기관으로 이직한 경우 해당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A

해당 종사자가 이전 기관(A)에서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증빙자료를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에게 제출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B)의 기관장은 해당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 학적 및 행정처리

Q1

미인정 결석 보고 후 복귀하여 복귀 보고를 했던 학생이 다시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해당 학생을 다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등록학생을 조회하여 복귀날짜를 삭제한 후, 최초 미인정 결석일자와 7일 이상 미인정 결석일자 등을 수정하여 보고합니다.

Q2

집중관리대상자인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하여 매월 소재·안전 확인 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A

기존 나이스 시스템에 등록된 학생의 경우 담임교사가 시스템에서 학생을 조회하여 성명을 클릭하고, 팝업창에서 수정사항(소재확인 여부 및 확인일자만 수정)을 저장 후 대상 학생 보고를 통해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업무담당자는 보고된 해당 학생을 확인하여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해당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거나 학적이 변동되었을 경우, 변동 사항(복귀일자 등)을 저장한 후 교육(지원)청에 3일 이내 보고합니다.

Q3

학생이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인정 결석과 출석을 반복하는 학생은 장기결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학생이므로 집중관리카드를 마련하는 등 자체 관리를 권장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징후나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보다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며 미인정 결석 보고 세부 사항은 각 시·도별 지침에 따라 진행합니다.

Q4

소재·안전이 파악되는 미인정 해외출국 학생도 보고해야 하는지, 또한 보고대상이라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미인정 해외출국을 하여 학적상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학생은 보고대상입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객관적인 출국사실을 확인하였다면 가정방문 및 내교 요청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기적으로 입국사실을 확인하며 입국 이후 학교에 미복귀 시에는 출석을 독려합니다. 단, 입국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매뉴얼 절차에 따라 대응합니다.

Q5

학부모님이 이미 가출신고를 한 경우,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하나요?

A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이 미확인 상태이므로 학교에서도 공문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미인정 결석 보고 시 소재확인 여부를 ‘보호자에 의한 가출 신고’로 등록하고, 경찰 수사 의뢰 관리항목을 입력하여 나이스 보고합니다.

Q6

중학교 B양이 2일간 미인정 결석하여 보호자와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4일째 되는 날 가정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B양은 가출한 상태로 소재확인이 되지 않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경우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경찰 수사 의뢰는 공문으로 의뢰해야 합니다. 다만 위급한 상황으로 112에 먼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추후 공문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소재미확인 미인정 결석 학생이 발견되는 즉시, 학교장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선 보고하고 미인정 결석 학생관리시스템에 해당 학생을 즉시 등록·보고합니다.

학교장은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특이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보고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Q7

[학적]-[미인정결석학생등록] 메뉴에서 등록 시 입력 항목이 많습니다. 모두 입력해야 저장되나요?

A

학생찾기 후 다음 항목을 입력해야 합니다. '최초미인정결석일자', '결석사유', '결석사유 확인일자', '소재확인여부', '소재여부확인일자', '7~10일 이상 미인정 결석일자', '경찰수사 의뢰여부' & '경찰수사의뢰일'은 반드시 입력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복귀일자'까지 전부 입력합니다.

Q8

미인정 결석 학생을 교육청에 제출한 이후 학생이 복귀했는데, 이후 미인정 결석이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 메뉴에서 해당학생 등록 시 이미 등록된 학생이라고 나오면서 등록이 안 됩니다.

A

[학적]-[미인정결석학생등록] 메뉴에서 미인정 결석 학생을 등록하여 보고한 이후, 해당 학생의 상태 변경(복귀, 미인정 결석, 수사 의뢰 등)이 있을 때 해당 학생을 다시 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학생의 정보를 수정·저장하여 대상 학생 보고를 하면 됩니다.

최초에 미인정 결석 학생으로 1차 보고 이후 복귀하였다면, 등록된 학생의 정보에 복귀 일자를 입력하여 2차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그 후 다시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 복귀 일자를 삭제한 후, '최초미인정결석일자'와 '7~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일자'를 수정하여 3차로 다시 보고해야 합니다.

Q9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유예(정원외)·자퇴·퇴학 처리된 학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1차로 나이스 미인정 결석 탭에서 해당 학생을 복귀 처리합니다. 복귀 일자는 유예·자퇴·퇴학 등 학적이 승인된 일자, 비고란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입력합니다.
2차로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연계학생 탭에 해당 학생을 등록하여 제출합니다.

Q10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등록된 학생이 검정고시 합격이나 학력인정 등으로 상급학교 진학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상급학교 진학한 경우는 상급학교 진학 기준일로 복귀 처리를 합니다.
상급학교 미진학 학생은 학적처리 결과에 따라 유예·면제로 처리하고 소재안전 관리 주기에 따라 관리합니다.

Q11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등록된 내용의 수정이 가능한가요?

A

제출된 자료를 수정할 경우는 제출취소 요청을 하시고 기결문서 취소요청으로 다시 재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미취(입)학 아동(학생) 소재·안전 관리



취학아동명부 확인(초등학교)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
시행 기관	학교장
처리 시기	취학아동명부 수령 후 (정기 : 매년 12월 20일까지, 수시 : 변동사항 발생 즉시)

◎ 취학아동명부 확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취학아동명부의 아동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보호자 정보(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확인
- 전년도 미취학 아동(취학유예) 반드시 확인, 누락 시 읍·면·동장에게 당해연도 취학명부에 추가 요청
- 누락 아동 발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전출 여부 확인 후 읍·면·동장에게 당해연도 취학명부에 추가 요청

취학 사무 절차 (시행기관 : 읍·면·동장)

- 1) 매년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및 취학아동 명부 열람 제공
 -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접수, 취학아동명부 열람 제공
 - 국립초·사립초 허가자 명부 접수 및 취학아동명부 반영
- 2) 12월 20일까지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에게 취학통지서 배부
- 3) 취학아동명부 학교장에 통보
 - 변동사항 발생 시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 4) 보호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취학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아동의 소재 확인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초등학교)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의2 등
시행 기관	학교장
처리 시기	예비소집일 이후 계속
유의 사항	입학일 이후에는 미취학 아동으로 소재·안전 지속 관리

◎ 예비소집 실시 전

- 예비소집일 실시 전 1주일간 지속적으로 참여 독려(SNS, 학교홈페이지, 문자 등)
-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을 동반하여 참석하도록 안내

◎ 예비소집 당일

- 예비소집일에 참석한 아동 확인
- 예비소집일 아동 미동반 응소 시 아동과 함께 재응소 요청
- 대면 예비소집 원칙이나 코로나 상황 같은 특별한 경우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해당 학생이 교육받고 있는 교육기관이나 학부모를 통한 확인도 가능)
- 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예비소집을 주중 저녁이나 주말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안전 확인

- 예비소집 연장 또는 추가 예비소집일 운영
- 보호자와 연락, 내교 요청, 가정방문 등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타지역 전출】 전입 지역 배정학교에 취학아동명부 등재 및 예비소집 응소 여부 확인 후 원배정학교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
- 보호자 연락 두절 등 취학아동의 소재·안전 미확인 시 후속 조치 실시

【가정방문】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담당자 동행 요청

【수사의뢰】 보호자가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 소재 불명 등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및 교육장(감)에게 보고

※ 교육장 보고 시 취학통지 불가 등으로 읍·면·동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현황 포함

※ 가정방문, 출입국조회, 외국인등록사실과 같은 행정정보 조회 등 기초조사를 충실히 거친 후 수사의뢰 요청(해외 출국,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된 경우 수사 의뢰 지양)

◎ 예비소집 출석 현황을 시·도 취학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장(감)에게 보고



초·중학교 미취(입)학 아동(학생)의 소재·안전 및 취학 관리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등
시행 기관	학교장
처리 시기	입학일 이후 계속
유의 사항	예비소집 단계에서 경찰 수사 의뢰된 아동의 소재·안전도 끝까지 확인

◎ 입학일~2일

- 보호자에게 유선 연락 또는 독촉장 발송 등으로 취(입)학 독려
 - 독촉장 발송 시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
 - 공동통학구역 내 학교장은 타학교 입학 또는 취학유예(면제) 여부를 우선 확인
 - 가급적 육안으로 취(입)학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유선 연락을 하는 경우 취(입)학아동(학생)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취(입)학이 불가능한 경우 취학유예 등의 절차와 함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지속 관리됨을 보호자에게 안내
 - 취학의무의 이행을 독려보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 타지역 전출 등으로 인한 타학교 입학생, 국립초·사립초·특수학교 입학생 등은 취학 아동 명단에서 삭제
 - 예비소집 당시 해외 출국, 거주이전 예정으로 미응소한 아동이 실제 출국 또는 전출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 의무취학연령 아동에 대한 출입국 사실 조회 시, 이중국적자가 외국 여권으로 출국 또는 입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는 확인 불가

- 유선 연락이 되지 않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학교·지자체에서 기초조사 진행 후 소재 확인이 불가능할 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 의뢰 및 교육장(감)에게 현황보고
- 학교장은 취(입)학 현황을 파악하여, 당해 학교에 취(입)학하지 않은 아동(학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며,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



• 예비 소집일 및 입학식 아동 소재 및 안전 확인 시 대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들을 고려한 비대면 방식 운영이 가능함. 비대면 방식으로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경우 화상통화 및 아동과 직접 통화, 어린이집 유치원 재원증명서 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야 함.

* 세부 시행방법은 시도별 세부 지침 참조

◎ 입학일 경과 3일~9일

- **【누가기록】** 미취(입)학아동(학생)명단에 취(입)학 독려 사항 기록
- **【가정방문】** 담당 교사 등 2인 이상 동행하고, 필요시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동행,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학생의 출국이 확인되었을 경우, 가정방문 생략 가능
- **【내교요청】**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학하지 않는 경우 아동(학생)과 함께 내교 요청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보호자·아동(학생) 면담 및 취학 독려
- **【경찰수사】**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시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및 교육장(감)에게 현황보고. 단,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의뢰 시에는 학교·지자체에서 기초조사(출입국조회·가정방문·전출입 조회 등) 진행 후 수사의뢰
- 학교의 장은 미취(입)학아동(학생) 현황, 가정방문, 내교 요청 및 면담 등의 조치내용, 수사 의뢰 사항, 수사 의뢰 결과, 집중관리 필요 대상 여부 등을 입학일 이후 9일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함(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함)

※ 관리 및 보고 방법은 시·도 지침에 의함

◎ 입학일 경과 10일 이후(연중)

- 미취(입)학아동(학생)명단에 소재·안전 확인 및 취(입)학 독려 사항 누가 기록
- 미취(입)학아동(학생) 소재·안전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
 -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취학을 독려하고 교육장에게 보고 (관리 및 보고 방법은 시·도 지침에 의함)
 - ※ 1개월 소재 확인 원칙은 집중대상관리 대상자일 경우 더 짧은 주기로 적용 가능
 - 가정방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하고, 우선 연락 시 아동과 직접 통화를 원칙으로 함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경우는 학부모로부터 재학증명서를 제출받고 우선 연락을 통해 아동의 출석 여부 및 건강 상태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출국 및 전출 여부 확인
 - ※ 타지역 전출 아동의 경우, 관할 읍·면·동장과 교육장 및 전출지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안내하고 미취학아동 명단에서 제외
 - ※ 미취학·정원의 관리 학생 시·도 전·출입 시 관리 주체는 원칙교에 있음.

※ 소재·안전이 확인된 미인가 대안교육, 질병 치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출국 확인된 미인정해외유학 등은 학기당 1회 소재·안전 및 출입국 사실 확인.

단 입국 예정일이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 시 예외 적용



- 보호자가 아동(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시켜 주지 않거나 아동학대(의심)시에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및 교육장(감)에게 현황보고. 단, 소재불명의 사유로 수사의뢰 시에는 학교·지자체에서 기초조사(출입국조회·가정방문·전출입 조회 등) 진행 후 수사의뢰

※ 긴급한 상황으로 즉각적인 경찰 개입이 필요한 경우, 우선 우선으로 신고하고, 추후 수사 의뢰 공문 발송



◎ 집중관리 대상 선정 및 지속 관리

▪ 【집중관리 대상】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 홈스쿨링, 자살 일반 관심군·우선 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

▪ **【집중관리 방법】**



-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 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경찰 수사 의뢰, 아동학대(의심) 신고, 빈번하게 연락 두절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교육장(감)에게 보고

▪ **초등학교 학교장은 취학 현황을 읍·면·동장과 교육장에게 통보**

- 취학현황 : 관내 취학대상 아동수, 실제 취학대상 아동, 취학유예·면제자 대상 및 사유, 미취(입)학 시 학교 조치 내용, 학생의 소재·안전 확보 결과 등
※ 통보 및 보고 방법·시기는 시·도별 관리 지침에 의함
- 미취학 아동의 입학(타학교 입학 포함), 미취학 아동의 취학유예(면제) 승인 등 미취학 아동 변경 사항 발생 시, 시·도 지침에 따라 교육장에게 보고



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학적 생성 전)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시행 기관	학교장
처리 시기	취학연도 1월 1일 ~ 취학연도 입학일 전일

- 정의 : 해당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함
 -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 서류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 부진: 진단서(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서 외 첨부 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 절차

학생·학부모	소속학교	소속학교
필요서류 구비하여 소속학교로 신청	<p>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학교 내 설치)</p> <p>※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해야함,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p>	<p>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학교장)</p> <p>※ 초등학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중학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장에 보고함. 다만 보고자가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 생략 가능</p>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입학 전 취학 의무의 유예)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함
-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후 미취학 아동 명단에 확인 내용 누가 기록하여 교육장(감)에게 보고
 - ※ 대상학생 관리 주기 및 보고 방법은 시·도 지침에 의함
- 다음연도 취학아동명부에 취학유예 아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입학 전 취학 의무의 면제(학적 생성 전)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시행 기관	학교장
처리 시기	취학연도 1월 1일 ~ 취학연도 입학일 전일

- 정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승인함.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근거 학생 및 학부모 신청 이외에도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결정 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①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②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제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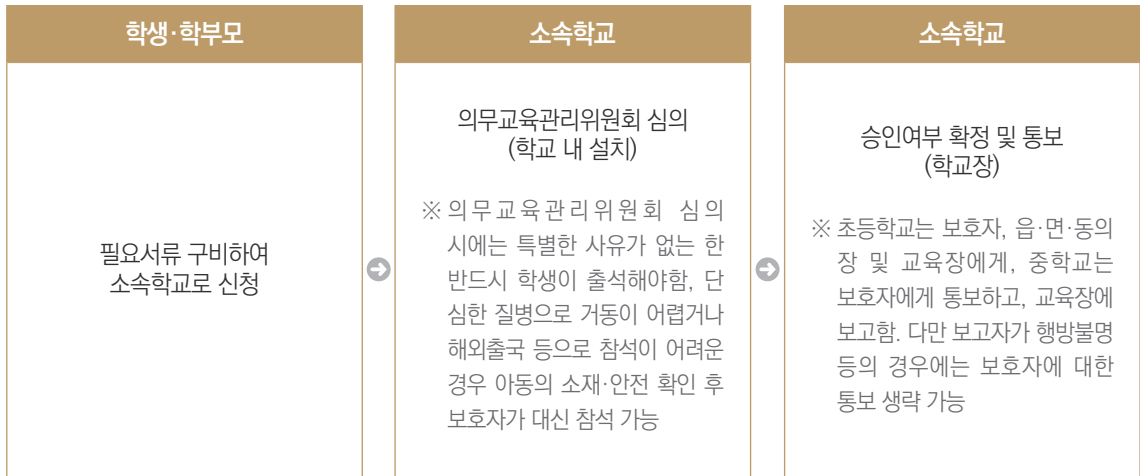
-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방법 : 취학 예정인 학교에 직접 방문 서류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 기관 공문 등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 절차



▪ 유의 사항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음

※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 학기별 2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후 미취학 아동 명단에 확인 내용을 누가 기록하여 교육장(감)에게 보고

※ 대상학생 관리 및 주기 보고 방법은 시·도 지침에 의함

3. 미인정 결석 관리



구분	관리 사항	비고
<p>최초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사안 발생 즉시 • [대상] 초·중·고 연속 7~10일 • [방법] 나이스 보고: (학적)_미인정 결석 학생관리→등록 (학적)_미인정 결석 학생 보고 및 제출 <p>*연속 결석 보고 기준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탄력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이 없는 경우 나이스 보고 및 공문 미시행
<p>월별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기준일: 이전 월 말일, 보고일: 매월 1일 ※ 보고일은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함 • [대상] ①미인정 결석을 지속하는 학생, ②최초 보고 이후 소재·안전 확인 또는 복귀한 학생 • [방법] 월 1회 보고. 단 소재·안전이 확인된 미인정 결석 학생의 경우, 최초 보고 후 학기당 1회 보고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월 1회 관리주기 예외조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출국이 확인된 경우 • 미인가대안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1회 학부모가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재학확인서를 제출하고, 6개월 이후 시설을 통해 공문 또는 재학확인서 접수 확인. 비고란에 시설명 입력 • 질병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p>◇ 집중관리대상자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소재·안전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한 후, 월 1회 '개인별 관리카드(집중관리대상자)'를 작성하여 나이스로 보고함(보고 시 관리카드를 수정·스캔하여 첨부함)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지, 출입국 사실,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을 확인할 수 있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28 조의2)
<p>학적 변동시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일에 승인일자(학적변동일), 비고란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입력하여 복귀 처리 후 복귀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 	



미인정 결석 학생 기간별 관리 방법

1) 미인정 결석 당일(1일)~2일	결석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92조의2 등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처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당일(1일)~2일
처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는 유선 등으로 학생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결석 사유 확인 및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학생의 출석을 독촉함 •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연락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유선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이나 조치 필요사항을 확인함 •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일 차에도 가정방문을 실시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과 직접 통화하는 것이 원칙임 • 해외 출국, 가출 등으로 유선 등의 통화가 불가할 경우, 특정 문구(날짜, 장소 등)를 기재한 학생 사진을 전송받아 확인 가능함 • 학생이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가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담임교사가 학생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출 신고가 가능함. 단 보호자가 가출 신고를 했을 경우에도 학교는 공문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야 함 • 원격수업으로 학생이 미등교할 경우, 담임교사는 지속적으로 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미출석 시 유무선으로 연락을 취해 사유를 확인·조치함

2) 미인정 결석 3~6일	가정방문, 내교 요청, 경찰 협조 요청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92조의2 등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담당)교사
처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후 3~6일
처리 내용	<p>1. 가정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선으로 출석할 것을 독촉한 후에도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 가정방문은 학교의 담당교사가 실시하되, 학생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 혹은 상급학교 진학, 해외출국으로 출석을 독려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정방문 및 내교요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보고명단에는 포함함 ※ 해외출국 학생은 반기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입국 사실을 확인함 <p>2. 내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이후에도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생 보호자에게 반드시 학생과 함께 내교(면담)할 것을 요청함 • 내교 요청은 우선 유선 연락을 통해 실시하되, 유선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통지문을 학생의 주소에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 등으로 발송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내교한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출석을 독려할 수 있음 <p>3. 경찰 협조 요청</p> <p>①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조사(유선연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확인, 가정방문 등)에도 불구하고 소재 수사 또는 아동학대 의심 수사가 필요한 경우 <p>② 방법 : 공문으로 협조 요청(수사의뢰 요청서 반드시 포함)</p> <p>※ 다만, 응급상황 시에는 112로 우선 신고 후 사후 공문으로 요청 가능함</p> <p>③ 수사의뢰 현황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교육(지원)청에 현황을 보고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방문 시 교사나 지자체 공무원의 신변위험 우려, 아동학대 의심 사안의 경우 경찰 동행 요청이 가능 • 해외출국(미인정유학 포함), 시설명이 확인된 대안교육,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빙 또는 소재확인이 명확히 된 경우 경찰 협조 요청 지양 • 의뢰 전 학교 소재지 관할 경찰서 아동·청소년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과 유선 협의 요망

3) 미인정 결석 7~10일(1)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담임교사)
추진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92조의2 등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 학생 나이스 등록 - 담임교사
처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 연속 7~10일이 되는 시점(초중고 공통) • 1일 이상의 미인정 결석 학생 중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경찰·전문기관에 신고된 경우(집중관리대상자 등록)
처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석일수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등은 제외함 • 학교장은 집중관리대상자를 선별·지정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정 현황을 나이스에 등록,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 매월 소재 안전 확인 등 지속 관리, 보고 시 관리카드를 스캔하여 첨부함 • 미인정해외출국, 미인정대안교육이수, 홈스쿨링 등은 미인정 결석 사유로 등록 대상임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유예·면제 승인한 경우나 학교장이 자퇴·퇴학 처리한 경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시스템에 복귀자로 보고·처리하고, 나이스(장학)학업 중단학생관리의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에서 관리함 • 유예 처리 시,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속 관리함



미인정 결석 학생 나이스 등록 방법

메뉴 위치	[학적]-[미인정결석 학생관리]-[미인정결석 학생등록]
개요	담임교사가 미인정 결석 학생을 등록 및 관리하고 학교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 : 필수 입력사항, 미입력 시 제출 불가 • 교육부에 제출된 학생은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록 당시 신중한 입력이 필요함

대상학생 등록

기본정보 ※ 최초미인정결석일자와 7-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일자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
※ (*표시) 항목들은 필수 입력값입니다. 학생찾기 저장

성명	김○○	생년월일	2012. 03. 0	성별	남자
학년	3	반	1	번호	14
주소				학생연락처	010-1111-5555
				*최초미인정결석일자	2021. 03. 04
보호자 성명	부 김○○	보호자 연락처	부	010-1111-2222	
	모 임○○		모	010-1111-2333	
담임교사	성명 이○○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김○○	
	연락처 010-1111-2555		연락처	010-1111-2444	
비고	2021. 06. 04. 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유예 승인(장기결석)				

미인정결석 관리항목

*결석사유	홈스쿨링	*결석사유확인일자	2021. 03. 04
비고			
*소재확인여부	소재 확인(2021. 03. 04)	*소재여부확인일자	2021. 03. 04
비고	가정방문하여 학생 및 학부모 면담 실시		
*집중관리대상여부	Y	7~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일자	
집중관리대상카드 1	김○○-1.jpg	찾아보기	삭제 서식 다운로드
집중관리대상카드 2		찾아보기	삭제

경찰수사의뢰 관리항목

*경찰수사의뢰여부	수사미의뢰	경찰수사의뢰일	수사의뢰 경찰서명
소재확인여부		소재여부확인일자	

복귀 관리항목

복귀일자	2021. 06. 04
------	--------------

▪ 학생정보

구분	주요내용
*최초미인정 결석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인정 결석이 연속 7일 이상 도래하는 날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결석 일자 • 7일 미만의 결석·출석을 반복한 경우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7~10일이 되는 시점에서의 최초 결석 일자 입력

■ 미인정 결석 관리¹⁵⁾

구분	주요내용
*결석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출국·대안교육이수·홈스쿨링·부적응·결석사유기타 중 선택 * 비교란에 사유 요약 기록(미인가대안교육시설명 기재)
*결석사유 확인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석한 사유를 확인한 날짜 입력
*소재확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가 확인된 경우, '소재확인' • 소재 확인이 안 된 경우나 소재 확인 중인 경우, '소재미확인' ※ 소재미확인으로 보고를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인정 결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소재확인여부' 수정 및 '소재여부확인일자'를 입력하여 재보고함 ※ 학생이 가출상태로 소재 확인이 안 되면서, 보호자가 가출신고를 한 경우 '보호자에 의한 가출신고'로 등록함 단, 보호자가 가출 신고를 했더라도 학생의 소재는 미확인 상태이므로, 학교장은 공문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함 • [비고①]에 특이사항 입력
*소재여부 확인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소재(안전)를 확인한 날짜 입력 ※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 소재(안전) 확인 후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고사항' 등을 수정·제출함
*집중관리대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집중관리대상학생으로 선정된 경우,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 체크함 • 집중관리대상학생의 경우, 매월 관리카드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함 ※ 파일크기는 최대 2MB이고, 확장자는 JPG, GIF, TIFF, BMP만 가능하며 PDF는 등록할 수 없음
*7~10일 이상 미인정결석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미인정결석일자로부터 수업일수 기준 연속 7~10일째 날짜 ※ 결석일수 산정 시, 토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 등은 제외함

15) 참고 : 교육부(2021).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전 출입 처리 방법]

▪ **경찰수사의뢰 관리항목**

구분	주요내용
*경찰수사의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에 공문으로 의뢰한 경우, '수사의뢰공문' 선택 • 긴급 상황으로 112신고를 한 경우, '수사의뢰유선' 선택 ※ 유선신고 이후 반드시 경찰서에 수사의뢰 공문발송 및 나이스 경찰수사의뢰여부 수정보고('수사의뢰유선' → '수사의뢰공문') • 소재가 확인되어 경찰수사의뢰가 필요 없는 경우, '수사미의뢰' 선택
경찰수사의뢰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문발송일자(유선신고일자) 입력
수사의뢰경찰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경찰서명 기재(학교 관할경찰서)
소재확인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에서 소재수사 확인 여부 입력(수사 중인 경우에는 '소재미확인')
소재여부확인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수사 결과 소재확인이 된 경우, 확인일자 입력 • 소재미확인 상태였다가 소재가 확인된 경우, 날짜 입력 후 수정 보고

◆ 월 1회 미인정 결석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수정 제출)

- 월 1회 미인정 결석 학생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고 출석 독려 후 매월 말일 기준, 익월 1일까지 그 경과를 교육감(장)에게 나이스 보고
-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 소재(안전) 확인 후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교사항 등 수정·제출
- 원칙적으로 월 1회 소재·안전 확인 여부를 보고하여야 하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으로 출국 확인된 미인정해외유학, 미인가대안교육시설, 질병치료 등 소재·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나이스 보고
- 집중관리대상자는 월 1회 나이스의 입력 내용 수정하여 보고(관리카드 수정하여 첨부)

▪ 복귀 관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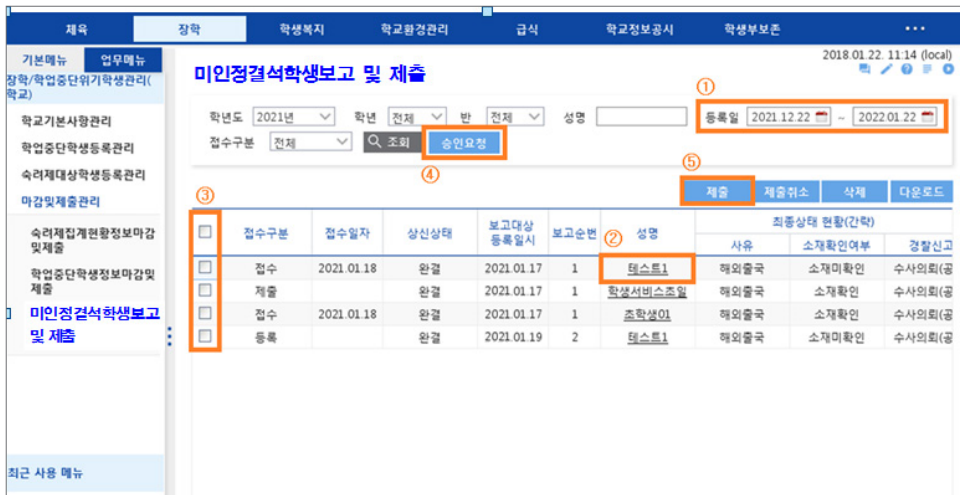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복귀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에 복귀한 경우 복귀일 3일 이내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임교사 : 기존 등록학생 조회→복귀일자 입력→저장→대상학생보고 - 업무담당자 : 미인정 결석 학생 보고 및 제출 탭에서 승인요청→결제 완료→제출 ※ 복귀보고 누락으로 과다집계 되지 않도록 유의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유예·면제 승인이나 학교장의 자퇴, 퇴학 등이 승인 처리된 경우, 학적처리일을 학교복귀일자에 입력하고 [비고②]란에 변동학적 사항(유예, 면제, 자퇴, 퇴학, 제적 등)을 기록·보고하여 관리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의 경우, 변동학적 사항에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로 기록·보고함 ※ 유예·면제·자퇴·퇴학은 '취학관리전담기구현황보고'에 등록·제출하고, 연 2회 소재·안전 확인 사항을 수정 보고(관리)함 • 복귀학생이 다시 미인정 결석한 경우, 기존 관리대상을 조회하여 복귀날짜 삭제 및 최초 미인정 결석일자, 소재확인일자 등을 수정하여 대상학생 보고

4) 미인정 결석 7~10일(2)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 나이스 보고 및 제출(업무담당자)
-----------------------	---------------------------------

추진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25조, 제26조 등
담당자	• 업무담당자
처리 시기	• 미인정 결석 사안 발생 후 7~10일 이후
유의 사항	• 업무담당자는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생에 대하여 필수사항 입력 여부 및 오류기재 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보고(나이스) • 매월 30일에 소재·안전 확인일자를 수정한 미인정 결석 학생 현황 자료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 경찰수사 대상인 경우, 즉시 보고하고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에게도 유선으로 우선 보고함

▪ 미인정 결석 학생 나이스 보고 및 제출 방법

메뉴 위치	[장학]-[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학교)]-[마감및제출관리]-[미인정결석학생보고및제출]
개요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제출



- 등록일을 조회하여 ‘보고대상등록일시’와 ‘보고순번’을 확인하고, 동일 내용이 중복으로 보고된 경우에는 최근 보고 순번을 삭제함
- 업무담당자는 담임교사가 보고한 학생에 대하여 필수사항 입력 여부 및 오류기재 사항을 확인함
- 체크박스 선택 및 승인요청, 결재완료 후 제출함. 제출 시 누락·중복되는 학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함



나이스 업무 흐름도 및 권한 부여

◎ 나이스 업무 흐름도¹⁶⁾



◎ 나이스 권한 신청 및 권한 부여

- 업무담당자(담임, 미인정 결석, 학업중단) : 나이스 권한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요청
- 나이스 권한 담당자 : [시스템관리-권한관리-사용자권한관리-개인별권한등록]에서 아래 <사용자그룹명>을 업무담당자에게 등록

담당자	시스템	서브시스템	등록조직	사용자그룹명
담임	교무업무	교무/학사(초) 교무/학사(중) 교무/학사(고)	공통	담임_미인정결석학생관리담당자(초) 담임_미인정결석학생관리담당자(중) 담임_미인정결석학생관리담당자(고)
미인정 결석	학교행정	장학	공통	학교_미인정결석학생관리담당자
학업중단	학교행정	장학	공통	학교_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담당자

※ 담임 교무업무 권한의 경우, 학교급에 맞는 권한 부여

16) 참고 : 교육부(2021).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입학(학적 생성) 이후 유예 및 면제 처리

◎ 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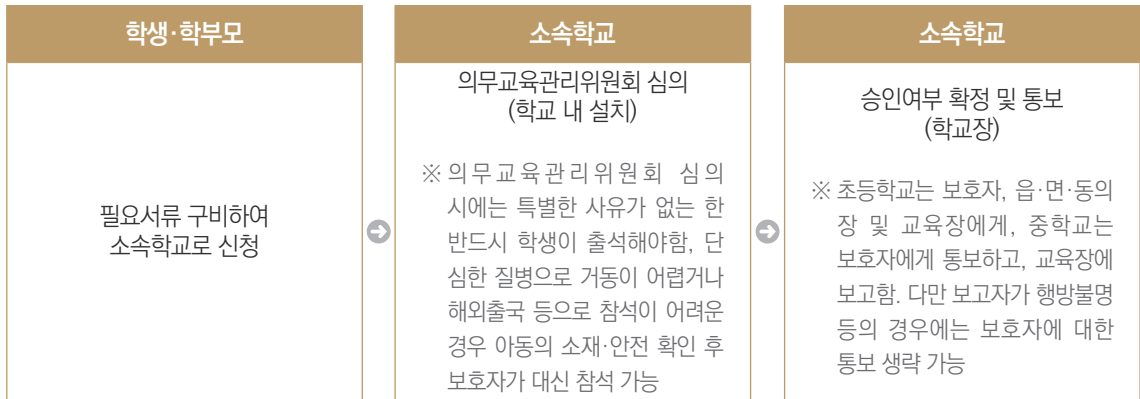
- 정의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 유예를 승인함.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근거 학생 및 학부모 신청 이외에도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를 결정 할 수 있음.
-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으로 인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는 취학의무 유예 사유로 '대안교육기관 재학' 인정
 - 신청대상 :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학생
 - ※ 취학 의무 유예가 가능한 사유: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 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 신청인 :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기간 : 연중
 - ※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전 취학의무 유예 절차에 따라 처리
 - 신청방법 : 취학 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 취학 의무 유예 신청서(소정양식) 1부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신체적, 정신적 결함 또는 발육부진: 진단서(취(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 절차



▪ 유의 사항

-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함
-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함
 - ※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함
-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의외로 학적을 관리함

◎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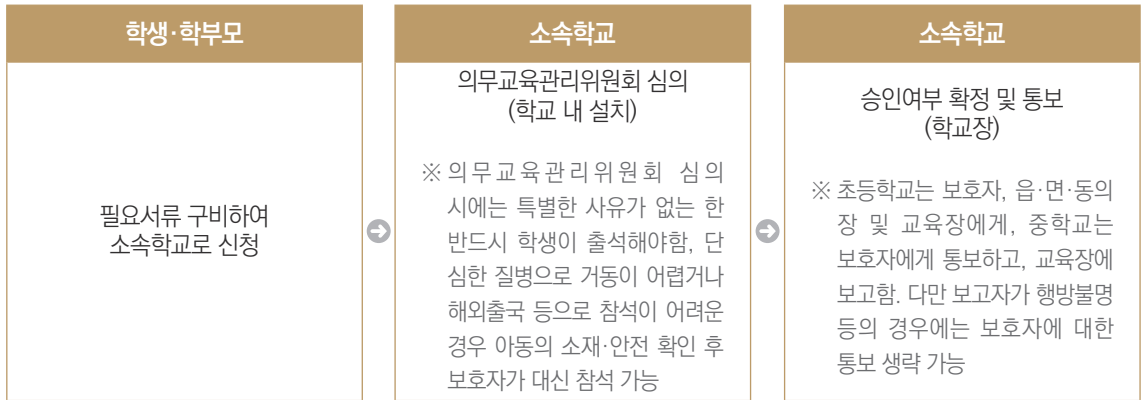
- 정의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
-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 면제를 승인함.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근거 학생 및 학부모 신청 이외에도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결정 할 수 있음.
 - 신청대상 :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등의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학생
 - 신청인 :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학생의 보호자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방법 : 취학 중인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신청 시 제출서류(예시)

- 취학 의무 면제 신청서(소정양식) 1부
- 부 또는 모의 해외 파견 관련 소속 기관 공문 등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처리 절차



NEIS처리 절차

- 나이스학적메뉴 → 유예/면제에서 '면제' 등록
- 나이스장학메뉴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 → 취학관리 전담기구 현황보고 → 대상등록 → 면제 → 비교: ○○으로 인한 면제(면제 사유 입력)

▪ 유의 사항

-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
-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함
 ※ 정당한 해외 출국 :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공무원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하며, 증빙자료(해외파견 관련 소속기관 공문 등), 거주 기간(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 실 체류 기간(출입국사실증명서), 재학 기간 등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제한함
- 유예자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치거나, 국내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및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면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면제 후 파견 국가에서 발생한 정쟁 등 불안, 면제 사유와 직결되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정당한 해외출국을 지속할 수 없어 조기 귀국한 경우 등은 학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판단하여 당해학년도에 재취학으로 처리할 수 있음(관련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관함)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외국인, 학령초과자 포함)가 의무교육기관에 취학 이후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면제로 처리함



유예·면제·자퇴·퇴학 학생 소재·안전 관리

◎ 나이스 업무 흐름도

<p>나이스 권한 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담당자에게 권한 부여: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p>학교업무 담당자 (미인정결석업무담당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대상자 등록·제출 • 등록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 - 유예·면제·자퇴·퇴학 등 학업중단학생 • 대상학생 소재 안전 확인 주기적 관리 : 월1회(모든학생) ★ 다만 소재·안전이 확인 된 경우 학기별 1회 확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된 학생이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된 경우에는 유예(정원외), 면제, 자퇴, 퇴학 등 승인일자로 복귀 처리 완료 후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등록 및 제출</p> </div>
↓	
<p>교육(지원)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학업중단학생정보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현황접수 → 조회 → 접수확인 • 취학관리전담기구 관리 역할 : 대상학생 실태관리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아동이나 학생 소재·안전 관리 - 제적·자퇴·퇴학 등 고등학생의 소재·안전 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학교]

▪ 개요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관리)
시행 기관	학교
처리 시기	연중 상시

▪ 보고대상

-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의 학적 관리 중인 학생
- 유예·면제·자퇴·퇴학 등에 따른 학업중단학생



보고 시 유의사항

- 위의 대상 학생이 미인정 결석 처리된 학생으로 복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예(정원외), 면제, 자퇴, 퇴학 등으로 처리된 경우는 승인일자로 미인정결석학생 조회 탭에서 복귀자로 복귀 처리 함. * 소재 확인된 경우만 복귀처리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탭에서는 개인정보동의여부 관계없이 등록 가능
- 마감 후 제출 처리된 학생정보는 수정이 불가하며, 교육(지원)청 접수 취소 요청 후 삭제 또는 다시 등록 가능
- ★ 2017학년도 이전 발생한 정원외, 유예, 면제, 자퇴, 퇴학 등 학생 관리는 학교 자체에서 실태 점검 관리

▪ 나이스시스템 처리 [장학]



등록방법

- 장학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관리 → 학업중단학생등록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 조회 → 대상학생 체크 → 저장 → 보고대상등록
- ★ 등록 시 비고란 사유기입

참고 대상학생은 학적에서 처리된 학생으로 조회하면 자동으로 나타남

제출방법

- 마감 및 제출관리 → 조회 → 승인요청 → 제출

■ 등록

학업중단학생등록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학년도: 2021년 | 학년: 전체 | 반: 전체 | 성명: [검색]

1-1 (검색) 1-2 (체크박스) 1-3 (보고대상등록) 1-4 (저장) 1-5 (삭제)

<input type="checkbox"/>	최종보고일자	학번	반	성명	학업중단종류	개인정보동의여부	소재확인여부	최종소재확인일자	경찰수사
<input type="checkbox"/>	2021.01.17	1	1-6	남일학생1	면제	0	소재미확인		수사의뢰
<input type="checkbox"/>	2020.12.26	1	1	남일학생2	면제	X	소재확인		수사의뢰
<input type="checkbox"/>	2020.12.26	1	1	여일학생2	면제	X	소재확인		수사의뢰
<input type="checkbox"/>	2020.12.26	1		정민호	면제	X	부족자의가족신고		수사대

학생찾기

학적번호학년도: 2021년 | 학년: 전체 | [검색]

<input type="checkbox"/>	순번	학업중단일	학년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업중단종류
<input type="checkbox"/>	1	2021.03.02	1	1	3	김상성	2011.12.31	남성	유예
<input type="checkbox"/>	2	2021.03.07	1	1	4	테스트	1911.11.11	남성	유예

- (1-1)을 통해서 학업중단학생 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안 될 경우 (1-2)를 통해 '학생찾기'로 조회
- 보고할 대상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1-3:보고대상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학생 보고
- 학생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정보 수정 후 (1-4)로 저장하고, 상세정보 확인은 (1-6)의 학생성명을 더블클릭하여 확인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탭에서 개인정보동의여부는 관계없이 등록 가능하며, 마감 처리된 학생정보는 수정이 불가하며, 마감 취소 후 수정 가능
- 지난 학년도 자료 등록 및 조회 가능(2017년~ 조회 가능)

■ 제출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

학년도: 2020년 | 학년: 전체 | 반: 전체 | 학업중단종류: 전체 | 접수번호: 전체

성명: [검색] | 등록일: 2020.12.01 ~ 2021.03.28 | 1-2 (승인요청) 1-3 (제출) 1-4 (제출취소) 1-5 (삭제) 1-6 (다시모두)

<input type="checkbox"/>	접수번호	접수일	승인상태	학년도	반	성명	학업중단종류	개인정보동의여부	소재확인여부	최종소재확인일자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07	완료	1	1	남일학생1	면제	0	소재확인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0.12.27	완료(기결재취소)	1	1	남일학생2	면제	X	소재미확인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1.05	완료	1	1	여일학생2	면제	X	소재확인	
<input type="checkbox"/>	제출	완료	1	1	정민호	면제	0	소재미확인		
<input type="checkbox"/>	등록	완료	2	1	홍성훈	면제	X	소재미확인		

- 미인정 결석 학생 접수·제출 단계와 마찬가지로 업무담당자가 해당 학생의 체크박스 선택하고 승인·결재 후 교육(지원)청에 제출

◎ 취학관리전담기구 관리 교육(지원)청

▪ 개요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취학관리전담기구의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2(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관리)
시행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처리 시기	연중 상시

▪ 접수 [나이스-장학] 및 학생관리



접수방법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학업중단학생정보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접수 → 조회 → 대상학생 체크 → 접수확인

접수구분	접수일	학교명	학년	반	성명	학업중단종류	개인정보동의여부	소재확인여부	최종소지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접수	2021.01.24	옥포초등학교	1	1	김초1	유예	X	소재확인	—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1.26	옥포초등학교	1	1	식상해	면제	X	소재미확인	—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접수	2021.02.19	강릉초등학교	1	1	홍길동005	면제	X	보호자의가을신고	—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접수	2021.02.19	강릉초등학교	1	3	홍길동007	면제	X	소재미확인	—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27	강릉초등학교	1	1	홍길동005	면제	X	보호자의가을신고	—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27	강릉초등학교	1	3	홍길동007	면제	X	소재미확인	—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27	강릉초등학교	6	1	홍길동026	면제	O	소재확인	2018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27	강릉초등학교	6	1	홍길동027	면제	O	소재확인	2018
<input type="checkbox"/> 접수	2021.02.27	강릉초등학교	6	1	홍길동028	유예	X	소재확인	2018

학교명	옥포초등학교	학년	1	반	1
성명	김초1	성별	남성	생년월일	1911.11.11
학업중단종류	유예	학업중단일	2020.06.28	개인정보동의여부	X
소재확인여부	소재확인	최종소재확인일자		경찰수사의뢰여부	수사의뢰(유선)
복귀여부	O	비고			

◎ 유예·면제·자퇴·퇴학 등 학생 소재·안전 관리 보고

▪ 개요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8조, 제29조, 제92조의2 등
시행 기관	학교장, 교육장 및 교육감
처리 시기	연 2회 [3월/9월 또는 2월/8월]

▪ 점검 대상

- 출석 일수 부족으로 인한 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학생
- 유예·면제·자퇴·퇴학 등 학업중단 학생

보고 시 유의사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중 학칙에 따라 정원으로 학적 관리하는 학생 포함
- 재취학 및 상급학교 진학한 학생 제외
- ★ 검정고시 합격자 중 상급학교 미진학 학생은 학적처리 결과에 따라 유예·면제로 처리될 시 대상학생 확인주기에 따라 관리하는 학생에 포함됨

▪ 집중관리대상 학생 관리

- 집중관리대상자 범위

- (1)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2)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3)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홈스쿨링, 자살 일반관심군·우선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 등
- (4)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

▪ 대상학생 점검 결과 자료 작성 제출

제출방법

- 학업중단위기학생관리 → 학업중단학생정보관리 →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현황접수 → 조회 → 작성 → 저장 → 대상학생 등록 → 학업중단학생정보마감및제출 → 조회 → 대상학생선택 → 승인요청 → 승인완료 → 제출

※ 2017년 이전 관리 대상 학생은 나이스 시스템 보고가 아닌 학교 자체 점검 및 관리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이용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전자정부법」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일부개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8조의2, 제49조의2, 제75조, 제92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방법

◎ 관련 이용 사무

이용 사무 명	공동이용정보	사전동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대금수령(지급)	• (국세)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미취학 아동·미인정 결석 학생 소재지 조사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X
전학업무 처리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교육급여 신청	• 가족관계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귀국학생 등 전·편입학 업무처리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신입생전형 및 전·입학 업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X
장학생선발	• 주민등록표 등·초본	X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정정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표 등·초본	X

◎ 사전 동의

- 공동이용 사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
-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전자정부법」 제42공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지 않음
- 사전동의 없이 이용가능한 사무이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사전동의를 필요한 사무를 사전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전자정부법」 제78조 1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권한 신청 절차



- 이용사무 권한 신청 공문 발송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접속(나이신증서로 로그인)후 권한 신청 → 개인 컴퓨터 사용 승인 신청 → 권한 승인기관에서 승인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사용

① 권한신청 공문 발송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본(스캔), 업무분장표를 첨부하여 권한부여담당자가 있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시행
- 공문 시행 시, 기안문에 아래 [예시] 권한 신청 내용 포함, 아래 첨부 1,2,3을 붙임파일로 제출
 - ※ <첨부 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 ※ <첨부 2>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 <첨부 3> : 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분장표

[예시] 권한 신청 내용(기안문에 기재)

기관명 (부서명)	권한 신청 내역				
	직급	성명	신청 이용사무명	담당업무(업무분장)	담당자
○○○초 (행정실)	6급	○○○	결격사유유무조회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업무	6급 ○○○
○○○초 (교무실)	교감	○○○	결격사유유무조회	계약직교원 관련 업무	교감 ○○○

※ 담당자 기재란은 최초 신청 시 미작성(기관 변동 시 담당자 신청 현황 확인 후 작성)

- ② 업무포털 인증서(GPKI)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접속 후 공동이용 업무포털 바로가기 e하나라민원 클릭) 접속

③ 로그인 후 열람 권한 신청

접근권한관리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Home >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도움말**

열람권한 신청 및 결과조회

다자열람자 신청 및 결과조회

타기관열람신청/결과

담당자관리

열람권한위임관리

열람권한 신청

열람권한 신청 결과

○ 검색조건

사무구분 전체 민원 내부 공공기관민원 공공기관내부 고객

이용사무명 ※ 사무명의 주요단어만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명

공통이용정보명 선택 초기화

목록 **검색**

< 총 80 건 >

○ 검색결과

사무구분	이용사무명	공통이용정보명	소관부처명	처리기간명	열람권한	내열람권한
민원	개인과외교습자신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육부	지역교육청		
민원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	전자민원구비서류	교육부	시도 교육청		

○ 행정정보공통이용 접근권한 신청

1. 신청인	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인천단봉초등학교	직급(직위)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
2. 담당업무	② <input type="text"/>					
3. 이용사무명	법피결역(유무)조회					
4. 공통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법피결역(유무) 조회					
5. 비고	<input type="text"/>					

○ 신청시 유의사항

-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통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통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재요령

1. 신청인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 (예: 5급이하 임용,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통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통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를 공통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③ 열람권한신청 열람권한변동이력 사무목록보기

- 업무분장표에 근거한 권한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확인(업무목적 외 사용 금지)
- 적합하지 않은 업무권한을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
-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처리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처리 담당자는 본인의 소속기관 또는 부서 변경(인사이동 등) 시 승인받은 이용사무의 열람권한을 모두 반납하고 새로 이용사무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야 함



시스템 로그인이 불가능할 경우

- 나이스 기관 인증서 관리자가 시스템관리 → 사용자관리 → 사용자관리 메뉴에서 해당사용자 조회 → 조회결과내역 중 '행공'에 체크한 후 저장

④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개인 컴퓨터 사용신청

- 「보안관리」 메뉴에서 개인 컴퓨터 사용신청 클릭
 - ① 선택 버튼 클릭하여 IP주소 확인 → ② 선택할 IP주소 링크를 클릭 → ③ 신청 버튼 클릭

⑤ 교육(지원)청 권한승인 담당자가 권한 신청자의 업무분장표 확인 후 이용사무 승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활용

- 나의 이용 사무에서 미취학 아동·무단결석 학생 소재지 조사 클릭

-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 3종 중 선택

▪ 사전 동의 선택 후 열람

- 원칙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나 「전자정부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4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체크하여 조회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이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42조제2항, 시행령 제49조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동의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그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한 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정보주체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동의를 받았음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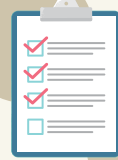
사전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아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보주체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공동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3. 법령을 위반한 정보주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 등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것이 명백한 경우
- 5. 정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6.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
- 7.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상의 비밀에 관한 중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인

사무목록보기

5. 각종 양식 (예시)



아동학대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서식0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 보고 시 주의사항

-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교육(지원)청 해당과로 보고
-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각각 학교장 1명, 원장 1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교직원수 입력
- 교육청에서는 결과보고 시스템 입력 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을 별개 기관으로 취급하여 통계 처리
(예: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통계로 별도 처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기관명	○○학교(유·초·중·고)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도 ○○시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20○○. ○○. ○○	교육장소			
전체 교직원수 (학교장 또는 원장 각각 포함)	○명	이수 인원수	○명	2층 협의실 등	
				집합 인원수	○명
				사이버연수 인원수	○명
이수시간	1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증빙자료> 사진(파일크기 줄여서 삽입)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수료증 첨부 또는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서 서식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사이버교육 명단]

순번	학교명	성명	직위	사이버교육 사이트	교육일시	이수(수료)증번호
1	○○초	김아동	교사	중앙교육연수원	20○○.5.1.~6.1	
2						

서식02

아동학대 사안 보고 공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학생 생활 관련 사안 보고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아동학대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피해학생 인적사항(생략가능)

학대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비고
학교명	학년 반	성명	관계	성명	
○○학교	○학년○반	○○○	부	○○○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나. 세부 내용 : (붙임1)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참고

붙임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02-1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예시)

VIII

아동학대 사안 보고서

보고
구분최초최종

○○학교

구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및 방임	기타
체크(○)					

〈중복체크 가능〉

담임	성명:	부장	성명:	교감	성명:	교장	성명:
	H·P:	(책임교사)	H·P:		H·P:		H·P:

피해 학생	()학년 ()반 ()번 성명:()				
발생 일시	2000.00.00.~2000.00.00.(00회)		보고 일시	최초	2000.00.00.
접수 일시	2000.00.00.		최종	2000.00.00.	

피해 사항 및 주요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서술
---------------------	-------------------

특이사항	※ 재학대여부,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조회 결과, 언론보도 및 경찰 신고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등
------	--

 보호조치 및 처벌 현황

대상	조치 사항	조치 일자	조치 기관
피해아동	피해아동 일시보호	2000.00.00.	○○시청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행위자	경찰조사 진행중	2000.00.00.	○○경찰서 등

 향후 계획

상담 등의 보호 조치로 인한 출석인정, 비밀전학 추진 등

서식03

출결인정 협조 요청 공문 (예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 기관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요청

(※ 원제목 : 학생 출결 인정 협조 요청)

-
1.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귀 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 학생명 : ○○○ (○○년 ○○월 ○○일생)
 - 나. 보호기관명 : 피해아동쉼터(○○도 ○○시 소재)
 - 다. 쉼터 입소일 : 20○○년 ○월 ○일
 - 라. 결석일 : 20○○년 ○월 ○일 ~ 아동 출석 시 까지
 - 마. 결석사유 :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 바. 요청사항 : 아동 출석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 사. 출석인정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 아.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 ○ ○ ○ ○ ○

주무관 ○○○

담당 ○○○

과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04

출결인정 관련 내부 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VIII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업무 협조 요청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에서 본교에 재학 중인 아래 아동의 보호장소 변경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출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온 바, 해당 학생의 출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가. 아동명 : ○○○ (○○년 ○○월 ○○일생)
 - 나. 보호기관명 : 피해아동전용쉼터(○○도 ○○시 소재)
 - 다. 쉼터 입소일 : 20○○년 ○월 ○일
 - 라. 기간 : 20○○년 ○월 ○일 ~ 학생 출석 시 까지
 - 마. 결석사유 : 아동학대 발생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전용쉼터에 응급조치하였음
 - 바. 유의사항 : 아동 출결인정 및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
 - 사. 출결인정 근거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붙임 ○○○○○○ 요청공문 1부. 끝.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05

학교생활기록부 보조장부 [등교학습지원교→원적교]

(등교학습 지원학교 → 피해학생 원적교)

학교명	○○학교	작성자	교사 ○○○	연락처	
-----	------	-----	--------	-----	--

1. 인적 사항

학생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재적교	○○학교 ○학년 ○반 ○○번		
	주소			

2. 출결 사항

구분	기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위탁 교육		○○일													

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	시간	특기사항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안전한생활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 ○○. ○○

○○○○장 (직인)

서식06

등교학습 신청서 (학생 작성→지자체 신청용)

VIII

등교학습 신청서			
주 소			
현 재 적 교		학 년	○학년
성 명		성 별	남 / 여
생 년 월 일	20 년 월 일		
전 화 번 호 (휴 대 폰)			
<p>※ 신청 사유(예시)</p> <p>본인은 ○○지역의 조부모집(또는 ○○쉼터)에서 머무르며 인근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므로,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자 ○○○ (서명)</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서식07

의견 제출서 (학교·아보전·시설 등→지자체 제출용)

등교학습 지원 의견 제출서				
학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의견 제출인	성 명			
	소속 / 직위			
	전화번호 (휴대폰)			
<p>※ 의견 제출 사유(예시)</p> <p>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등교학습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p>				
<p>20 년 월 일</p> <p>신청자 ○○○ (서명)</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서식08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지자체→교육(지원)청)

VIII

등교학습 지원 요청서

학 생	성 명		성 별	남 / 여
	현 재적교		학 년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p>※ 의견서 (예시):</p> <p>위 학생은 학생의 인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교육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회복 지원에 필요한 기간 동안 타학교 교육활동 참여(등교학습)에 대한 지원을 요청합니다.</p> <p>위 학생의 등교학습 지원에 대한 의견을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의 장(직인)</p> <p>○○교육감(장) 귀하</p>				

서식09

비밀전학 요청 공문 (예시)

비밀전학 요청(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으로도 공문 동시 시행

○ ○ 학교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 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 귀 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따라 귀교의 아동학대 피해학생에 대해 비밀전학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교	○학년 ○반	○○○	아동학대로 인한 시설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따른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상담소견서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주무관 ○○○	담당 ○○○	과장 ○○○	(시·군·구의 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09-1

비밀전학 요청서 (예시)

VIII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신 고 접 수 일	년 월 일	
학 대 유 형	<input type="checkbox"/> 신체학대 <input type="checkbox"/> 정서학대 <input type="checkbox"/> 성학대 <input type="checkbox"/> 유기 및 방임	
취 학 요 청 사 항	<input type="checkbox"/> 주소지 외 비밀전학 <input type="checkbox"/> 주소지 내 비밀전학	
아 동 정 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만 세)
	주소	
	학교(학년, 반)	
학대행위자정보	성명(성별)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요 청 기 관 정 보	기관명(주소)	
	담당 공무원	
	연락처	
사 례 개 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피해 사항 - - - • 비밀전학 요청 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상기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서식10

비밀전학 관련 내부결재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 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보고 (※ 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1.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 4항(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11

비밀전학 관련 교육(지원청) 보고 기안문 (예시)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교육(지원)청)

VIII

○○ 교육지원청

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
(경유)

제 목 재학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건)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본교에 재학 중인 다음 아동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응급조치됨에 따라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에서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전학을 요청합니다.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전학지정학교	비고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보호	○○도 ○○시 ○○학교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피해아동 비밀전학 요청서 1부. 끝.

○○ 학교장

담 당 ○○○	부장 ○○○	교감 ○○○	교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12

비밀전학 요청 교육(지원청) 공문 (예시)
(교육(지원)청→피해아동이 전입할 학교)

○ ○ 학교

수신자 ○○학교장
(경유)

제 목 전입생 학적 변동 협조 요청 (※ 원제목 : 피해아동 비밀전학 협조 요청)

- 1234(20○○.○○.○○)호의 관련입니다.
- 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73조, 제89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제3항, 「아동복지법」 제22조의4(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등), 「아동복지법」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5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의4(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비밀전학을 요청하여 온 바,
- 다음의 아동을 귀교로 비밀전학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교	학년 반	성명	전학일자	전학사유	비고
○○도 ○○시 ○○학교	○학년○반	○○○	20○○.○.○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 엄수 등의 의무)에 따른 비밀 누설 금지

-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본 상황에 대한 비밀보장을 요청하며, 아동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비밀전학 요청공문 1부.
2. 상담소견서 1부. 끝.

○ ○ 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 ○○○	과장 ○○○	교육장 ○○○
협조자		
시 행 ○○○(20 . . .)		접 수 (. . .)
우		
전 화	/전송	/E-mail
		/비공개(6)

서식13

위탁학생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예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보호시설 → 피해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위탁교육기관	○○학교	작성자	연락처
--------	------	-----	-----

1. 인적 사항

학생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재적교	○○학교 ○학년 ○반 ○○번		
	주소			

2. 출결상황

구분	기간	수업 일수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위탁교육															

3. 수상경력

구분	수상명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교내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
자격/인증				

5. 진로희망사항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		희망사유
	학생	학부모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일자	이수시간	활동내용	
지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학교)			
	(개인)			

7. 독서활동상황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 보조 자료를 통지합니다.

2000. 00. 00

위탁교육기관 ○○○○장 (직인)



미인정결석, 미취학 관련 문서 및 공문 양식

서식14

아동(학생)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읍면동장 협조 요청 공문(예시)
(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1) 예비소집 단계

수신 ○○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취학아동 예비소집(20△△.1.4.) 미응소 아동이 연락 두절 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10.10.11.)	○○구 ○○로 ○○○	△□□ (010-000-0000)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1.7. 10:30

끝.

※ 동주민센터에 협조요청 공문 발송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바람

2) 입학일 이후 단계 (공문 발송 전에 유선으로 사전협의)

수신 ○○동장

(경유)

제목 20△△학년도 ○○초등학교 미입학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학년도 본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입학한 아동이 연락 두절 되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가정방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합니다.

〈협조요청 사항〉

아동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연락처)	협조요청사항	가정방문일시
△△△ (2010.10.11.)	○○구 ○○로 ○○○	△□□ (010-000-0000)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업무담당) 공무원의 가정방문 동행 협조 요청	20△△.03.20. 10:30

끝.

서식15

아동(학생)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경찰 협조요청 공문(예시)
(학교장→경찰서장, 교육청)

VIII

※ 작성 시 유의사항

- 수사 협조 요청 대상 아동(학생)이 형제·자매인 경우 하나의 문서로 시행하고 비교란에 형제·자매 관계 표시

수신 ○○○○경찰서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 수사 협조 요청

1. 관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 취학 독촉 경고 및 통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2. 본교 재학생(취학대상자이나 입학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요청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학생성명	생년월일	보호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1	□□□	2010.01.01.	□△△	○○시 ○○로 ○	010-0000-0000	
2	△△△	2010.01.02.	△□□	○○시 ○○로 ○	010-0000-0000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서식15-1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예시)

경찰 수사 의뢰 요청서

수사 의뢰 요청서 (소재 수사 □, 학대 의심 수사 □, 보호자에 의한 가출 신고 □)

인적사항	아동1	성명	홍◇◇
		주민번호	111111-3111111
		전화번호	
	아동2	성명	홍△△
		주민번호	131111-4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1	성명	홍□□
		주민번호	870101-1111111
		전화번호	
	보호자 2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출입국사실 조회결과	- 조회일자 : - 조회결과 : (출국연월일 :) (입국연월일 :) 또는 해당없음		
가정방문 조사결과	- 방문일시 : - 방문결과 : (간략히 기재)		
요청사유	서술형		

※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공문 발송 시 작성하여 첨부
 ※ 수사 의뢰 요청 아동이 형제·자매인 경우 아동 칸 추가하여 작성

서식16

경찰 협조 요청 상황 보고 (예시)
(학교장→교육장(감))

VIII

수신 ○○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장)

(경유)

제목 미취학 아동(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소재(또는 학대의심)수사 의뢰 사안 보고

1.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2. 본교에 20△△학년도 미취학한(예비소집 미응소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수사의뢰 요청 사항》

배정학교	학생성명	생년월일	관할경찰서	수사의뢰일자	비고
○○초	□□□	20△△.01.01.	◇◇경찰서	20△△.00.00.	소재수사 (or 학대의심)

붙임 수사의뢰 요청서 1부. 끝.

서식17

취학 독촉장 서식 (예시)

□□초 제()호

취학 독촉장

본교 취학대상인 귀 가정의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입학하고 있지 않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제()차 독촉장을 발송하오니 조속히 아동이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 아동성명:
- 생년월일: 0000. 00. 00.(남/여)
- 주 소:
- 보호자성명: (아동과의 관계:)
- 입학일 20△△년 3월 2일부터 00일 미입학

※ 이 독촉장을 수령한 날부터 3일 이상 경과하여도 출석지 않거나 연락이 없을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이 경찰을 동반하여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후 「초·중등교육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 □ □ □ 학 교 장 (직인)

보호자 ○○○귀하

제()호

○○○ 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취학대상으로 배정된 귀하께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학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년 ○○월 ○○일 ○○시
- 내교장소: ○○○학교 ○○○
- 유의사항: 아동(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읍면동의 담당직원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학 교 장 (직인)

서식19

미취학 아동(학생) 명단 보고 서식 (예시)

0000학년도 초등학교 미취학아동 명단

○○○초등(중)학교

연 번	학생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미취학 유형 (A)	미취학 구체적 사유	집중 관리 대상	비고 (조치 및 취학독려내용)
				성명	관계	연락처				
1	홍길동	110101 -4345678	서구 갈마로 12	홍판서	부	010-**** -****	유예	해외출국으로 유예	×	▷ 1.17.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으로 출국확인 ▷ 2.24. 위원회 승인
2	전우치	090101 -3456789	서구 둔산로 11	권곡산	모	524 -1234	면제	OO병으로 면제	×	▷ 2.15. 가정방문 ▷ 2.27. 위원회 승인
3	도우너	100301 -333334	유성구 봉명로 10	무단 미취학	OO대안학교 입학	○	▷ 3.6. 가정방문 아동확인 ▷ 3.8. OO대안학교 입학 증명서 확인
4조치사항 상세히 기재

※ 작성요령

1. 미취학유형(A) 입력사항: 취학유예, 취학면제, 무단미취학 3가지 중 택일
2. 미취학 구체적 사유는 요약하여 입력
3. 조치 및 취학독려내용은 미취학아동에 관하여 학교에서 소재확인 및 취학 독려한 사항을 날짜별로 상세히 기록

서식20

미취(입)학 아동(학생) 집중관리카드 서식 (예시)

VIII

집중관리 대상자 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앞쪽)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001호		
①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부		보호자 연락처	부	
		모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②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입학일~2일	<u>보호자 취학독려</u>	<u>2020.3.3.</u> <u>보호자와 유선연락</u> <u>학생과 직접통화하여 소재안전확인</u>			
	입학일 경과 3~9일	<u>미취학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u> <u>위해 가정방문</u>	<u>2020.3.6.</u> <u>주민센터 업무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u> <u>동행하여 가정방문, 취학독려</u>			
	집중관리대상 선정 사유	<u>홈스쿨링으로 인한 미취학 아동으로 지속적인 소재·안전 확인 필요</u>				
	가정방문일시					
	학부모출석일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 개최	- 회의개최 일시 : - 참석자 : - 회의내용 :				
	경찰신고일시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 및 학생에 한함 * 관리카드 작성 방법: 월1회 대상자의 관리사항을 기록 관리 함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20.3.6(금).13:00	부 본인(학생)	홈스쿨링 학생 학생과 직접 통화 안전·소재 파악	의무교육 취학 독려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서식21

미인정결석학생 집중관리대상자 개인별 관리 카드 (예시)

VIII

개인별관리카드

※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앞쪽)

관리 기관명		○○학교/○○교육(지원)청		관리번호		제20 - 호		
① 기본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보호자 성명	부		보호자 연락처	부			
		모			모			
	학교명			학년반				
	담임교사	성명		학교업무 담당자	성명			
	연락처			연락처				
비고								
② 미인정 결석 처리 과정	구분	주요확인사항		조치사항		비고		
	결석일 이전							
	1일							
	2일	안전·소재 파악		출석 독려				
	사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부적응()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세사유	예) 컴퓨터 중독 등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등교 거부					
	가정방문일시	2000.00.00. 가정방문 실시(출석 독려 등 부모 면담)						
	학부모출석일시	2000.00.00. 부모 내교 상담 실시						
	교육장 보고이후	집중관리대상 선정이유	예) 컴퓨터 중독 및 대인기피 등 문제로 전문기관의 상담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가정형편 상 보호·관리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학교복귀 및 학습결손 보충 등 관리하고자 함					
		지역유관기관 연계조치현황 (경찰 신고 제외)						
경찰신고일시				경찰수사종결일				
기타								
작성 참고 사항	※ 관리카드 작성 대상자: 집중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 한함 ※ 학교에서는 집중대상자에 대한 관리카드 제출 시, 관리대상에 대한 ①기본사항 ②처리과정 ③월별 관리내용을 작성한 후 NEIS 업로드							

※ 가급적 확인내용들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뒤쪽)

월별 관리내용

일시	확인자	확인내용	조치사항	비고
2020.03.05.(월) 13:00	담임 업무담당자	◦ 가정방문을 통한 학생 안전 및 소재 파악	◦ 출석 독려 ◦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에 대한 협조 당부	
2020.04.04.(목) 15:00	업무담당자	◦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소재 파악	◦ 출석 독려	

제()호
○○○귀하

내교 통지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귀 가정의 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있어 취학 독려를 위해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오니, 보호자께서는 해당 일정에 아동과 함께 내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교일시: ○○○○년 ○○월 ○○일 ○○시
- 내교장소: ○○○학교 ○○○
- 유의사항: 자녀 동행 필수

※ 내교 요청에 불응 시 읍면동의 담당직원 또는 경찰과 동행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내교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협의 바랍니다.

□ □ □ □ 학 교 장 (직인)

서식23

미인정결석학생 가정방문 점검표 (예시)

가정방문 점검표

○ 학교 자체 보관

-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여 면담(아동 면담 먼저 실시)
- 괄호에는 해당하는 곳에 'V' 표기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미기재

점검일시	20 . . . (00:00~00:00)						
점검자	학교명		성명		직책		연락처
	주민센터명		성명		직책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 여()
	학교	○○○학교 ○학년 ○반(마지막 등교일 기준)					
	주소						
	연락처						
	미인정결석 시작일						
점검 결과							
아동 거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주소에 거주하지 않음						
보호자의 아동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조부모(친조부, 친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친인척(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삼촌, 형제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동거인(친모의 친구, 계부의 친구 등 상세 병기)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 전혀 없음						
가정환경 (방문자가 확인한 가정환경)	- 가정 내 정리정돈 상태(아동이 양육되는 환경에 적합 여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비치 여부 등) ※ 방임으로 의심되는 상황인지 확인 필요						
아동 면담 (아동의 신체 발달 등 외관)	- 외관상 학대의심여부 확인(명,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의복, 의복 청결상태 등) -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 발달 상태인지 확인 - 등교하지 않는 사유 - 별도 학습 여부 및 학습 내용 - 등교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아동이 거부한 것인지, 보호자의 거부로 인한 것인지)						
보호자 면담 (등교시키지 않는 사유 및 향후 계획)	- 별도 교육 여부 및 교육 내용 - 아동이 등교를 거부한 경우 아동 등교를 위한 노력 여부 - 향후 계획						
미인정결석 사유 ※주된 사유에 V	가사	경제사정:(), 가정불화:(), 주거불안정:(), 기타:()					
	폭행	폭행(가해)·절도 등(), 이성교제:(), 기타:()					
	부적응	엄격한 교칙 등:(), 학습부진·학업기피:(), 인간관계약화:(), 기타:()					
기타	미인정 해외출국:(), 가출:(), 행방불명:(), 대안교육(), 종교:(), 방송활동:(), 기타:()						
가정방문 결과 조치사항	① 소재·안전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동학대가 징후가 보여 경찰에 수사의뢰() ② 출석독려() ③ 기타 조치사항 기재()						

서식24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 권한 신청서 (예시)

VIII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신청일: 20년 월 일

1. 신청인	부서	○○○	직급 (직위)	○○○	성명	○○○
2. 담당 업무	교원 인사 업무/일반직 인사 업무/상훈 업무 등 (본인 업무 기재)					
3. 이용사무명	결격사유 유무 조회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결격사유 유무 정보					
5. 비고						

〈 신청 시 유의사항 〉

※ 본인의 업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접근권한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처리를 위해 접근권한을 신청하거나, 업무 이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재요령 〉

1. 신청인
신청인의 소속부서, 직급,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2. 담당 업무
신청인이 소속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재합니다.(예 : 5급이하 임용, 계약관리 등)
 3. 이용사무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정확한 사무 명칭을 기재합니다.
 4.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사무에 필요한 정보중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고
신청하는 사무를 일시적으로만 처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그 외에 특기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합니다.
-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급학교는 학교장, 학교외 기관은 부서장이 서명합니다.)

OO초등학교	교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

서식24-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예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면서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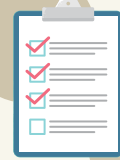
20 년 월 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 서약서 상의 직무는 '업무처리담당자'로 ✓ 표시할 것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업무보조자는 교육청 내에 지정되어 있음

(부서)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6. 유관기관 리스트



VIII

전국 교육(지원)청별 아동학대 담당자 연락망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서울특별시	02-399-9549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53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02-390-2250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02-1811-7901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노원구, 도봉구	02-3499-6899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용산구, 종로구, 중구	02-708-668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동구, 송파구	02-3434-4425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서구, 양천구	02-2600-0834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남구, 서초구	02-3015-3300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동작구, 관악구	02-814-1472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광진구, 성동구	02-2286-3777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교통합지원센터	강북구, 성북구	02-944-9476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부산광역시	051-860-0395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52	
	서부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051-250-0415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51	
	남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	부산진구, 남구, 동구	051-640-0216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1251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북부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	사상구, 북구, 강서구	051-330-1215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47	
	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051-550-0125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62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교육지원청 유치등교육지원과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051-709-0335	
대구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053-231-0503	고등학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대구광역시	053-231-0254	유치원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053-231-0941	특수학교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2-0060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2-0071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2-0021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3-0061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대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3-0052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3-0022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4-0054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초등학교	053-234-0049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학교	053-234-0026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유치원	053-235-0033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학교생활건강센터	초,중학교	053-235-005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인천광역시	032-420-8488	고등· 특수· 각종· 기타 학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0115	유치원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627-1236	초·중 학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부평구	032-510-5431	유치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부평구	032-510-1594	초·중 학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32	유치원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남동구, 연수구	032-460-6055	초·중 학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25	유치원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서구, 계양구	032-560-6636	초·중 학교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인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초등교육팀	강화군	032-930-7754	유치원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원센터	강화군	032-930-7828	초·중·학교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국 민주시민교육과	광주광역시	062-380-4368	
	광주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동구, 북구	062-605-5572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서구, 남구, 광산구	062-600-9663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대전광역시	042-616-8286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25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동구, 중구, 대덕구	042-229-1062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34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서구, 유성구	042-530-1062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울산광역시	052-210-5276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초등학교	052-219-5633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중구, 북구, 동구 중학교	052-219-5662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초등학교	052-228-6633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	남구, 울주군 중학교	052-228-6661	
세종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044-320-1000	예방교육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	-	044-903-1562	사안 관련
	세종시교육청	전입학원스톱지원센터	-	044-320-2161~5	전입학 관련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	경기도	031-249-0864	
	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가평군	031-5175-8865	
	고양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고양시	031-900-4694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팀	광명시	02-2610-0557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광주시, 하남시	031-280-7210	초등
				031-280-7215	중등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군포시, 의왕시	031-390-1143	
	김포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김포시	031-980-1238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구리시, 남양주시	031-550-6340~1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 위(Wee)센터	동두천시, 양주시	031-860-4432	
	부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부천시	032-620-0343	
	성남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성남시	031-780-2607	
	수원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수원시	031-289-6924	
	안산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산시	031-412-4558	
	안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팀	안성시	031-678-5276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안양시, 과천시	031-380-7221	
	양평교육지원청	교육과 안전학교팀	양평군	031-770-5630	
	여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팀	여주시	031-880-2345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안전팀	연천군	031-839-0160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용인시	031-8020-9137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 민주시민교육팀	의정부시	031-820-0035	
	이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이천시	031-639-5618	
	파주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지원팀	파주시	031-948-429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 중등교육지원과	평택시	031-650-1532	
	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지원센터	포천시	031-539-0140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미래국 혁신학생지원과	화성시, 오산시	031-371-0630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 학생생활인권팀	시흥시	031-488-4553	
강원	강원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강원도	033-258-5503	
	춘천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춘천	033-259-1645	
	원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원주	033-760-5661	
	강릉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화천	033-640-1241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속초양양	033-639-6050	
	동해교육지원청	교육과	동해	033-530-3040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	태백	033-580-5590	
	삼척교육지원청	교육과	삼척	033-570-5141	
	홍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천	033-430-1132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횡성	033-340-0360	
	영월교육지원청	교육과	영월	033-370-1160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강원	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	평창	033-330-1754	
	정선교육지원청	교육과	정선	033-560-8161	
	철원교육지원청	교육과	철원	033-450-1086	
	화천교육지원청	교육과	화천	033-440-1592	
	양구교육지원청	교육과	양구	033-480-1472	
	인제교육지원청	교육과	인제	033-460-1071	
	고성교육지원청	교육과	고성	033-680-6031	
충북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생활교육팀	충청북도	043-290-2773	
	청주교육지원청	학생지원과 생활교육팀	청주시	043-270-5863	
	충주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충주시	043-850-0571	
	제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제천시	043-640-6635	
	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보은군	043-540-5559	
	옥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옥천군	043-730-4380	
	영동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영동군	043-740-7761	
	진천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진천군	043-530-5349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괴산군, 증평군	043-830-5015	
	음성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음성군	043-871-5031	
	단양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생활교육팀	단양군	043-420-6126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	충남	041-640-743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국 체육인성건강과	천안시	041-529-0597	
	공주교육지원청	교육과	공주시	041-850-2331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보령시	041-930-6370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아산시	041-539-2450	
	서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서산시	041-660-0320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논산시, 계룡시	041-730-7140	
	당진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	당진시	041-351-2540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금산군	041-750-8851	
	부여교육지원청	교육과	부여군	041-830-8280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	서천군	041-950-6090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	청양군	041-940-4440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홍성군	041-630-5550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	예산군	041-330-3640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	태안군	041-670-8231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전라북도	063-239-3461	
	전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전주시	063-270-6100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군산시	063-450-2676	
	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익산시	063-850-8857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전북	정읍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정읍시	063-530-3088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원시	063-620-7821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제시	063-540-2586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군	063-270-7627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안군	063-430-6214	
	무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무주군	063-320-5131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수군	063-350-5222	
	임실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임실군	063-640-3530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순창군	063-650-6190	
	고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고창군	063-560-1681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부안군	063-580-7431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전라남도	061-260-0953	
	목포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목포	061-280-6464	
	여수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여수	061-690-0825	
	순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순천	061-729-7832	
	나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나주	061-330-0195	
	광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광양	061-760-3363	
	담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담양	061-380-8190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곡성	061-360-6657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전남	구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구례	061-780-6691	
	고흥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고흥	061-830-2057	
	보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보성	061-850-6410	
	화순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화순	061-370-7167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흥	061-860-1237	
	강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강진	061-430-1547	
	해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해남	061-530-1137	
	영암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암	061-470-4201	
	무안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무안	061-450-7117	
	함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함평	061-320-6616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영광	061-350-6616	
	장성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장성	061-390-6112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완도	061-550-0581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진도	061-540-5136	
신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신안	061-240-3691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학생생활과	경상북도	054-805-3505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과	포항시	054-288-6722	
		교육지원국 중등교육과		054-288-6748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경주시	054-740-9157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북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김천시	054-420-5262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13	
		교육지원과	경북 안동시	054-851-9222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구미시	054-440-2396	
		교육지원과	경북 구미시	054-440-2324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주시	054-630-4220	
	영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천시	054-330-2323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상주시	054-530-2364	
	문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06	
		교육지원과	경북 문경시	054-550-5515	
	경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경산시	053-810-7513	
		교육지원과	경북 경산시	053-810-7526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군위군	054-380-8221	
	의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40	
		교육지원과	경북 의성군	054-830-1131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송군	054-870-1121		
영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양군	054-680-2250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북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영덕군	054-730-8012	
				054-730-8022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11	
		교육지원과	경북 청도군	054-370-1121	
	고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고령군	054-950-2522	
	성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성주군	054-930-2061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16	
		교육지원과	경북 칠곡군	054-979-2121	
	예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예천군	054-650-2650	
				054-650-2551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봉화군	054-679-1742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진군	054-780-3324		
울릉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경북 울릉군	054-790-3046		
경남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경남	055-210-5176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고성	055-670-8150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의령	055-570-7112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거제	055-630-9231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함양	055-960-2730	

지역	기관	부서	관할지역	업무연락처	비고
경남	양산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양산	055-379-3181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거창	055-940-6125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산청	055-970-3051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합천	055-930-7005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	하동	055-880-1931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사천	055-830-1541	
	진주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진주	055-740-2156	
	창원교육지원청	학생생활지원과	창원	055-210-0391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남해	055-860-4120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창녕	055-530-3577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통합지원센터	함안	055-580-8030	
	밀양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밀양	055-350-1555	
	통영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통영	055-650-8055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김해	055-330-964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제주도 고등, 특수학교	064-710-0453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제주시 초중학교	064-754-125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생안전지원과	서귀포시 초중학교	064-730-8154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망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FAX	관할 시군구
1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02-2040-4242	02-2040-4210	서울시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69길106	02-2247-1391	02-2248-0417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중구 광진구
3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시정현 201호	02-3665-5183-5	02-3665-5182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4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10, 4층	02-3157-1391	02-3157-1394	은평구, 종로구
5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407호	02-842-0094	02-842-0093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6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타운힐 1층	02-923-5440	02-923-5441	서울시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7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공구빌딩 4층	02-422-1391	02-3143-1392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8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4층(정송빌딩)	02-474-1391	02-474-1394	관악구, 동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9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331(중계동) 아동복지관 3층	02-974-1391	02-2116-4664	서울시 노원구
10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아미동27가)	051-240-6300	051-240-0551	중구, 서구, 동구, 남구, 영도구, 사하구,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1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903호	051-715-1391	0505-300-1391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12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268, 405호 (대림타운상가 4층)	051-711-1391	0505-134-1391	사상구, 북구, 강서구
13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 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	051-791-1360	051-791-1367	부산시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중구, 연제구, 영도구
14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7가), 2층	053-422-1391	053-427-1393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중구
15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조암로40, 한영빌딩 6층	053-623-1391	053-623-1392	달서구, 달성군
16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55	053-710-1391	053-710-1394	대구광역시 동구, 북구, 서구
17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9	032-434-1391	032-439-13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구, 동구, 옹진군
18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21050)	032-515-1391	032-516-8429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1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홀트인천복지센터 4층	032-424-1391	032-424-1392	남동구, 연수구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FAX	관할 시군구
20	인천	인천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3, 10층(이레메디칼센터)	032-563-1391	032-563-0152	
21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062-385-1391	062-383-1391	광산구, 서구
22		빛고을아동보호 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 2, 1층~4층	062-675-1391	062-674-1393	광주시 남구, 동구, 북구
23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울로 156, 신수빌딩 2층(중촌동 23-9)	042-254-6790	042-254-6795	대전시 동구, 중구, 대덕구
24		대전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35 MK빌딩 707,708호	042-716-2020	042-716-20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구
25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성안동)	052-245-9382	052-245-1396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중구
26		울산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355 번길23	052)256-1391	052)256-1396	남구,울주군
2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 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867-1393	044-864-1394	세종특별자치시
28	경기	경기도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25번길 20	031-245-2448	031-245-2449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29		경기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도림빌딩 4층	031-874-9100	031-874-9150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30		경기성남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 로 1306, 2층	031-756-1391	031-721-3881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31		경기고양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557번길 11 삼정플라자 7층	031-966-1391	031-966-1849	파주시, 고양시
32		경기부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19 골 든타워 3층 302호	032-662-2580	032-612-6337	김포시, 부천시
33		경기화성아동보호 전문기관 (오산분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 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 빌딩) (18303) [분소]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8 번길 3-6 (18110)	031-227-1310 031-8077-9610	031-297-6579 031-8077-9621	화성시, 오산시
34		경기남양주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248 번길 39 다남프라자 204호	031-592-9818	031-591-1573	가평군, 남양주시, 구리시
35		안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 장로35 에스엘타운 402호	031-402-0442	031-402-0140	안산시
36		경기용인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 양로 221, 802-804호	031-275-6177	031-275-6179	경기도 용인시(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이천시, 여주시
37		시흥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 7길 83(대야동 2층)	031-316-1391	031-316-4648	시흥시
38	경기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평택시 소사 1 길 33 경기평택아동보호 전문기관	031-652-1391	031-656-1391	평택시, 안성시	
39	수원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 로 347(북수동), 2층	031-8009-0080	031-8009-0086	수원시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FAX	관할 시군구
40	경기	광명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6.(광 명농협 신촌지점 4층)	02-897-1577	02-897-1578	광명시
41		안양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계양빌딩 7층	031-468-9821	031-468-9823	안양시
42		구리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53, 여성행복센터 4층	031-523-3163-5	031-523-3167	구리시
43	강원	강원도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후평동)	033-244-1391	033-244-1394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44		강원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원도 강릉시 솔울로5번길 33	033-644-1391	033-644-1390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45		강원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 469번 길 6 2층	033-766-1391~2	033-766-1397	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영월군
46		강원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금주빌딩 2,3층	033-535-5391	033-535-5397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47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 로 202번길 66-1 충청북도아 동보호전문기관	043-216-1391	043-216-1392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상당구,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서원구,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48		충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7, 2층(화산동)	043-643-0943	043-645-9079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49		충북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 길 19	043-731-3685	043-731-3695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50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 로 224(성정동)	041-578-2655	041-578-2656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당진시
51		충남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중양로 384 번길 55 충남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041-734-6640	041-734-6643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52		충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상하천로 24-1, 유엔아이빌딩 3층	041-635-1106	041-635-1109	서산시, 보령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53		충남중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충남 아산시 용화고길 79번길 36, 601호	041-546-1391	041-546-1392	아산시, 당진시
54	전북	전북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063-283-1391	063-283-1395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부안군,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진안군
55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	063-852-1391	063-852-1398	익산시
56		군산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북 군산시 백도로 202, 2층 201호	063-734-1391	063-734-1398	군산시
57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 2 층	063-635-1391	063-635-1395	남원시
58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35-15, 호은빌딩 3층	063-715-1371	063-715-1375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59		전라북도아동학대 조사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 로 77	031-123-4567	031-123-4567	

연번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FAX	관할 시군구
60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061-753-5125	061-753-1391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61		전남서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635, 석현빌딩 3층	061-285-1391	061-285-1394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62		전남중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송월3길 28, 4층	061-332-1391	061-332-1395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63		전남북부권아동보호 전문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수읍 벽라1 길 41	061-870-7200	061-870-7300	화순군, 장성군, 장흥군, 담양군, 보성군
64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95 번길 24	054-745-1391	054-745-7938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65		경북북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49- 3	054-853-1391	054-853-0239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66		경북동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 25번길12, 3층(대잠동)	054-284-1391	054-284-1027	포항시, 울진군, 울릉군, 영덕군, 청송군
67		경북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층	054-455-1391	054-457-1390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68	경남	경상남도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	055-244-1391	055-244-9754	밀양시, 통영시, 양산시, 거제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69		경남서부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 번길 6 2층	055-757-1391	055-757-0081	진주시, 사천시, ,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70		김해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	055-322-1391	055-322-1392	김해시
71		창원시아동보호 전문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정 길 53-23(동정동)	055-713-1390	055-713-1392	창원시
72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 로 59	064-712-1391	064-712-1395	제주시
73		서귀포시아동보호 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 동로 8731, 1-2층(서귀동)	064-732-1391	064-767-1393	서귀포시

전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긴급전화번호 현황('21.11.기준)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1	서울	강남구	배치	02-545-1391
2	서울	강동구	배치	02-3425-8877
3	서울	강북구	배치	02-998-1391
4	서울	강서구	배치	02-2600-5433
5	서울	관악구	배치	02-879-6199
6	서울	광진구	배치	02-450-1474
7	서울	구로구	배치	02-2620-7391
8	서울	금천구	배치	02-2627-2391
9	서울	노원구	배치	02-974-1391
10	서울	도봉구	배치	02-2091-2391
11	서울	동대문구	배치	02-2127-5640
12	서울	동작구	배치	02-3280-1392
13	서울	마포구	배치	02-3153-8391
14	서울	서대문구	배치	02-330-1391
15	서울	서초구	배치	02-2155-8910
16	서울	성동구	배치	02-2286-6633
17	서울	성북구	배치	02-2241-2662
18	서울	송파구	배치	02-2147-2391
19	서울	양천구	배치	02-2620-3391
20	서울	영등포구	배치	02-2670-1391
21	서울	용산구	배치	02-2199-7139
22	서울	은평구	배치	02-351-6212
23	서울	종로구	배치	080-860-1391
24	서울	중구	배치	02-2261-1391
25	서울	중랑구	배치	02-2094-1391
26	부산	중구	배치	051-466-1391
27	부산	동구	배치	051-440-4848
28	부산	서구	배치	051-241-1391
29	부산	사하구	배치	051-292-1391
30	부산	영도구	배치	051-416-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31	부산	동래구	배치	051-553-1391
32	부산	남구	배치	051-607-3400
33	부산	연제구	배치	051-851-1391
34	부산	부산진구	배치	051-803-1391
35	부산	금정구	배치	051-518-1391
36	부산	해운대구	배치	051-781-1391
37	부산	수영구	배치	051-611-1391
38	부산	기장군	배치	051-722-1391
39	부산	북구	배치	051-302-1391
40	부산	사상구	배치	051-310-5112
41	부산	강서구	배치	051-974-1391
42	대구	중구	배치	053-661-1391
43	대구	남구	배치	053-472-1391
44	대구	수성구	배치	053-666-1391
45	대구	달서구	배치	053-631-1391
46	대구	달성군	배치	053-262-1391
47	대구	동구	배치	053-956-1391
48	대구	북구	배치	053-351-1391
49	대구	서구	배치	053-566-1391
50	인천	중구	배치	032-751-1391
51	인천	동구	배치	032-777-1391
52	인천	미추홀구	배치	032-881-1391
53	인천	부평구	배치	032-509-1391
54	인천	옹진군	배치	032-883-1391
55	인천	서구	배치	032-565-1391
56	인천	계양구	배치	032-549-1391
57	인천	강화군	배치	032-933-1391
58	인천	남동구	배치	032-472-1391
59	인천	연수구	배치	032-813-1391
60	광주	북구	배치	062-515-1391
61	광주	동구	배치	062-608-8820
62	광주	남구	배치	062-671-1391
63	광주	서구	배치	062-601-0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64	광주	광산구	배치	062-941-1391
65	대전	동구	배치	042-285-1391
66	대전	중구	배치	042-222-1391
67	대전	서구	배치	042-471-1391
68	대전	유성구	배치	042-863-1391
69	대전	대덕구	배치	042-626-1391
70	울산	중구	배치	052-292-1391
71	울산	동구	배치	052-235-1391
72	울산	북구	배치	052-289-1391
73	울산	남구	배치	052-261-1391
74	울산	울주군	배치	052-204-1391
75	경기	과천시	배치	02-3418-1391
76	경기	군포시	배치	031-397-1391
77	경기	의왕시	배치	031-455-1391
78	경기	의정부시	배치	031-828-2112
79	경기	양주시	배치	031-8082-5848
80	경기	동두천시	배치	031-858-1391
81	경기	연천군	배치	031-834-1391
82	경기	포천시	배치	031-532-1391
83	경기	성남시	배치	031-722-1391
84	경기	광주시	배치	031-760-1799
85	경기	하남시	배치	010-9285-1391
86	경기	양평군	배치	031-771-1391
87	경기	고양시	배치	031-966-1391
88	경기	파주시	배치	080-500-1391
89	경기	김포시	배치	031-980-2278
90	경기	부천시	배치	032-625-3868
91	경기	화성시	배치	031-5189-1391
92	경기	오산시	배치	031-374-1391
93	경기	구리시	배치	031-558-1391
94	경기	남양주시	배치	031-579-6700
95	경기	가평군	배치	031-581-1391
96	경기	안산시	배치	031-481-3319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97	경기	용인시	배치	031-324-2915
98	경기	이천시	배치	031-645-3649
99	경기	여주시	배치	031-883~4-1391
100	경기	시흥시	배치	031-312-1391
101	경기	평택시	배치	031-652-1391
102	경기	안성시	배치	031-676-1391
103	경기	수원시	배치	031-226-1391
104	경기	광명시	배치	02-2681-1391
105	경기	안양시	배치	031-383-1391
106	강원	춘천시	배치	033-250-3683
107	강원	원주시	배치	033-737-2590
108	강원	강릉시	배치	033-648-1391
109	강원	동해시	배치	033-530-2980
110	강원	태백시	배치	033-552-1391
111	강원	속초시	배치	033-639-3894
112	강원	삼척시	배치	033-573-1392
113	강원	홍천군	배치	033-430-2138
114	강원	횡성군	배치	033-342-1391
115	강원	영월군	배치	033-370-1391
116	강원	평창군	배치	033-330-1381
117	강원	정선군	배치	033-560-2988
118	강원	철원군	배치	010-6717-1391
119	강원	화천군	배치	033-442-1391
120	강원	양구군	배치	010-6818-1391
121	강원	인제군	배치	036-462-1391
122	강원	고성군	배치	033-644-1391
123	강원	양양군	배치	033-671-1391
124	충북	청주시	배치	043-201-1391
125	충북	충주시	배치	043-842-1391
126	충북	제천시	배치	043-643-1391
127	충북	보은군	배치	043-542-1391
128	충북	옥천군	배치	043-733-1391
129	충북	영동군	배치	043-742-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130	충북	증평군	배치	043-836-3391
131	충북	진천군	배치	043-537-1391
132	충북	괴산군	배치	043-832-1391
133	충북	음성군	배치	043-872-1391
134	충북	단양군	배치	043-421-1391
135	충남	천안시	배치	041-566-1391
136	충남	아산시	배치	041-533-1391
137	충남	당진시	배치	041-358-1391
138	충남	금산군	배치	041-751-1391
139	충남	공주시	배치	041-853-1391
140	충남	논산시	배치	041-736-1391
141	충남	계룡시	배치	042-840-3697
142	충남	부여군	배치	041-834-1391
143	충남	서천군	배치	041-952-1391
144	충남	예산군	배치	041-331-1391
145	충남	청양군	배치	041-943-1391
146	충남	홍성군	배치	041-635-1391
147	충남	보령시	배치	041-931-1391
148	충남	서산시	배치	041-662-1391
149	충남	태안군	배치	041-673-1391
150	세종	세종시	배치	02-3418-1391
151	전북	전주시	배치	063-285-1391
152	전북	완주군	배치	063-241-1391
153	전북	진안군	배치	063-432-1391
154	전북	정읍시	배치	063-536-1391
155	전북	익산시	배치	063-843-1391
156	전북	군산시	배치	063-451-1391
157	전북	김제시	배치	063-540-1391
158	전북	부안군	배치	063-584-1391
159	전북	고창군	배치	063-564-1391
160	전북	임실군	배치	063-644-1391
161	전북	무주군	배치	063-324-1391
162	전북	남원시	배치	063-626-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163	전북	순창군	배치	063-653-1391
164	전북	장수군	배치	063-350-2127 010-4035-1391
165	전남	곡성군	배치	061-360-8253
166	전남	순천시	배치	061-746-1391
167	전남	구례군	배치	061-781-1391
168	전남	광양시	배치	061-791-1391
169	전남	보성군	배치	061-852-1391
170	전남	고흥군	배치	061-832-1391
171	전남	여수시	배치	061-659-5367
172	전남	영암군	배치	061-472-1391
173	전남	강진군	배치	061-433-1391
174	전남	목포시	배치	061-276-1391
175	전남	무안군	배치	061-452-1390
176	전남	신안군	배치	061-262-1391
177	전남	해남군	배치	061-537-1391
178	전남	완도군	배치	061-555-1391
179	전남	진도군	배치	061-540-1391
180	전남	영광군	배치	061-353-1391
181	전남	장성군	배치	061-395-1391
182	전남	담양군	배치	061-380-2833
183	전남	화순군	배치	061-371-1391
184	전남	나주시	배치	061-331-1391
185	전남	함평군	배치	061-322-1391
186	전남	장흥군	배치	061-863-1391
187	경북	경산시	배치	053-812-1391
188	경북	청도군	배치	054-373-1391
189	경북	군위군	배치	054-380-6403
190	경북	의성군	배치	054-832-1391
191	경북	영천시	배치	054-334-1391
192	경북	경주시	배치	054-777-1391
193	경북	문경시	배치	054-552-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194	경북	영주시	배치	010-8937-1391 010-3597-1392
195	경북	봉화군	배치	054-674-1391
196	경북	예천군	배치	054-654-1391
197	경북	안동시	배치	054-840-6533
198	경북	영양군	배치	054-680-6296
199	경북	청송군	배치	054-873-1391
200	경북	영덕군	배치	054-730-6247
201	경북	울진군	배치	010-7380-1391 010-7480-1391
202	경북	포항시	배치	054-270-1391
203	경북	울릉군	배치	054-790-6212
204	경북	고령군	배치	054-956-1391
205	경북	칠곡군	배치	054-971-1391
206	경북	성주군	배치	054-932-1391
207	경북	구미시	배치	054-452-1391
208	경북	김천시	배치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209	경북	상주시	배치	054-537-7659
210	경남	양산시	배치	055-382-1391
211	경남	밀양시	배치	055-356-1391
212	경남	창원시	배치	055 - 263-1391
213	경남	창녕군	배치	055-533-1391
214	경남	의령군	배치	055-572-1391
215	경남	함안군	배치	055-585-1391
216	경남	고성군	배치	055-674-1391
217	경남	통영시	배치	055-650-1391
218	경남	거제시	배치	055 - 633-1391
219	경남	합천군	배치	055 - 933-1391 010-4378-1391
220	경남	진주시	배치	055 - 745-1391
221	경남	사천시	배치	055 - 832-1391
222	경남	산청군	배치	055-970-6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여부	긴급전화 번호
223	경남	하동군	배치	055 - 884-1391
224	경남	남해군	배치	055 - 862-1391
225	경남	거창군	배치	055 - 945-1391
226	경남	함양군	배치	055-964-1391
227	경남	김해시	배치	055 - 359-1391
228	제주	제주시	배치	064-728-2670
229	제주	서귀포시	배치	064-760-0911

▶ 참고자료

- 교육부 지정 교육복지중점연구소(2020).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 경기도교육청(2019). 2019 경기도 초등 학적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2020).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 경기도교육청(2019).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초등학교)
- 경기도교육청(2020).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중학교)
- 경찰청, 보건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 학대 대응 안내서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6).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2016).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 교육부(2021).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 노혜련, 허남순 역(2015). 해결을 위한 면접(4판). 학지사
- 노혜련, 김준주 역(2015). 해결중심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Young, S. 2009, Solution -focused school: Anti-bullying and beyond). 학지사
- 변성숙·변국희(2020). 학생 사안처리의 정석:아동학대·학교폭력·학칙위반·교권침해 대응 솔루션. 좁쌀한알
- 보건복지부(2020). 아동학대 주요 통계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0).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1).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
- 보건복지부(2021). 2021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보건복지부, 경찰청(2021).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2020). 2017-2019 아동학대사건 판례집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1). 공공부문 사례관리 연계협력 업무안내
- 서울지방변호사회(2017). 아동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 여성가족부(2013). 가정폭력 피해대상 유형별 치료 회복 프로그램 개발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2021).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2017~202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6). 아동학대 피해아동 지원 체계 구축방안 연구
-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2017). 학교를 위한 아동학대 회복지원 안내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전자정부법,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 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법제처 국민법령정보센터(2021). 형법. <https://www.law.go.kr/>에서 2021.12.01.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2021). <https://www.ncrc.or.kr/ncrc/main.do> 에서 2021.12.01. 인출

연구 및 집필진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김영미	(법무법인 송인 변호사)
어주경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교수)
최희영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부대표)
변국희	(향산초등학교 초등 교감)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변호사)
서영범	(비봉초등학교 교사)
임경숙	(인천 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진은경	(해든학교 교사)
허성연	(은평구청 아동보호팀 주무관)

자문진

김진이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아동가족상담센터 센터장)
김은영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원희	(상성초등학교 교사)
신하영	(서울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오한경	(약사중학교 교사)

검토진 | 연구협력관

이승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김미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연구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처 교육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주소 (유스메이트)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1나길 5 (헤이그라운드 6층)
전화 (유스메이트) 02-6956-0819
홈페이지 (유스메이트) www.youthmate.co.kr



교육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YOU+H MATE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

교육부문 가이드북



교육부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 문제연구소
YOU+H MATE

※ 본 연구는 교육부 2021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